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全南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玄 惠 慶

指導教授 鄭 根 埴
崔 晶 基

2008年 8月

博士學位論文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全南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玄 惠 慶

鄭 根 埴
指導教授
崔 晶 基

2008年 8月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全南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玄 惠 慶

上記者의 社會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所 屬	職 位	學 位	姓 名
審査委員長	전남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나간채
審 查 委 員	제주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조성운
審 查 委 員	전남대학교	조교수	사회학박사	박해광
審 查 委 員	서울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정근식
審 查 委 員	전남대학교	부교수	사회학박사	최정기

2008年 8月

〈목 차〉

표 목차	v
그림목차	vii
국문초록	ix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4·3기념의례에 대한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5
가. 4·3기념의례의 개념규정과 범위	5
나.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9
다. 논문의 구성	11
3.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2
가. 기념의례에 대한 이론적 전개	12
나. 분석틀	17
4. 4·3기념의례의 역사적 전개	19
가. 반공 국가 기념의례 등장과 유족의례의 억압	19
나. 민주화집단의 저항과 기념의례의 갈등	20
다. 새로운 국가 기념의례의 정립과 유족 기념의례의 확산	21
제2장 반공 국가 기념의례의 등장과 유족 기념의례의 억압	23
1. 충혼위령제의 형성과 구조	23
가. 충혼위령제의 형성과정	23
1) 반공주의 국가의 대두	23
2) 충혼위령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26
나. 충혼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30
1) 충혼위령제의 대상자	30
2) 충혼위령제의 시공간	32

3) 충혼위령제의 형식과 내용	36
2. 유족 기념의례의 양상	40
가. 유족 기념의례의 형성과정	40
1) 4·3사건 희생의 유산과 억압	40
2) 반공국가 시기 유족들의 대응	44
3) 제주의 전통의례의 영향과 단골공동체	46
나. 유족 기념의례의 형식과 구조	47
1) 유족 기념의례의 대상자	47
2) 유족 기념의례의 시공간	50
3) 유족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	52
3. 소결	58

제3장 민주화집단의 저항과 기념의례 갈등

1. 사월제의 등장	61
가. 사월제의 형성과정	61
1)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5·18진상규명운동	61
2) 4·3진상규명운동과 문화운동	63
3)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69
나. 사월제의 형식과 구조	71
1) 사월제의 대상자	71
2) 사월제의 시공간	73
3) 사월제의 형식과 내용	75
2. 합동위령제의 등장	81
가. 합동위령제의 형성과정	81
1) 반공적 4·3유족회의 등장	81
2)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위령사업의 전개	84
3)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의 합의사항	86
4)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의 구성	91
5) 4·3특별법 투쟁	93

나. 합동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95
1) 합동위령제의 대상자	95
2) 합동위령제의 시공간	98
3) 합동위령제의 형식과 내용	100
다. 전야제의 시행	104
1) 제주민예충의 성립	104
2) 전야제의 형식과 구조	106
3. 소결	107

제4장 새로운 국가 기념의례의 정립과 유족 기념의례의 확산

1. 합동위령제의 수용과 정립	110
가. 합동위령제 수용과정	110
1) 과거사 정리 및 국가의 공식 사과	110
2) 4·3특별법과 평화공원조례	112
3)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의 변화	116
나. 합동위령제의 형식과 구조의 변화	118
1) 합동위령제 대상자의 선택과 배제	118
2) 합동위령제 시공간의 변화	122
3) 합동위령제 형식 및 내용의 변화	129
2. 유족단위 위령제의 확산	135
가. 유족단위 위령제의 형성과정	135
1) 원초적 사건의 차이	135
2) 각 유족회의 경험과 태도	139
나. 복촌위령제	140
1) 복촌위령제의 형성과정	140
2) 복촌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146
다. 백조일손위령제	151
1) 백조일손위령제의 형성과정	151
2) 백조일손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157

라. 행방불명인 진혼제	159
1) 행방불명인 진혼제의 형성과정	159
2) 행방불명인 진혼제의 형식과 구조	160
3) 행방불명인 진혼굿의 형식과 구조	162
마. 무장대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의례	173
1) 이덕구에 대한 기념의례의 등장	173
2) 이덕구에 대한 기념의례의 의미	175
3. 해원상생굿의 연행과 의미	176
4. 소결	180
 제5장 결론	182
 <참고문헌>	191
<영문초록>	206

〈표 목차〉

<표 1-1> 현재 제주지역사회에서 실행중인 4·3기념의례	7
<표 1-2> 자료수집 현황	10
<표 1-3> 구술자 명단	11
<표 2-1> 현충일 추념식의 순서	37
<표 2-2>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현황	41
<표 3-1> 사월제 공준위 구성원	70
<표 3-2> 사월제 추진 및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 집회	75
<표 3-3> 사월제의 형식과 순서	78
<표 3-4> 사월제 기간의 순례	81
<표 3-5>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6
<표 3-6>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의 특징	93
<표 3-7> 합동위령제의 기념대상자	96
<표 3-8> 합동위령제의 장소와 제단의 유형	99
<표 3-9> 합동위령제의 순서 및 의례사	101
<표 3-10> 전야제의 내용	106
<표 4-1> 기념사업과 관련된 4·3특별법 법조항	113
<표 4-2>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115
<표 4-3> 합동위령제의 봉행위원회의 변화	117
<표 4-4> 합동위령제의 기념대상자의 변동	121
<표 4-5> 합동위령제의 장소와 제단의 유형 변화	125
<표 4-6> 합동위령제의 순서 및 의례사의 변화	132
<표 4-7> 유족단위 위령제의 원초적 사건과 희생자	138
<표 4-8> 국가 탄압에 대한 유족들의 경험과 태도	139
<표 4-9> 복촌위령제의 순서	150
<표 4-10> 백조일손위령제 정부지원 현황	155
<표 4-11> 백조일손위령제의 순서	158

<표 4-12> 제주민예총의 해원상생곳 현황	178
--------------------------------	-----

〈그림 목차〉

〈그림 2-1〉 제주시 충혼묘지 조감도	35
〈그림 2-2〉 현충일 추념식 광경	38
〈그림 2-3〉 1990년 원동마을 무혼굿	49
〈그림 2-4〉 반공국가 시기 4.3기념의례의 역학관계	59
〈그림 3-1〉 사월제 거리 집회 및 추모제 광경	77
〈그림 3-2〉 제주도 모형의 합동위령제 제단	99
〈그림 3-3〉 민주화집단의 등장과 4.3기념의례의 역학관계	108
〈그림 4-1〉 합동위령제의 기념대상자	122
〈그림 4-2〉 4.3평화공원조감도	124
〈그림 4-3〉 개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유족들	126
〈그림 4-4〉 만장과 조화	129
〈그림 4-5〉 합동위령제의 유족고사와 식전 행사	130
〈그림 4-6〉 합동위령제의 광경	131
〈그림 4-7〉 꽃놀림의 재현과 북촌위령제	146
〈그림 4-8〉 북촌마을과 너븐숭이 일대	147
〈그림 4-9〉 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 조감도	148
〈그림 4-10〉 북촌위령비	149
〈그림 4-11〉 첫알오름 학살터와 백조일손지묘 일대	154
〈그림 4-12〉 백조일손지 묘역 조감도	154
〈그림 4-13〉 백조일손위령제의 광경	158
〈그림 4-14〉 행불인 수형인 희생자 선정 문제	163
〈그림 4-15〉 향불인 진혼굿의 연유담	164
〈그림 4-16〉 행불인 진혼굿의 유족들	164
〈그림 4-17〉 조상신에게 절을 올리는 유족들	171
〈그림 4-18〉 행불인 진혼굿의 질치기	173
〈그림 4-19〉 이덕구 가족 묘지와 이덕구 비	176

<그림 4-20> 해원상생곳의 공연들	180
<그림 4-21> 국가의 합동위령제 수용과 4·3기념의례의 역학관계	181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玄 惠 慶

全南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指導教授: 鄭 根 植 · 崔 晶 基)

(국문초록)

격동적인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주43사건에 대한 평가와 담론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담론의 유포는 주로 기념의례들을 통해 이뤄졌는데, 기념의례는 집단의 경험이나 평가를 특정한 시공간적 이미지에 배치시킴으로써 그 경험이나 평가를 안정시키고 명료하게 만들었기에 43기념의례들의 담론적 효과는 매우 컸다. 이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이 오랫동안 기념의례들을 통해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에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실제 구체적인 의례의 텍스트들이 담론이나 사건을 부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의 형성과정과 형식 및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인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43사건에 대한 담론들은 시기에 따라 어떤 기념의례들로 생산되어 나타났는가? 그리고 각 기념의례들은 상호 어떤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둘째 그 과정에서 담론이나 사건을 부상시키는 각 기념의례의 텍스트들은 어떤 형식과 구조로 이뤄져 있는가? 셋째 이러한 기념의례의 형성과정과 텍스트에 관여한 여러 사회학적 변수들은 무엇인가?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43사건과 관련된 기념의례들은 크게 위령제, 추모제, 굿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념의례의 형식들은 주체들에 따라 뚜렷한 선호 의식이 있었는데, 국가는 위령제를, 민주화 집단은 추모제와 굿을, 유족들은 위령제와 추모제, 굿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 주체들은 한국사회

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 기념의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산폭동, 민중항쟁, 양민학살, 국가폭력, 평화 등의 담론을 전개해왔는데, 이런 상황은 각 주체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각 기념의례들을 배치되도록 하였다.

둘째 이러한 역학관계는 각 기념의례들의 텍스트 구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주로 기념의례의 대상, 기념의례의 시공간, 기념의례의 형식들이 주체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달리 나타났다. 주체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기념의례들의 양상은 크게 세 시기를 통해 변화를 보였다. 1차 시기는 국가의 군경 및 우익희생자만을 기념대상으로 삼는 충훈위령제와 이들에게 희생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고통과 같은 기념의례가 잠정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다. 이 시기 공산폭동이 사회 주도 담론이었다. 2차 시기는 새로운 주체인 민주화 집단이 민중항쟁론을 주장하고 국가와는 다른 민간인 및 무장대 희생자들을 공개적인 기념대상으로 삼는 추모제를 개최하면서 기념의례를 둘러싼 갈등들이 표면화 된 시기였다. 그리고 갈등 끝에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공동 의례가 모색되어 합동위령제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양민학살론이 사회 주도 담론이 되었다. 3차 시기는 국가가 간부급 무장대 희생자만을 배제하고 나머지 희생자들을 모두 국가 기념의례의 대상으로 삼는 시기로, 기존 충훈위령제 외에 합동위령제를 수용함으로써 국가의 두 가지 전략을 보여주는 시기였다. 이 시 국가의 두 가지 전략을 드러내듯 평화라는 담론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 유족들과 민주화 집단도 새로운 기념의례들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새로운 면모는 새로운 담론과 역학관계를 조성하면서 기념의례들의 속성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런 형성과정과 형식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외부환경이 주체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그것은 원초적 사건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수들이었다.

원초적 사건은 희생자와 학살터와 같은 유산과 경험자들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다면 정치적 요인은 크게 정치체제의 변화, 한국사회의 민주화, 지방자치제도 등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회적 요인들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그것에 영향을 받은 4·3진상규명운동 등 일련의 사회운동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제적 요인은 기념의례 형성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확보 방식에 따라 기념의례가 영향을 받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은 국가전담 방식, 지방

정부전담 방식, 민간조달방식 등이었다. 문화적 요인들에서 ‘희생’의례와 관련된 제주사회의 문화적 특성들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의례구성은 완전히 창조적일 수 없었다. 이전 의례에 영향을 받는 방식은 완전히 모방하거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것과 경쟁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회구조적인 변수 외에 기념의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의례주체들의 지향점이나 각 주체들의 대응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개입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4·3사건과 관련된 기념의례들은 여러 사회학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 주체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다양한 기념의례들이 형성되었고, 각 기념의례의 텍스트들은 주체들의 4·3사건에 대한 평가와 담론을 안정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주도의 기념의례가 관례적 기념이라는 제도화된 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4·3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의미를 퇴행시키고 있다. 이는 역사 속에 담긴 본질적 의미를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0세기 세계는 대량학살의 시기였다.¹⁾ 2차 세계 대전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대량학살이 일어났다. 이 시기 한국에서도 대규모 대량학살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43사건(이하 43사건)이었다. 43사건은 냉전이 형성되는 시기이자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일어난 대량학살 사건이었다.²⁾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2003년에 나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4월 3일에서

1) 대량학살(genocide)이란 램킨(Raphael Lemkin)이 처음으로 쓴 용어로, 허쉬(Hirsch)에 따르면 ‘특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Hirsch, 1995). 대량학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유엔의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살해, 고문, 강탈, 성폭력과 같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식료품 및 의료 서비스의 박탈과 강제적 소개 같은 비인간적 생활조건의 부과,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 어린이들의 강제 이송, 물리적 폭력, 폭력의 위협과 강압 같은 현상이 중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의미한다(최호근, 2005).

2) 권귀숙은(2006)은 갠슨(Gamson, 1995)의 논의를 빌어 대량학살의 가해자는 특정 정권이며, 이러한 행위의 발생은 조직화된 폭력 기구와 살상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나 정권이 없으면 가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격대상은 인종, 종교, 민족 등 다른 집단이거나 특정 정권에 대항하는 집단이었다. 이런 점에서 43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7년 간 이루어졌고, 살해, 고문, 강탈, 성폭력 등의 행위와 강제적 소개가 있었고, 공격대상은 제주 섬사람이라는 타 집단인 동시에 정권의 정책(단독 선거 등)이나 국가기구의 행위(경찰, 서북청년단의 탄압과 위협 행위)에 저항한 대항 세력이었다는 점, 43사건이 국가범죄라는 점, 대부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었다는 점, 좌익이 공격목표였던 점 등을 들어 제노사이드, 즉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3사건이 제노사이드라고 불릴 수 있는 대량학살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서중석(1999), 김영범(1999), 허상수(2003) 등은 제노사이드인 대량학살의 측면으로 보지만, 김동춘(2000)은 ‘정치적 학살’로 명명하고 있다. 최호근(2005)은 제노사이드의 여러 기준과 43사건을 비교하는 것을 비롯해 43사건에 대한 한국 내의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43사건은 정치적 목적에서 기도된 억압적 성격의 제노사이드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는 명확히 제노사이드(대량학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다. 43사건을 제노사이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최호근의 책(2005)을 참조할 것.

1954년 9월 21일까지 일어난 국가 기구에 의한 대규모 주민 희생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³⁾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의 경우 국가가 표명한 공식 평가 외에는 말할 수 없고 추모할 수도 없기에, 4·3사건의 경우 국가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오랫동안 ‘침묵’, ‘외면’, ‘방임’, ‘수궁’ 등의 태도를 보여 왔다. 원초적 사건 발발 직후부터 국가가 표명한 평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시작된 국가의 공식 기념의례를 통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유포되었는데, 이는 근대적인 국가 질서를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 담론 정치였다.⁴⁾

이에 대해 민간 영역에서는 국가의 평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스콧(Scott, 1990)이 말하는 ‘숨겨진 사본(hidden transcript)’을 가진 주민들이 존재했다.⁵⁾ 이들은 대부분 ‘연좌제’의 공포 속에서도 일상의 영역에서 국가와는 다른 평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종종 문화적인 선택과 구성을 띠었다.⁶⁾

3) 제주4·3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은 미군정 시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1947년 3·1절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명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희생 당한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우나, 자료들에 따라서 최대 3만 이상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희생자로 신고 접수된 자는 1만 4천여 명에 이른다.

4) 프랑스와 미국에서 기념일이 제정되고 기념행사가 치러지기 시작한 것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과거(구시대)와의 처절한 단절의 집단 기억(신시대)을 형성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근대적 신생국으로서 프랑스와 미국은 그 국가형성의 기초가 처음에는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기념의 노력이 강했다(김영범, 1998: 195-196; Giddens, 1985). 이것은 기념을 통한 국가 담론의 정치 사례를 보여준다. 김종엽(2004)은 이것을 ‘기념의 정치학’이라 했다.

5) Scott(1990)은 지배 엘리트에 의해 공개적으로 승인된 것들로 구성되어, 대개 엘리트에게 아첨하는 자기 이미지를 취하는 공적 사본(public transcript)과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의 시선 외부에서 지배와 불협화음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가슴 속에 묻어두고 따라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방도를 거의 찾을 수 없는 전복적인 감정을 소위 숨겨진 사본(hidden transcript)으로 특징짓는다. 이것은 피지배 집단의 정치적 담론을 가장 안전하고 대중적인 형태로 존재케 한다.

6) 19세기에 들어서면 대중들도 기록하고 보존하고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된 것처럼(강 혁,

이러한 숨겨진 사본이 공개적인 저항으로 나타난 것은 1987년 이후였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기존 권위주의 국가 및 군사정권에 대한 도전과 함께 국가 담론을 생산하고 있던 많은 국가 기념의례에 대한 도전을 확산시켰다. 도전은 주로 문화운동 등을 통한 새로운 담론의 창출로 나타났는데, 제주지역 민주화집단도 국가주도의 담론에 도전하는 4·3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가 담론과는 다른 담론을 창출해 나갔다.⁷⁾ 그 문화운동의 핵심에는 언제나 4·3기념의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국가와 다른 담론의 실전은 바로 국가의 탄압을 받았는데, 국가 탄압은 오히려 적극적인 의례투쟁의 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4·3유족들도 가세하여 국가 담론을 옹호하는 유족들과 민주화 집단의 담론을 옹호하는 유족들로 나뉘어 갈등하면서 각각의 기념의례를 구성하는 등 담론투쟁은 의례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화는 국가에 의한 억압적 통제 방식을 관철시킬 수 없었으며, 새로운 정치권력에게 과거 정권이 내린 4·3사건의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와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시작으로 지역권력의 창출이 지역 사회에 있자 4·3사건의 문제해결은 지방권력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새로운 지방권력들은 4·3사건에 대한 기존의 국가 담론을 수정하거나 혹은 부정함으로써 저항적 담론투쟁을 단절시키고 가시적 전략을 통해 권력의 안정과 차별을 꾀하고자 했다. 그것은 지방권력이 나서서 대립하고 있는 각 기념의례들을 타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여러 주체들이 합동으로 치르는 4·3기념의례가 탄생하였다. 이것은 4·3사건에 대한 각 주체들의 기존 평가와 담론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9), 문화의 선택과 구성은 지배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들 역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재생산하고 저항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나 문화를 이용하였다(김창민, 1995; 권귀숙, 2006a). 학생운동에서 샤머니즘이 저항의 중심이 되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나 제주도의 4·3항쟁에서 민중들의 기억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무속이 이용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김창민, 1995). 강 혁(1999)의 언급처럼 이는 정치사회체제의 특성과 관계없이 매우 활발하게 대량생산되었다.

7) 민주화운동세력은 ‘항쟁’의 기억을 담아내는 문화적 재현을 주도했는데, 국가는 4·3이 ‘항쟁’이었다는 기억과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기념 의례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지만, 저항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에게 이전의 저항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김민환, 2003).

1990년대 후반 들어 또 한 차례 정권의 변화는 4·3사건 문제해결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낳았다. 4·3사건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권의 도래와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 분위기는 본질적인 4·3문제의 제도권 내 진입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4·3사건에 대한 기존 국가 담론의 수정을 이끌어내는 작업이었다.⁸⁾ 국가 담론의 수정은 새로운 담론의 창출이기보다 담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기념의례 또한 지방권력과 제주 주민이 함께 치르던 합동 기념의례를 확대 수용하여 국가 기념의례로 전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기존 기념의례의 형식과 구조에 ‘선택’과 ‘배제’의 전략을 취함으로써 국가 기념의례의 형식으로 만들어 갔다.

이러한 전략은 다른 주체들, 즉 민주화 집단과 유족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의 대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국가의 4·3기념의례로 정비되어 가는 기념의례를 두고 국가, 민주화집단, 유족들의 상징 투쟁이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4·3기념의례와 별도로 각 주체들만의 새로운 기념의례를 만들어 국가의 담론을 유포하거나 국가와는 다른 저항적 담론을 유포하는 형태를 보였다. 때에 따라서 이 양자는 교묘히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의 기념의례에 여러 개의 담론이 경합을 벌이며,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전 시기를 통해 4·3사건과 관련된 기념의례들은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4·3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의 지형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유포되어 왔다. 기념의례들은 집단의 경험이나 평가를 특정한 시공간적 이미지에 배치시킴으로써 그 경험이나 평가를 안정시키고 명료하게 만들었기에 4·3기념의례들의 담론적 효과는 매우 컸다. 특히 이처럼 오랫동안 기념의례들을 통해 담론 투쟁을 벌여온 집단들이나 사건들도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있다고 해도 부분적인 사례 분석들뿐이다.⁹⁾ 전체적으로 4·3기념의례들을 통해 오랜 기간 벌여왔던 각 주체들의 담론투쟁과 역학관계는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다

8) 이 시기 국가에 의한 기념사업은 4·3사건만이 아니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희생자를 안장한 집단 묘지를 국립묘지로 명명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공식적 평가를 반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행위를 국가 보호 체제에 포괄하여 국가화한다(정호기, 2005: 212).

9) 4·3사건과 관련된 의례분석은 치병과 관련된 곳을 분석한 김성례(1989)의 연구가 처음이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4·3예술회, 위령제 등을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뤄졌다.

특히 담론을 의미 있게 만들고 유포시키는 것은 의례 그 자체가 아니라, 의례의 텍스트들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담론은 본질적으로 텍스트를 가진 문화적 장치에 의해 가공물이 된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도 의례의 텍스트와 만나는 순간 의례적으로 구성되어 배포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행위적으로 구성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다. 첫째, 4·3사건과 관련된 주체들의 담론실천은 주로 기념의례들을 통해 전개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담론들은 시기에 따라 어떤 주체들에 의해 어떤 방식의 기념의례들로 구성되어 나타났으며, 각 기념의례들 간의 역학관계는 어떠했는가?

둘째, 구체적인 텍스트들이 담론이나 사건을 부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4·3기념의례들이 어떠한 형식과 구조로 이뤄졌는가? 이 문제는 4·3기념의례들의 형식과 구조 분석을 통해 어떻게 담론이 의례적으로 구성되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4·3기념의례들이 형성되기까지 사회학적 변수들은 무엇인가? 기념의례는 역사적 경험이나 평가가 그대로 바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나 시기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념의례 자체가 생성·소멸되기도 하고, 형식과 구조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3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기념의례들의 형성과정을 비롯해 형식 및 구조를 분석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밝혀냄으로써 담론의 실천과 유포에 기념의례가 어떤 역할과 의미를 지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4·3기념의례의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가. 4·3기념의례의 개념규정과 범위

‘기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이다. 이것이 시공간적 틀을 가지며 구체적인

수행을 할 때 우리는 기념일, 기념물, 기념 공간, 기념의례 등과 마주하게 된다. 기념주체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시간적 틀인 기념일은 이에 호응하는 공간적 틀인 특정 공간과 쌍을 이루어 존재한다(정근식, 2006). 기념의례와 같은 기념행위는 시간적 장치와 공간적 장치를 매개하며, 이를 통하여 기념주체는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담론을 세대적으로 전승하고자 한다.

알박스에 의하면 기념의례는 확실한 과거상을 유지시켜주는 시공간이다. 여러 의례적 집합 표상들에 의해 집합체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상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과거의 사고가 가능해진다(Halbwachs, 1992). 때문에 ‘4·3기념의례’라고 불리는 의례들에 기대하는 것은 보통 4·3사건과 관련된 망자 추모 및 과거사의 상상적 재현이다. 그러나 ‘4·3기념의례’라고 해서 개념이 확실히 규정된 적은 없다. 4·3기념의례만이 아닌 이와 비슷한 한국의 많은 기념의례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건명 뒤에 ‘기념의례’ 혹은 ‘의례’라는 이름을 붙여 개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월 의례, 4월 의례가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을 표상하고 있다.¹⁰⁾

4·3기념의례라고 명명되어지고 있는 많은 의례들에는 몇 가지 공통적 조건이 나타난다. 첫째, 원초적 사건의 유산인 희생자, 부상자, 수형인, 유족 등과 같은 유산이 현재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4·3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계승하

10) 이 문제에 대해 이 분야의 연구진들이 개념에 대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정근식은 5·18의 경우 ‘5월 의례’, ‘5월 행사’와 같은 명칭으로 관련 의례를 설명하고 있다. 4·3사건에 대한 기념도 ‘기념’이나 ‘주기’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단 의례만이 아닌 문학, 영상, 극, 미술 등에서도 나타나 5월 문학, 5월 미술 등과 같은 유사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4·3사건의 경우도 4·3문학, 4·3증언, 4·3영상(다큐멘터리), 4·3극, 4·3미술, 4·3의례 등으로 4·3과 매체를 결합하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통의 성립 조건이 있다. 첫째, 원초적 사건이 발생시킨 유산이다. 사망자, 부상자, 수형인 등 4·3사건의 희생자들을 포함한 상흔이 남아 있어 그것이 자원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모두 매체를 동원한 재현 방식을 통해 4·3사건의 과거사를 현재 새롭게 구성하고 있으며, 매체에 따른 속성으로 인해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셋째, 증언을 제외하고서는 소위 매체 전문가 집단이라는 성원들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다만 의례는 전문가적 속성과 민중적 속성 양쪽을 모두 가지고 있다. 넷째, 이러한 실천 활동의 목적이 동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을 묶어내고, 더 궁극적으로는 후세대의 전수 및 현재의 체반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하나의 담론이자 수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세부적으로는 그 연구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소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의미가 담겨 있는 축제적·제의적 행위를 실행한다. 셋째, 4·3기념의례를 통해 의례주체의 현재적 담론을 정치적으로 표방한다. 넷째, 이것을 위해 특정 시공간에 물리적·상징적 자원을 동원한다. 이에 따라 4·3기념의례라고 하는 것은 4·3사건의 원초적 유산을 토대로 현재의 정치적 욕구를 추모와 계승의 축제적·제의적 형태로 실행하기 위해, 특정 시공간에 지속적인 물리적·상징적 자원의 동원이 일어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4·3기념의례들을 모아보면 개인적 추모제의에서 사회적 추모제의를 비롯해 연극, 전시회, 음악회 등의 추모 행사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모 제의에 한정하여 4·3사건 관련 기념의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4·3사건 관련 개인적 추모제의를 현황은 그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 다 파악할 수 없으나, 사회적 추모제의를 <표 1-1>과 같다.

<표 1-1> 현재 제주지역사회에서 실행 중인 4·3기념의례

기념의례명칭	형식	기념주체	기념대상	기념일	시작 년도	현재 상태
충혼위령제 (현충일추념식)	제사 위령제	국가보훈기관	군경유공자 우익유공자	매년 6월 6일	1956년	지속
전몰군경합동위령제	위령제 친도제	전몰군경미망인회	군경유공자 우익유공자	매년 음력 3월 25일경	1966년	지속
제주43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반공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4월 3일	1991년	1993년 소멸
사월제	추모제	사월제 공준위	민간인 희생자 무장대 희생자	매년 4월 3일	1989년	1993년 소멸
전야제	굿	제주민예총	민간인 희생자 무장대 희생자	매년 4월 2일	1994년	지속
해원상생굿	굿	제주민예총	민간인 희생자	매년 4월	2002년	지속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43유족회 사월제 공준위	민간인 희생자	매년 4월 3일	1994년	1999년 소멸 (법도민 위령제로 개칭)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제사 위령제	제주43사건희생자범도 민위령제 봉행위원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4월 3일	2000년	2005년 소멸 (희생자 위령제로 개칭)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제사 위령제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4월 3일	2006년	지속
유족위령전야제례	제사	43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4월 2일	2005년	지속
행방불명인 진혼제	위령제 추모제 굿	43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행방불명인수형인	매년 4월	1999년	지속
백조일손영령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백조일손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음력 7월 7일	1993년	지속
현의합장묘 영령위령제	제사 위령제	현의합장묘43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음력 8월 24일	2003년	지속
북촌리43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4.3희생자북촌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음력 12월 19일	2000년	지속
만병디영령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7.7만병디 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음력 7월 7일	2001년	2007년 소멸
삼면원혼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삼면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음력 6월 15일	2001년	지속
영모원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하귀리 개발위원회	항일운동가 43희생자 43 및 한국전쟁호국영령	매년 음력 1월 3일	2003년	지속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사 위령제	북부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6월 25일	2005년	지속
성산읍 43사건 희생자 추모위령제	제사 위령제	성산포발전협의회	민간인 희생자	매년 11월 17일	2006년	지속

이런 추모제의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치러져 왔거나 치러져오고 있는 기념의례들로 연행형식과, 연행대상, 연행주체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연행형식에 따라 위령제와 추모제, 굿과 기제사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연행대상에 따라 크게 무장대 희생자, 민간인 희생자, 토벌대 희생자 등으로, 연행주체에 따라 국가(지방정부 포함), 제주지역 민주화 집단, 유족회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들 중 주체들에 따라 어떤 희생자를 어떤 형식의 기념의례로 실행하느냐가 주로 결정되지만 시기의 사회구조의 지형에 따라 각 주체들의 기념대상과 기념형식은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표 1-1>중에서 다소 유사 기념의례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유족회 단위 위령제의 몇 사례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¹¹⁾ 또한 유족들 개인적 차원의 기념의례들을 일부 포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념의례와 사회적 기념의례 간의 차이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통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례에 접근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두루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참여관찰, 구술사 등이다. 이는 각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례에 맞게 연구방법을 동원하고자 함에서 비롯되었다.

유족들의 개인 추모제의의 경우 문헌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관찰과 구술사에 의거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오래된 기념의례들의 경우는 문헌연구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가급적 모든 기념의례들에 참여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영상채록을 활용하여 참여관찰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각 사례는 텍스트 분석을 행한 후 사례마다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의 비교분석에 이어 다음으로 사용된 연구방법은 비교 사회학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각각의 의례들이 보여주는 특성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어떤 사회학적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지속적인 참여관찰과 조사 등을 통해 문헌자료 및 영상자료와 구술 자료를 확보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2000년 이전의 사례들

11) 이 표는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표로, 이외에도 몇몇 위령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로 미처 다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에서 유족 위령전야 제례를 비롯해 현의합장묘 영령 위령제, 만백년 영령 합동위령제, 삼면 원혼 합동위령제, 영모원 합동위령제,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위령제, 성산읍 43사건 희생자 추모위령제 등의 유족단위 위령제를 제외하였다. 유족단위 위령제의 경우 대표적으로 북촌 4.3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백조일손 영령 합동위령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에 대해서는 문헌자료와 구술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이후 시기부터는 영상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다. 영상자료는 참여관찰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점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활용되었다.

사례별로 보았을 때 4·3사건 관련 곳은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곳은 국가에 의한 통제로 그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는데, 제주방언으로 구성되어 소수의 연구자를 제외하곤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저했기 때문에 문헌자료도 많이 수집되어 있지 못해 상당부분 구술에 의존해야 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다시 곳이 활성화되면서 참여관찰 및 영상채록을 할 수 있어서 몇몇 곳 자료를 실제로 수집할 수 있었다. 반면 추모제 및 위령제의 경우 문헌과 영상, 구술 자료 등을 골고루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시기마다 작성되었던 추모제 및 위령제의 자료집들은 기념의례의 전체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대상별로 보면, 토벌대 희생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문헌과 구술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문헌과 구술, 영상 등이 동원되었다. 무장대 희생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구술과 영상 등을 통해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자료수집 목록은 <표 1-2>와 같다.

<표 1-2> 자료수집 현황

의례명칭	의례대상(신위)	시작년도	자료수집형태	수집된 자료의 범위
충혼위령제(현충일추념식)	139위	1956년	문헌/영상	1965-2008년
진몰군경합동위령제	-	1966	구술	2007-2008년
민간인희생자합동위령제	1만4천여위	1994년	문헌/구술/영상	1994-2008년
사월제	-	1989	문헌/구술	1989-1993년
전야제	-	1994	문헌/구술	1994-2008년
해원상생굿	-	2002	문헌/구술/영상	2002-2008년
북촌위령제	443위	2003	문헌/구술/영상	2003-2008년
백조일손위령제	132위	1959/1993	문헌/구술/영상	2003-2008년
행방불명인위령제	3729위	2000	문헌/구술/영상	2000-2008년
북촌마을 기제사	-	1950	구술/영상	2006년
성산포 유족의 굿	-	1999	구술	1999년
이덕구 관련 기념의례	29위	2007	문헌/구술/영상	2007년

문헌연구와 영상자료가 부재한 기념의례에 대해서는 구술자의 면담에 의존하

였는데, <표 1-3>은 구술자 명단이다. 구술자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4·3사건 관련 기념의례들과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의례투쟁 및 담론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구술자 명단 외에도 각 유족회의 많은 유족들이 증언을 해 주었다.

<표 1-3> 구술자 명단

구술자	주요경력	구술일자
A	충훈각 주지	2008.
B	제주도의회	수시
C	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수시
D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수시
E	4·3사건 희생자 복춘유족회장	수시
F	백조일손유족회장	2005.
G	제일본제주4·3유족회장	2006.
H	제주도의회	2003.
I	제주4·3연구소사무처장	수시
J	제주민예총지회장	2003.
K	제주4·3연구소 연구원	수시
L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	수시
M	4·3관련 곳 경험자	1999.
N	심방	2003.
O	심방	2007.
P	제주지역 총학생 협의회장, 제주도의원	수시
Q	4·3진상규명동지회	2007.

다.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기념의례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로 구성될 것이다. 제3장은 반공 국가시기 4·3사건에 대한 평가와 기념의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의례 형식상 어떤 구조로 담론배포에 유용하게 이뤄져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 국가에 의해 억압당했던 유족들의 기념의례가 어떻게 국가의 눈을 피해 문화적 장치에 의존하면서 대항적 담론을 의례 형식에 구현해 왔는지 살펴보게 된다. 또한 그것에 관여한 변수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제4장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한 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민주화집단의 4·3기념의례를 통해 국가의 공적 담론에 어떻게 투쟁하고 있으며, 이후 가세한 다양한

주체들의 담론투쟁과 의례투쟁과정이 의례 형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변화시킨 담론의 지형과 변수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제5장은 새로운 정권 이후 변화하는 국가 담론과 그것이 기념의례에 구현되는 방식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이것이 각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각 주체가 이에 대해 갖는 태도를 그들의 기념의례를 통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변수들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6장은 결론으로 제3장에서부터 제5장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역사적 전개를 통해 4·3기념의례의 지형을 살펴보고 기념의례의 형식과 담론이 어떻게 관계가 있으며 거기에 관여했던 변수들을 종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3.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가. 기념의례에 대한 이론적 전개

의례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종교의 기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논의는 확대되어 현재 종교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분량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 한 질문은 의례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것들로 사회 현상으로써 의례가 어떻게 사회 집단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회학에서 의례 연구의 고전 주제가 되었다.

사회학 영역에서 의례 연구는 에밀 뒤르켐(E. Durkheim)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를 통해 종교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써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와 연대를 성화(聖化)하는 일련의 관념들과 실천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¹²⁾ 뒤르켐은 종교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방법에서 제의들과 의식들이

12) 뒤르켐은 한 문화의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있었던 최초의 신념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한 푸스텔 드 쿨랑주(N. D. Fustel de Coulanges)와 로버트슨 스미스(William Robertson Smith), 프로이트(Sigmund Freud)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뒤르켐에 의하면 의례들은 사회적 집단 자체가 주기적으로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공동체를 표현하는 성스러운 이미지들을 투사함으로써 열정적인 긴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종교가 사회적 유대라는 목적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국가적 사건들을 기념하는 국민의례들과 같은 훨씬 더 세속적인 형태들도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뒤르켐의 입장은 상징적 구분과 사회적 연대성 간의 매개는 의례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상징적 위협이나 사회 혹은 집단과의 사회적 연대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Alexander, 1990). 이 과정에서 의례는 성화된 상징에 초점을 맞추는 강력한 감정적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뒤르켐의 입장은 기념과 관련해서 알박스(M. Halbwachs)에게 영향을 주었다. 기억연구가 알박스(1980)는 기억의 ‘사회적 틀’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도 확실한 과거상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집단들은 어떤 식으로든 땅덩어리 위에 자기의 형태를 각인시켜 놓고 있으며 그 공간적 틀 안에서 자기들의 기억을 재생시키며 유지해 간다. 시간 역시 일, 월, 년, 계절 등으로 분절되는 집합표상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분할, 구획된 후 집합체 공통의 역사적 경험에 상응하는 여러 종류의 회상 틀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념의례가 과거를 상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과거의 사고와 기억의 재창조가 가능해진다(Halbwachs, 1992).

그러나 슈워츠(B. Schwartz)는 이에 대해 알박스의 논지는 일찍이 뒤르켐(1912(1992))이 종교의식 또는 축제에서 발산되는 ‘집합적 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이 도덕감정의 강화와 사회적 연대의 모태로 본 관점과 비슷하지만, 의례의 거행이나 경축행사에서 과거의 이미지와 과거추념적 의식이 전달, 유포되는 경로와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아직 알박스에게서 결여되고

흥분(effervescence)의 감정을 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개인들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보다 더 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더 큰 실재, 곧 실제로는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적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지각과 일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뒤르켐은 신을 사회적 집단 자체의 표상으로 봄으로써 사회 심리적 투사의 메커니즘을 전개했는데, 그것은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뒤르켐의 시도들은 사회적 현상에 초점을 맞춰져 있음에도 결정적 문제 중 하나는 그가 의례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 경험으로서 흥분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다소 심리학적 묘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뒤르켐의 제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을 비롯하여 앙리 위베르(Henri Hubert)는 의례가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는 방식 자체를 강조하여 뒤르켐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측면의 한계를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다(Bell, 1997).

있다고 보았다(Schwartz, 1996a; 1997). 그는 미국인들의 링컨(A. Lincoln)에 대한 기억이 세대마다 다른 것을 파악하고는 기억체제의 시계열적 변화에 주목하였다(Schwartz, 1996b; 1997).

이런 질문에 또 다른 측면은 상징적 행위와 기호 등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적 기제들에 대한 연구를 추동했다. 알박스가 기념의례로부터 과거의 기억이 구축된다고 보았다면 알박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에르 노라(Nora)는 프랑스의 모든 도시와 기념비, 박물관, 궁전, 깃발, 기념일, 의례, 축제, 순례 등의 분석을 통해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 행위와 기호, 그리고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적 기제들이 실상은 진실한 기억의 부재를 나타내는 상징화된 이미지를 밝혀냈다(Nora, 1989; 2001; 2006). 이는 기념의례를 포함한 기억의 매개물들이 실상은 망각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하게 한 최초의 연구였다. 이후 알박스와 노라의 연구를 이은 아스만 부부 얀(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개별 기억들이 통합되고 갈등하면서 집단 기억을 형성, 전수,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텍스트, 신화와 종교적 제의, 기념물 및 기념 장소, 문서보관소 등 다양한 기념 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억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송되는 형식을 규명했다(Assmann, 2003).

이와 달리 기념의례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종종 ‘기억의 정치’나 ‘담론 정치’로 표현되었다. 이런 연구는 정치적 의식과 욕망이 어떻게 의례적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있다. 의례는 공식성과 반복성을 통하여 기억을 보존함과 동시에 과거를 재해석하거나 기억을 재구성한다(Connerton, 1989). 이때 의례 내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매체에 가해지는 정치사회적 힘이다.

에릭 홉스봄은 19세기 국민국가를 분석하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유럽의 국경일과 같은 기념의례들이 실은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 혹은 전통의 창조)’으로 창조된 ‘공식 기억’을 믿도록 하는데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문제는 그런 창조와 발명이 실제 역사와 동떨어져 있으며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된다는 사실이다(Hobsbawm & Ranger, 1983). 이런 시각은 국가 담론이 기념의례를 통해 어떻게 조작·유포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이다.

그러나 19~20세기에는 국가만이 아닌 민중들도 나서서 자신들의 저항적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셀비(selby, 2001)는 기억의 구체문제를 다루면서 기념의례의 역할이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1995년 이후 대학살의 장소로 추정되는 아르헨티나의 차꼬에서 해마다 열리는 의례적 시도들이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단서임을 제시하였다.¹³⁾ 한편으로 게릴라들 또한 스스로 애국적 동기를 다시 주장하면서 의례의 선두에 서서 민중항쟁의 투사들이 되기를 시도했다며 아르헨티나의 기억투쟁 한 복판에 기념의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민중들은 적극적 투쟁보다 소극적 투쟁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임스 스콧(Scott, 1990)은 말레이시아 농촌마을의 분석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들의 전통적이고 일상적인 의례적 저항이 지식인의 저항의례 못지않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런 접근들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주입장치로 바라보는 기념의례에 대한 시각을 견제한다. 국가 담론을 주입하는 ‘전통의 재창조’로써 의례를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그와 갈등하는 민중적 차원의 의례전개도 민중담론 전개에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양자의 시각에 기반한다. 기념의례를 통해 국가담론의 유포와 그에 대한 저항으로써 나타나는 기념의례와 의례투쟁을 통해 국가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지는 중요하다. 다만 이런 담론이 의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던 슈워츠나 아스만의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기념의례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부분 ‘한국의 민주화 운동’ 및 ‘과거사 청산’과 관련이 있다. 전자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유발한 사회운동과 기념의례를 관련짓는다. 정근식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달성하려는 운동의 동력은

13) 1995년 아돌포 실링고(Adolfo Scilingo)가 자신의 책임 하에 죄수들에게 마약을 먹여 ‘죽음의 싸움(vuelos de muerte)’을 하도록 시켰으며, 그들의 사체는 대서양에 수장시켰다고 고백함으로써 군부와 우파를 곤경에 빠뜨렸다. 그리고 군부 내에 있는 세 분파의 대변인들은 자신들이 법을 어기고 죄수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문에 고백하였다. 차꼬에서는 대학살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 후 해마다 차량대열은 레시스펜시아(Resistencia, 죄수들이 갇혀있던 곳)의 도시 중심부를 떠나서, 죄수들이 수송되었던 경로를 따라 40킬로미터를 행진을 해 오고 있다(Selby, 2001: 28-29).

1980년의 5·18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동시에 민주화의 요구를 표현하는 장으로써 ‘5월 운동과 장례 투쟁’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광주에서 이루어진 장례투쟁은 한편으로는 국가 폭력성을 폭로하는 중요한 상징적 기념의례로 기능하였고, 동시에 광주의 민주 성지로서의 상징성을 강화시켰다(정근식, 1999: 2003).

정호기(2003)는 4·19기념에 대한 의례투쟁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의례와 더불어 민중운동의 확산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났던 기념의례에 대한 투쟁이 국가에 의한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자연스런 망각을 유도하고 있음도 밝혀냈다. 이는 의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지형을 분석한 것이었다.

후자는 기록된 역사의 부재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들이 기념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부터이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국가의 공식 평가와는 다른 대항기억의 보존 차원이나 기억투쟁 혹은 기억의 정치 지형 속에서 기념의례 재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1980년대까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역사적인 집단 기억과 집단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전개들이 이뤄졌는데, 김영범(1991; 1998)은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을 분석해냄으로써 기억과 집단 정체성의 관계 및 기억의 정치 관련 연구를 자극하였다.¹⁴⁾

기억의 정치 연구는 이후 많은 기념 공간 및 기념비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기념비와 기념공간과 관련된 연구들은 동학 100주년을 계기로 촉발되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념공간 및 기념비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고, 한국전쟁 연구의 심화는 전쟁 관련 기념물에 대한 연구를 수반하면서 상당한 축적물이 쌓였다. 동학 농민군과 관련된 연구는 박명규(1997; 2001)등이 있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동춘(1999) 등이,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김미정(2002) 등이 있다. 정호기(2004; 2005)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14) 김영범, 1991, 「망델리테사: 심층사의 한 지평」,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1, 문학과 지성사. 그리고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기념의례만을 중점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시기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제주4·3사건 등과 관련된 기념의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김성례(1989)는 제주 무속 의례가 4·3에 대한 역사적 폭력을 기억하는 문화적 텍스트이자, 대항적 담론(counter-discourse)을 형성하는 대체 공간(alternative space)으로 봄으로써, 국가와는 다른 기억이 전통의례의 체제를 통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민환(2003)은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기념일에 대한 기억의 정치 양상을 분석하고 기억의 정치의 주된 이슈는 기억주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순차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망각되었던 사건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하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기억의 정치 혹은 담론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기억의 정치나 담론 정치는 의례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간과하고 있다.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질문에 정근식(1995)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와 신지도의 항일 운동 기념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제하 항일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이 왜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며, 기념탑의 모양이나, 여기에 새겨진 역사성, 기념탑의 위치, 기념일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기억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기억은 무엇인가도 중요한 연구 주제임을 보여주면서 재현과 재현 이면에 자리한 여러 사회학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후 이 문제를 광주의 5월 행사와 전야제를 중심으로 항쟁의 기억이 의례적으로 재현되는 과정상의 변수를 고찰하여 의례체제에 의한 시민들의 집단적 감수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위적 차원에서 기념의례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담론정치는 어떻게 행위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나. 분석틀

4·3기념의례들의 형성과 구조에는 여러 사회학적 요인들이 관여한다. 이 사회학적 요인들에는 원초적 사건의 특징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인 외적 요인들이 관여하며, 내적 요인인 의례주체의 지향점과 각 주체들의 대응 속에서 구성되며 변화한다.

이런 외적·내적 요인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4·3기념의례들의 형성은 2단계 국면을 보여준다. 1단계 국면은 4·3사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기념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원초적 사건에 대한 평가에 의해 의례 구성이 모색되는 국면이다. 2단계 국면은 여러 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의례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차적으로 이 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해 위령제나 추모제 혹은 굿(기제사) 등의 기념의례 형식이 결정될 수 있다. 2차적으로 사회학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념의례가 생성·확대되거나, 기존 기념의례가 확대, 소멸, 변화할 수 있다. 3차적으로 의례속성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어떤 속성들은 새롭게 생성·확대될 수 있지만, 어떤 속성들은 소멸할 수 있다. 혹은 변화를 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례의 속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텍스트는 연행대상, 시간과 장소, 형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텍스트 분석에 필요한 항목은 장소 구속성, 서사성, 의도성, 매체성, 축제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¹⁵⁾ 이미 위령제, 추모제, 굿과 기제사 등과 같은 연행형식을 정할 때 이러한 속성들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지만, 같은 위령제일지라도 이러한 속성들은 다시 여러 사회학적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질 수 있다.

장소 구속성은 그 텍스트가 공원 등 공식적인가 아니면 학살터 등 비공식적인가 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사성은 텍스트에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상징적 구성에 치중하는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의도성은 정치적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혹은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데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매체성은 언어로 드러내는가? 혹

15) 정근식(2006)은 참여관찰의 항목이나 텍스트 분석의 항목은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현의 경우 그 텍스트의 장소구속성, 서사성, 의도성, 매체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은 어떤 상징적 행위로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축제성은 집합적 열광이 있는 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담론이 형성·유포되는 4·3기념의례의 형성과 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담론이 4·3기념의례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통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변수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4. 4·3기념의례의 역사적 전개

4·3기념의례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여러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사회 주도적인 담론과 주도적인 기념의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크게 3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1단계는 국가의 공산폭동론에 의거하여 기념의례가 진행되는 한편 국가로부터 공산폭동론과는 다른 담론을 형성하고 있던 민간의례가 탄압을 받던 단계이며, 2단계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져 민주화 집단의 저항적 기념의례가 대두하면서 민중항쟁론이 급부상하고 공산폭동론의 국가 기념의례가 도전을 받기 시작한 단계, 3단계는 4·3사건에 대한 주도 담론이 양대 담론에서 급격히 양민학살론으로 이동하면서 국가에 의해 4·3사건과 관련된 기념의례의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들의 기념의례가 확산되는 단계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3단계에 의거해 4·3기념의례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반공 국가 기념의례의 등장과 유족 기념의례의 억압

국가는 4·3사건 발발 직후부터 직접적 가해자였던 군경 및 우익희생자 등 토벌대 희생자 중에 군경 및 우익유공자만을 4·3사건의 공식적 희생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립묘지 및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을 위무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창설된 군인 및 경찰의 정통성 확보와 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강화된 이들에 대한 충훈위령제는 그러한 측면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

서 4·3사건은 근 40여 년 간 국가의 공식 역사에서 줄곧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한 좌익 무장대의 경찰관서 및 우익인사들을 습격한 ‘공산폭동’ 사건으로 기록되어 왔다. 따라서 4·3사건에 대한 ‘공산폭동’ 규정은 국가의 주민학살에 대한 합리화를 구성해왔다.

40여 년간 지속된 반공국가의 시각은 4·3사건 당시 희생된 주민들의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거나 억압했으며, 이 희생자들 상당수를 빨갱이 혹은 폭도라는 이미지로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족 및 후손들은 연좌제의 그물망 속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고립감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후손들 및 유가족들의 추모의 심리적 형태는 전통의례에 기대어 그들을 위무하는 사적인 의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굿과 기제사와 같은 의례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공국가는 철저히 탄압해, 당시 굿을 연행하던 심방들을 ‘경신연합회’라는 조직 속에 가두어 체계적으로 감시하였다. 한 심방은 4·3사건과 관련된 굿을 한 뒤,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감시를 받았던 일과 그 감시로 지독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상황들을 증언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심리적 억압 기제 속에서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시기 집단 매장지나 임시 묘역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뜻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 노출되지 않게 묘역에 모여 비밀 제사를 지내는 등 소극적인 저항만이 존재했다.¹⁶⁾

나. 민주화집단의 저항과 기념의례의 갈등

1987년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여러 사회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하는데, 제주 지역 민주화 집단에게도 영향을 주어 4·3사건이 ‘민중항쟁’임을 천명하는 새로운 평가를 내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간인 및 무장대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사월제 공준위)가 ‘추모제’를 시행했다. 이때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사월제 공준위는 유무형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한편 반공적 성격의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이하 4·3유족회)’가 발

16) 일부에서는 탄압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를 보여준 유족들도 있었다.

죽하여 공산폭동론을 주장하는 ‘위령제’를 개최하면서 사월제 공준위의 ‘추모제’와 대치하였는데,¹⁷⁾ 이는 ‘누구를 추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다툼의 파생물이었다.

이들의 대립은 공동개최를 요구하는 제주사회의 압력과 제주도의회의 중재 노력으로 1994년 4·3유족회 및 사월제 공준위 공동 주최의 합동위령제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 합동위령제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기념의례와는 다른 민간 기념의례의 첫 제도권 내 진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산폭동과 민중항쟁을 배제한 ‘양민학살론’으로 담론을 타협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만만찮은 내부 갈등을 겪었는데, 지방의회, 4·3유족회, 사월제 공준위 등 각 주체들의 갈등과 타협이 수시로 반복되기도 하고, 집단 내부에서도 내부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갈등이 외면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 합동위령제는 후에 국가의 기념의례로 수용되었는데, 이 시기 국가 기념의례와 민간 기념의례 중간의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새로운 국가 기념의례의 정립과 유족 기념의례의 확산

3단계는 4·3특별법의 제정과 공포로 ‘4·3사건 희생자’ 선정과 기념사업의 주도권이 국가로 넘어가면서 합동위령제도 국가 기념의례로 수용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이때 국가는 공산폭동론의 충혼위령제를 존속시키는 가운데, 양민학살론의 합동위령제를 수용하여 점차 ‘평화’와 같은 추상적 담론으로 새로운 담론을 모색

17) 이 시기 4·3유족회는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및 우익 유족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다분히 반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민주화 진영에서는 ‘반공유족회’라 줄여 부르기도 했다. 이들은 1988년부터 회원을 모집해 제주시민회관에서 제주도 4·3사건희생자 유족회(회장 송원화)의 조직강화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유족회의 정식 명칭은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 유족회’였지만, 유족회의 정관 제2조 목적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좌경세력에 대한 대처’ 등을 담고 있으며, 정관의 제35조 경과조치 편에는 1988년에 창립한 ‘제주도4·3사건민간인반공희생자유족회’를 모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 유족회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을 거쳐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집행부로 나서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유족회의 성격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4·3반공유족회라고 명명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4·3유족회라 칭하고 거기에서 내부의 성격변화에 따라 설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해 가는 단계였다.

이로 인해 국가주도의 기념방식이 중요한 기념방식으로 선택되며, 유족들의 한과 분노, 적개심 등을 표현했던 자유로운 합동위령제는 점차 정형화된 기념행사로 다져지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와 같이 화합, 용서, 평화 등을 강조하는 전도의례의 성격을 띠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윤선자, 1994).

한편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기념사업과 희생자선정은 많은 소규모 유족회를 생성하고 있다. 이 시기 제주지역에는 10여 개 이상의 유족단위 위령제가 대두하였다. 이들 중에는 국가담론을 재유평하거나 혹은 국가의 담론 수정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4·3기념의례들의 역학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제2장 반공 국가 기념의례의 등장과 유족 기념의례의 억압

1. 충혼위령제의 형성과 구조

가. 충혼위령제의 형성과정

1) 반공주의 국가의 대두

이승만은 4·3사건을 비롯하여 일련의 해방정국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과 관련된 여러 사건 이후 반공주의 국가를 표방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반공 정권의 정당성 구축 작업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국가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념하고 그 정당성을 주기적으로 주입시키는 기념의례를 제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가폭력을 은폐하고 평가를 와전시키려 했다. 이 시기 많은 국가 기념일과 기념의례들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4·3사건도 국가에 의해 ‘공산폭동’, ‘패퇴한 무장봉기’로 평가되었으며, 그러한 평가의 최초는 1948년 4월 5일 ‘5·10총선거 촉진 대강연회’에서 당시 경무부장 조병옥의 ‘폭동’발언에서 시작되었다.¹⁸⁾ 그 이후 제주경찰청 및 제주경비사령부는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소탕전을 벌였다. 그리고 이러한 ‘폭동’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 ‘공산폭동’으로 고착화 되어 나갔다.

특히 4·3사건은 건국과정을 거부한 ‘공산 반란’으로 인식되었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은 남한 내 좌익 세력의 궤멸과 안정된 국가 관료체제를 위해 반공이념을 통해 제1공화국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후 5·16군사정변으로 20년간의 억압적 체제의 지속동안 4·3사건의 인식과

18) 동아일보, 독립신보, 조선일보, 한성일보, 1948년 4월 6일자 신문.

담론은 국가권력이 독점하였다. 1967년 국방부의 『한국전쟁사』에는 4·3사건을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제주도 폭동’으로 규정하였고, 군경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

이러한 공산폭동론의 구축과정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반민족 행위자였던 친일협력자들이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에 편승하여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선상에서 구축되었다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4·3사건 과정에서 만들어진 극우반공세력과 체제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입장이다.¹⁹⁾ 대부분의 설명은 후자를 기점으로 기본 구조가 형성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공산폭동론의 주요 지지자들은 군경우익 단체 및 반공적 성격의 4·3유족회 등이었으며, 주요 전달 경로는 기념의례, 역사교과서, 신문, 문헌 등이었다. 특히 기념의례는 그 주기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공산폭동의 평가를 유포하고 환기시켜왔다.

4·3사건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념의례는 국가에 의해 먼저 시행되었는데, 국가에 의해 공산폭동으로 규정된 이상, 최초의 공식적인 기념의례의 대상은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군경 및 우익인사 등의 토벌대 희생자였다.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의례는 ‘위령’이라는 맥락으로 희생 직후부터 국가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1948년 6월 22일 국방경비대 11연대장 박진경의 장례식을 비롯해,²⁰⁾ 1948년 10월 7일 경관 김경렬과 김제규의 장례

19) 전자의 입장은 김석범, 안정애 등에서 보이는데, 김석범(1988)은 4·3이 40년간 터부시되고 암흑 속에 매장되었던 것은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이 오늘날까지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으며, 안정애(2002)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공히 4·3을 국내 치안 교란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정부 전복 반란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재단을 우선시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후자의 경우 이영권(2000)은 1947년 3월을 기점으로 극우세력들이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국가권력의 지원을 통해 극우반공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 4·3과 관련된 군인 희생자에 대한 최초의 공식의례는 1948년 6월 22일 서울 남산에서 경비대 총사령부 부대장이 주관했던 박진경의 장례식에서부터이다. 1948년 5월초 국방경비대 11연대장으로 부임하여 강경한 진압작전을 펼치다가 같은 해 6월 18일 부하에 의해 암살당한 박진경의 장례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의례로 거행되었다. 실제로 박진경 연대장의 피살 사건은 육군장 1호로 기록된 고급장교의 첫 희생이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4·3사건위원회, 2003: 225). 연대 교체 직후의 위관급 장교의 희생은 제2연대의 작전계획 수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영향력과 파급력이 컸다(4·3사건위원회, 2003: 225~310). 이때 박진경 암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1948년 9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색 산록에서 총

식,²¹⁾ 1949년 4월 19일 서북청년회 출신 제주순국동지 38인에 대한 합동위령제,²²⁾ 1950년 8월 순직 한정원 고별식,²³⁾ 전몰군경합동위령제²⁴⁾ 등 각종 장례 및 기념의례가 국가차원의 공식의례로 거행되었다.²⁵⁾ 그 후 국가에 의하여 군경 및 우익 희생자들은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국가에 의해 전시 중 사망한 ‘전사자’로 지정되어 충혼묘지에 안장됨과 동시에 정기적인 기념의례의 대상이 되었다.²⁶⁾

살형이 집행되었으며, 이 사형집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제1호로 기록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7: 217). 박진경의 장례식을 다루고 있는 당시 신문자료는 서울신문(1948년 6월 19일), 경향신문(1948년 6월 23일), 조선중앙신문(1948년 6월 20일), 자유신문(1948년 6월 23일), 제주신보(1952년 10월 8일), 제주신보(1952년 10월 16일), 제주신보(1953년 6월 30일) 등이다. 이외에 1990년에 출간된 『제주경찰사』 등에서 다루고 있다.

21) 국제신문 1948년 10월 7일자에 따르면 1948년 9월 20일에 제주도 남원지서 관할 한남리에서 일어난 무장대 경찰 습격사건으로 순직한 경관 김경렬과 경위 김제규의 유해가 서울역에 도착하였는데, 내무부장관과 수도청장 이하 경찰관계자들이 유해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이는 43에서의 희생을 국가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2) 이 순국동지 38인에 대한 합동위령제는 당시 동아일보(1949년 4월 8일), 자유신문(1949년 4월 19일), 경향신문(1949년 4월 19일)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3월 16일에 제주 중앙광장에서 치러진 이 위령제는 다시 서울에서 그 위령제가 거행되었다. 제주에서 치러진 위령제에는 당시 제주도지사, 제주지구전투사령관, 제2연대장, 참모총장대령, 도경찰국장, 특경대사령관 등을 포함하여 군경, 도민 8천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23) 당시 중문면 강정리에서 열렸다(제주신보, 1950년 8월 11일).

24) 제2회 전몰군경 합동위령제에는 제주도 주둔 2연대 소속 고병선 대위 이하 92주의 유해를 비롯해 전국 각처에서 전사한 345신위가 함께 서울운동장에서 합동위령제를 치렀다. 위령제 후 전사들의 유해는 제1회 합동위령제의 전사자 102주와 함께 장충단 봉사에 안치되었다.

25) 이 기간 동안, 국가차원의 각종 의례 외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각종 기념탑이 건립되었는데, 1952년에 서 1954년 사이에 각종 충혼탑과 승전기념비가 건립되었다. 1952년 8월 18일에는 당시 대정면에서 ‘순직 서덕주 외 6주(柱) 충혼비 제막식’이 열렸으며, 1953년 4월 30일에는 ‘대정면 전몰장병 충혼탑 제막식(제주신보 1953년 5월 3일)’이 있었다. 6일 뒤인 1953년 5월 6일에는 안덕면에서 ‘안덕면 출신 전몰장병충혼탑(제주신보 1953년 5월 12일) 제막식’이 열렸으며, 위미리에서는 1960년 8월 28일에 4·3사건 때 희생된 ‘이관석 공로비 제막식’(제주신보 1960년 9월 1일)이 열렸다. 이러한 충혼탑 외에도 『제주경찰사(1990)』를 살펴보면, 1954년 9월 21일에는 그 동안 통제되었던 ‘한라산 개방 기념 기념비’를 비롯해 1954년 11월에는 한라산 자락에 ‘한라산 공비 완결 기념비’가 세워졌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6)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 등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거행되자, 국가는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였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데에는 국가보

한편 반공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극우적 반공 규율은 공산폭동론과는 다른 4·3사건의 평가에 대해 용인하지 않았는데, 이 반공규율은 일상생활에까지 적용되어 4·3사건에 대한 일상적 소통마저 선택적으로 허용하였다.

2) 충혼위령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해방정국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로 군인 희생이 발생하자, 국가는 전사한 군인들을 서울 장충사에 안치하였다. 그러나 군인 희생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49년 말 육군에서는 묘지 설치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논의는 중단되고 전사한 군인희생자들의 유해는 부산의 금정사와 범어사에 안치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육군은 군묘지 조성에 대한 재논의를 벌였고, 1953년 9월 29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동작동 현 위치를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하였다. 1956년 4월 13일에는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 군묘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국방부 국립묘지관리소, 1994). 같은 시기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주로 경찰 출신들에 의해 이뤄졌다.

4·3사건을 치르면서 발생한 군경희생자로 인해 군경희생자 유족들에게 충혼묘지는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4·3사건 발발 당시 제주지역 상황이 충혼묘지를 만들 수 있는 정치사회적 상황이 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확보는 더욱 어려운 문제였다. 이 시기 군경희생자들은 유족 개인별로 매장하는 수준이었다.

충혼묘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행은 전국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군경희생자가 많아지면서였다. 1953년 당시 제주도 전역에서도 충

훈처(2006)의 문건을 보면 ‘예부터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에 사초와 성묘를 하고, 고려 현종 5년 조정에서 6월 6일에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과 같이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 우리 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를 상기하고 망종을 택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정기적인 현충일 추념식은 197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4510호가 제정되면서 부터이고, 1982년 5월 15일에 이르러 현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 대상이 되었다.

훈묘지가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제주도 대표격인 제주시 충훈묘지는 사라봉 기슭(현 제주시 건입동 553번지)에 부지 2,117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때 군 전사자 440기, 경찰 전사자 122기가 안장되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보훈처가 창설되고(1961년), ‘국립묘지령’이 제정되면서²⁷⁾ 한국전쟁 전사자 위주로 이뤄져 왔던 군묘지는 ‘국립묘지’로 개명되었고 안장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²⁸⁾ 이러한 문제로 1975년에서부터 1976년에는 새로운 대전 국립묘지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제주지역에서도 새로운 충훈묘지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국립묘지령’에 의해 ‘국립묘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었듯이, 충훈묘지 또한 제도적 기반 위에 관리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 기존의 국립묘지와 역사적 기원이 다른 국립묘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 국립묘지들이 군인과 경찰, 일제하 독립운동 관련자들이 안장되는 곳이었다면, 이 시기 조성된 국립묘지들은 4월 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안장하는 곳이었다. 이것은 국립묘지의 전반적 성격과 국가보훈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했다. 이것은 국립묘지가 국가적 죽음을 안장하는 곳이지만, 언제든지 현재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공간임을 뜻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죽음과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가 공론화되고, 한편으로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갖는 죽음이 안장된 집단묘지가 국립묘지로 지정되면서 국립묘지들 사이의 긴장관계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정호기, 2005).

최근 제주시 충훈묘지의 국립묘지화 논의는 이런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국가보훈처는 제주시 충훈묘지를 국립묘지로 격상하기로 확정했다.²⁹⁾ 충훈묘지의 국립묘지로의 격상문제는 군경 및 우익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논의 배경은 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제주지역의 14

27) 1965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다.

28) 1961년에는 국가보훈처가 창설되고, 1965년 3월 30일에는 국립묘지령이 제정되어 한국전쟁 전사자 위주로 이루어져왔던 군묘지 안장이 독립유공자,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 4·19혁명 관계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베트남전 등을 거치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 능력이 한계에 이룸에 따라 1975년 2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전국 실사를 벌여 1976년 대전국립묘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29) 제주일보 2008년 6월 5일자를 참조하였다.

개 충혼묘지가 포화상태인데다 읍면별 관리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충혼묘지 통합과 함께 국립묘지 승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이다.³⁰⁾ 두 번째는 전몰·순직 등 국가유공자가 아닌 6·25 및 베트남전 참전 희생자들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호국원 성격의 묘지 승격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의 제주지역 군경유족들이 군경 및 우익 단체들에서 세력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충혼묘지와 4·3평화공원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군경희생자 홀대론’을 들먹이며, 충혼묘지의 국립묘지 격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³¹⁾ 이중 세 번째 주장은 국립묘지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³²⁾

이런 긴장관계들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의 국가 보훈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가열되고 있다. 2005년에는 그동안 수십 개의 보훈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국가로부터 나타났는데, ‘국가보훈기본법’이 공포·시행되어 법령이 체계화된 것을 비롯해 2006년에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안장 대상자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다.³³⁾

30) 제주시 충혼묘지에는 순직·전몰·상이 군경 등 815기의 묘가 안장돼 있다. 총 면적은 44만㎡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면적은 4%인 1만 6945㎡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도내 14곳에 산재한 충혼묘지를 제주시 충혼묘지로 통합·이전하고 국립묘지로 격상하는 내용을 확정했다(제주일보 2008. 6. 5). 현재 제주에는 현충원 안장대상자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를 비롯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인 참전 유공자 5천여명이 생존해 있다(제주의 소리, 2008년 3월 24일).

31) 전국에 있는 국립묘지를 보면 국립현충원(서울·대전), 4·19묘지, 3·15묘지, 5·18묘지가 있는데 이들 묘지는 국가유공자만 안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립묘지에 속한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인 경우 전쟁 참전 용사들도 안장할 수 있다.

32) 4·3평화공원이 비록 국립묘지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국가차원의 기념공원이라는 맥락에서는 사례비교로써 가능하다.

33) ‘국가보훈기본법’은 법률 7572로 2005년에 이르러 국가는 국가 보훈과 관련된 수십 건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러한 여러 법적, 제도적 근거는 충혼위령제의 공식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 유공자를 정하고, 위령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법령이다. 국가보훈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훈법은 법 규제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위령제 및 위령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부여해 오고 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7649호로 2006년 1월 30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동작동 국립묘지의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되고 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로 소속 이관되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도 안장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제주지역에서도 2006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런 국가보훈정책의 변화에 대해 군경 및 보수 우익 단체들은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의 개념을 문제 삼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국가보훈의 개념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 한 가운데 있는 것은 5·18민주화 운동이었으며, 그 외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³⁴⁾ 이는 대내외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의 정치 담론의 변화에 대한 군경 및 우익유공자들의 저항이자,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국가의 반공 담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런 법령과 조례 등의 제도적 요인들은 충혼위령사업이 지속되는 데 토대가 돼 주고 있고, 국가 기념의례 형식이 전일화 되도록 조력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의 법조항들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원된 체계 속에 전국 및 각 지역의 충혼위령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고 있으며, 충혼위령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위령 공간 및 기념물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위령제와 관련된 제반 형식 및 내용 구성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차원은 국가권력이 충혼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통해 어떻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장시키는지 보여준다.³⁵⁾

34) 제성호는 2005년 11월 22일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한 ‘전쟁과 보훈보상문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국가보훈 기본법의 제3조 1호의 ‘다’목에서 희생 공헌자의 해당대상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이란 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정의에 의하면 공권력에 대항해 무장투쟁한 자도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희생 내지 공헌자로 둔갑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전국민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만들거나 이념논쟁의 문구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게 정히 보상을 해야 한다면 해당 특별법에서 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의 개념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6·25참전자의 말을 빌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제주4·3사건 관련자, 거창사건 관련자, 노근리 사건 관련자들과의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였다(<http://cafe.daum/defoliant>에서 참조).

35) 위령제 및 위령사업과 관련된 국가보훈법의 법조항을 살펴보면 위령사업의 세부 주체는 국가에 의해 구성되었던 위원회에서 맡게 되는데,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해 규정되는 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위령제의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령의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위령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 시기, 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 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25조 1항), 희생·공헌

나. 충혼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1) 충혼위령제의 대상자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가 2~3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 경찰 등 토벌대 희생자는 320여 명으로 이들은 상당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국립묘지 및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사건 관련 국립묘지 또는 충혼묘지 안장 대상자는 군인유공자 180명, 경찰유공자 140명, 민간인 유공자 639명이며, 현재 이중 제주도내의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수는 경찰 유공자 140명과 일부 민간인 유공자 등이다.³⁶⁾ 군인유공자는 동작동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으며, 경찰유공자 140명은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본래 제주시 충혼묘지는 전사 당시 제주시 거주자에 한해 안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4·3당시 경찰이 치안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되었다(제주도 경찰국, 1990: 350). 따라서 제주시 충혼묘지는 제주도 충혼묘지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 4·3사건과 관련된 군경 및 우익 희생자들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

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고 희생공헌자의 이름도 부여할 수 있다(제26조1항과 2항). 더 나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해야 하고(제24조), 공항, 항만, 도로, 거리, 광장, 공원, 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25조 3항). 이런 일련의 법령들은 단지 국립묘지나 충혼묘지의 공간을 넘어 위령공간과 충혼의례의 의례적 절차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국 및 제주 지역의 곳곳에 이러한 위령 기념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념물이 충혼탑이다. 국내의 많은 의례들에서 빠지지 않고 이뤄지는 절차 중의 하나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애국가 제창을 포함한 국민의례이다. 이러한 국민의례는 거의 대부분의 의례들에서 목격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은 충혼위령제만이 아닌 다른 많은 사회적 의례와 행사들에서 국가를 인식하게 되고,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다짐받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36) 김종민(1999)과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지만, 4·3사건위원회는 각종 자료 및 해군본부, 육군본부 등에 의뢰하여 확보한 수치를 점검한 뒤, 군인희생자는 18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에서 창설된 국방경비대 제9연대를 비롯해 제11연대, 제2연대, 제1독립대대, 해병대, 무지개부대 등에 소속되었다가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4·3사건위원회, 2003: 373-374). 이 중 제2연대의 희생자가 많았는데, 한라산 속으로 작전 지역을 옮겨서 직접 무장대와 교전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³⁷⁾

반면 경찰희생자의 경우 군인희생자와 달리 1950년 이후 잔여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종민, 1999: 389).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4·3사건위원회에 보낸 4·3사건 관련 순직·전사 경찰관 및 상이·전상경찰관 대장에 등재된 명단에는 전사 경찰관 122명, 전상 경찰관 9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는 경찰 전사자를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140명을 기준으로 1948년 4월부터 11월까지 41명, 1948년 12월부터 1949년 4월까지 17명, 1949년 5월부터 1956년 9월까지 8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4·3사건과 관련된 우익단체원들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유공자는 총 74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과 애국단 출신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경찰 출신 105명을 제외한 639명이 우익단체원에 속한다(양조훈, 2004).³⁸⁾ 이들 중 일부는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4·3사건 당시의 우익단체로는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 대한청년단, 향보단, 민보단, 청년방위대, 특공대, 학생연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군경토벌대와 함께 직접 작전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마을의 방위와 방범, 입초(立哨), 순찰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이들 조직 가운데 특히 민보단은 18~55세의 성년 남자로 구성되었는데, 무장대의 마을 습격 때 피살, 납치된 자들이 많았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6: 85).

그러나 4·3과 관련된 군인과 경찰 희생자들이 모두 국립묘지와 충혼묘지에 안

37) 4·3사건 당시 주민희생이 가장 많았던 1948년 후반과 1949년 전반 시기에 제주도에 주둔하였던 부대는 제9연대와 제2연대인데, 제9연대의 전사자는 제2연대 및 제6여단 유격대보다 훨씬 적었다(4·3사건위원회, 2003).

38) 우익단체의 구성원 혹은 경찰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장된 것은 아니다. 1948년 10월 말 박진경의 암살과 더불어 시작된 9연대의 숙군작업으로 인하여 무장대 동조혐의로 처형당한 군인 등은 제외되었다. 또한 민보단원 등의 우익단체 출신들도 상당수가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국가의 공식적 기념대상이 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자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군경 유공자 등 토벌대 희생자만을 기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건국 후 창설된 군인과 경찰의 정통성 확보를 비롯해 전쟁 및 반공이데올로기 강화라는 수단으로 기념의례를 이용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기념의례는 충훈위령제로, 매년 6월 6일에 국립묘지 및 충훈묘지에서 거행되고 있는 현충일 추념식이다. 제주지역에서도 1956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이것은 비단 4·3사건시기 희생자만이 아닌, 한국전쟁, 일반 순직 등 건국 혹은 국가를 위해 희생당했고, 그로 인해 국가가 공(功)이 있다고 인정된 희생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에 의한 ‘공(功)’의 인정인데, 대부분의 ‘공(功)’은 ‘공산 폭동’, ‘공비’, ‘간첩’ 등을 물리친 것으로 반공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행동이나 실천이 ‘공(功)’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4·3사건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4·3사건으로 인한 군경 및 민간인 유공자들은 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주는 기념의례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런 기념의례의 대상은 4·3사건을 포함하여 한국의 해방공간에서 좌익세력의 척결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지를 규정하고, 고난 끝에 누가 국가를 건설했는지를 널리 전파, 교육시키는 새 국가의 공식 역사기술의 중요 재료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한국 국가의 정체성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등식이 수립되었다(한석정, 2006).

2) 충훈위령제의 시공간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충훈위령제는 현충일 추념식이다. 현충일 추념식은 1956년 이래 매년 6월 6일에 전국적으로 거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국가가 그렇듯이 한국사회도 상당한 전쟁의 과정을 거쳤고, 그로 인해 특정 날짜를 정해 전

란에서 희생된 자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여왔다. 미국의 경우도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memorial day’라고 하는 현충일과 비슷한 기념일이 존재한다.

현충일의 경우 반드시 한국전쟁과 관련된 자만을 기념하는 의례는 아니다.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같이 기념되는 날이다. 김민환(2002)은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한국의 ‘memorial day’는 아마 11월 17일인 ‘순국선열의 날’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56년부터 1969년까지 정부에서는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의례를 거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점차 현충일이 순국선열의 날을 흡수했다(김민환, 2002).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한국전쟁 중심의 현충일이 독립운동 중심의 순국선열의 날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반공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⁹⁾

대개의 경우 전쟁 기념일은 종전일에 맞춰져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개전일에 맞춰져 있으며, 한 달 전체가 기념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인데, 이런 기념방식으로 반공국가 만들기의 시간적 점유가 나타났다. 따라서 4·3사건을 전쟁의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4·3사건의 군경희생자들을 위해 따로 시간적 분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공간적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 동안 국립묘지와 충혼묘지는 중요한 현충일의 기념공간이 되었다. 4·3 사건과 관련된 군경 및 우익 민간인 유공자들 또한 충혼묘지에 안치되어 있어 현충일의 기념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립묘지 및 충혼묘지 내의 안장은 ‘전쟁의 희생’에 대한 죽음의 격상을 의미한다.⁴⁰⁾ 이 공간들은 국민국가(nation-state)가 모범적 선례로 제시하는 기준에 가장 부합한 죽음을 안장한 집단 묘지이다(정호기, 2005: 212). 이러한 충혼묘지는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국전

39) 현충일 추념식은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의례를 가지도록 하였는데, 현충기념일은 통상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어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기념의례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행사는 전국의 국립묘지 및 충혼묘지 등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40) 이 죽음은 주로 전쟁을 통해 양산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널리 확산되고 보편화되었다(Piehler, 1994: 168-170; 김종엽, 1999). 이것은 전쟁 공포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쟁 직후이자,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시점인 1955년을 시작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제주지역 충혼묘지 역시 ‘전쟁’ 속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이런 속에서 충혼묘지 내의 4·3사건 관련 토벌대 희생자들의 안장은 4·3사건을 ‘전쟁’의 일부로 인식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4·3사건과 관련된 토벌대 희생자들은 한국전쟁의 유공자들과 함께 전쟁으로 인한 기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3군경 및 민간인 유공자의 유족들 또한 종종 이러한 상황을 전쟁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다.⁴¹⁾

제주지역의 충혼묘지 중 4·3사건과 관련된 유공자들 상당수는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 제주시 충혼묘지는 처음에는 제주시 사라봉 지역에 있다가 1979년부터 이설하여 1983년에 현재의 제주시 노형동에 619위(군인 479위, 경찰관 140위)를 이전하여 성역화 사업을 전개했다.

제주시 충혼묘지의 구조는 전국을 비롯하여 제주도내 다른 지역의 충혼묘지 구조와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충혼묘지공원 길목에는 <그림 2-1>에서 보이는 베트남 참전비가 세워져 있고, 그 길목을 따라 들어가면 4·3사건 때 암살당한 박진경의 추모비가 충혼묘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박진경의 추모비는 제주도민 및 군경원호회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림 2-1>에 보이는 박진경비의 비문에는 ‘제주도 공비 소탕에 불철주야 선두에서 지휘하다 장렬히 산화하시다’라고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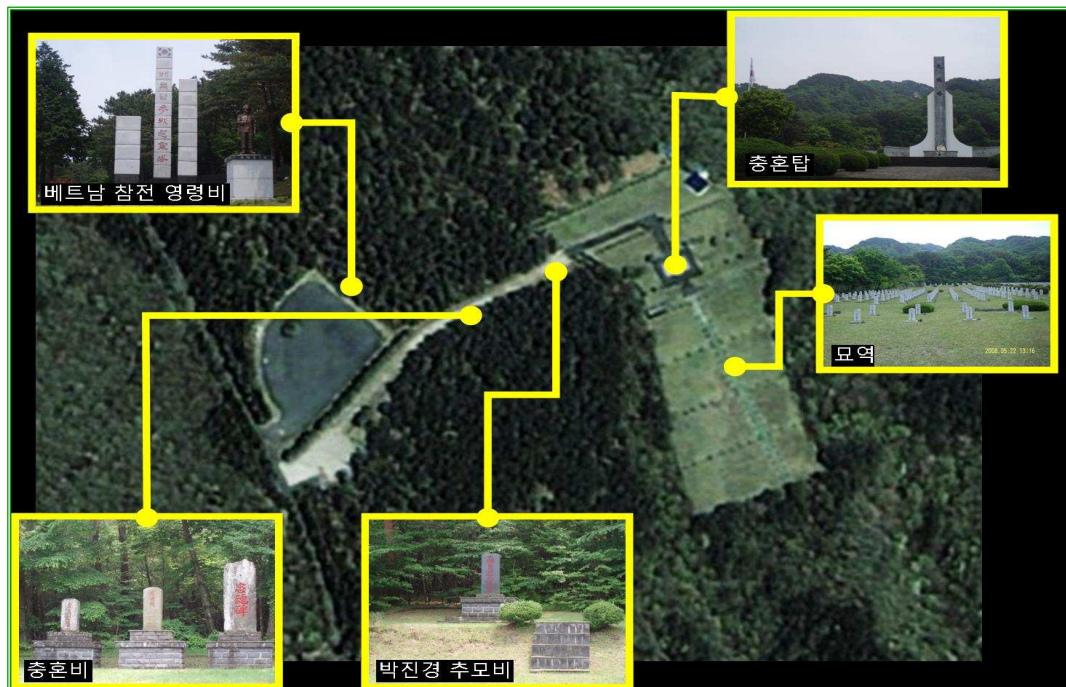
박진경 추모비 이외에도 군경 충혼비가 2개 더 있는데, 이 기념물들은 대체로 제주도민과 군경원호회 이름으로 건립된 것으로 비문에는 ‘6·25전쟁과 4·3사건에서 공비를 토벌하였다.’는 식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와 비슷한 충혼탑과 충혼

41) 실제 공산폭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4·3사건을 6·25의 전초전으로 주장하곤 했다. 그 맥락은 해방 후 제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실은 전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런 일들은 6·25란 최종적인 고리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봄으로써, 4·3사건을 6·25전쟁의 일환으로 보아왔다. 이런 시각은 유족들에게도 배태되어 현충일 기념식 때마다 유족들의 소회를 실은 신문기사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4·3시기 애국단원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남편으로 인해 유공자 유족이 된 고인여(高仁汝) 역시 “전쟁의 슬픔은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한다(제주신문 1990년 6월 6일).”며 4·3을 전쟁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에 4·3사건을 연재했던 「월간 관광제주」에도 종종 4·3사건은 6·25전쟁의 전초전이었다는 유족들의 증언들이 실려 있다.

비들은 제주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제주지역 전체를 반공적 기억으로 메우려는 공간분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혼묘지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에는 충혼탑이 세워져 있는데, 충혼탑 뒤로는 충혼묘지가 배치되어 있다. 묘역은 제주도조례에 의거하여 4개의 묘역으로 나뉘는데,⁴²⁾ <그림 2-1>의 묘역에 4·3사건과 관련된 유공자들의 충혼비가 자리하고 있다. 묘역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⁴³⁾ 등에 의해 규정을 받는데, 충혼위령제의 배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2-1> 제주시 충혼묘지 조감도



제주시 충혼묘지는 노형동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에는 베트남 참전 영령비를 비롯해 박진경 추모비와 각종 충혼비가 나열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충혼묘지는 수직적 배치를 보여주는 권위적인 배치로 제단의 형태는 폐쇄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미 기념의례 구조를 권위적

42) 조례에 의거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군인 묘역(장교묘역, 사병묘역), 경찰관 묘역(간부묘역, 일반묘역), 공무원 묘역 등으로 나뉜다.

43) 2006년 10월 11일 제정, 조례 제27호.

인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기념의례가 법이나 조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으나, 이미 구조화된 공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 충혼묘지에서 매년 거행되는 현충일 추념식장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충혼탑과 제단의 존재로 인해 추념식장의 배치도는 묘역 앞에 놓여 있는 충혼탑과 제단을 향해 제일 먼저 행정기관 및 각계 인사들이 배치되고, 두 번째로 유족 및 국가 유공자, 각계 대표, 다음으로 시민 등의 좌석이 배치된다. 그리고 이들 양옆으로 공연팀이나 악단, 합창단 등이 배치된다. 이러한 구조는 의례 연행에 있어 상당히 권위적인 면모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담론을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상단에는 주요 국가 기구의 인사들이 배치된다. 이는 근대 국민의례에도 많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안정과 위계질서, 엄숙, 등급, 불평등을 당연하면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담론 유포에 유용한 구조다.

3) 충혼위령제의 형식과 내용

대부분의 국가 기념의례가 위령제라는 전체적인 형식을 띠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충일 추념식도 위령제라는 전체적인 형식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연행대상과 현충일 추념식의 기원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대개의 형식들은 국가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기념일들에는 엄청난 대중들이 동원되어 그야말로 ‘축제’의 성격을 띠는 기념의례들이 거행되었는데 반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기념의례에는 축제적 요소가 철저히 배제되었다. 식순만을 따져 보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식이 전개되는 양상은 달리 나타났다.⁴⁴⁾

44)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일 것이며, 두 번째는 대통령 경호문제, 세 번째는 독점된 기억을 그 자체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기념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텐데, 참석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한 역사 재해석의 담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중에는 현재 독점된 기억에 대해서 위협이 될 만한 것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기념의례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는 최소화하되, 공적 교육 기관을 통한 내면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념의례가 조정되었다(김민환, 2002: 49).

충혼위령제의 경우도 절차에 치중한 상징적 구성을 보여주었는데, 대개의 절차는 <표 2-1>에서 보여주듯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싸이렌, 조포)-헌화 및 분향(헌작 및 분향)-추념사-현시낭송-현충의 노래-소향-폐식’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왔다. 이런 절차들은 대개 ‘죽음’을 강조하는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사용되는 조기(弔旗), 조포(弔砲), 헌화(무궁화) 및 분향, 조가(弔歌), 소복(素服), 훈장 등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⁴⁵⁾ <그림 2-2>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현충일 추념식 순서⁴⁶⁾

45) 권귀숙(2006b)은 전쟁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후원, 희생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충혼위령제 또한 소복 등을 통해 그러한 여성 이미지를 재생산함으로써, 전사자의 죽음을 더욱 격상시키고자 한다.

46) 현충일 추념식 절차는 제주신문을 찾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2005년 이후는 보훈청의 현충일 추념식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년도	순서	참가 수	주악
1965년	개식-국민의례-유족대표 제주-소향-식사-추도사-조포(해병대 의장대) 등	2천여 명	오현고 교악대
1971년	개식-국민의례-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싸이렌)-추념사-현충절 노래(학생) 등	-	-
1973년	개식-국민의례-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21발의 조포-분향-추념사 등	2천여 명	제일고 교악대
1980년 (25회)	개식-국민의례-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조포-헌화(기관장, 유족대표)-추념사-분향(유족)-현충의 노래 등	1천여 명	제주여상 합창단
1982년 (27회)	개식-국민의례-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헌화-추념사-현충의노래-21발 조포(해군 제9506부대)-소향 등	-	오현고 교악대
1983년 (28회)	개식-국민의례-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헌화-추념사-현충의노래-12발 조포(해군 제9506부대)-소향 등	5천여 명	영진육아원 브라스밴드
1984년 (29회)	개식-국민의례-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헌화 및 분향-추념사-현충의 노래(제주여고 합창단)-조포(해군 제9506부대)-소향 등	3천여 명	제일고 교악대
1988년 (33회)	개식-국민의례-조포(제주방어사)-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헌화 및 분향-추념사-현충의 노래-분향 등	5천여 명	-
1989년 (34회)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조포-애국가제창-순국선열 및 호국전몰용사에 대한 묵념-헌화 헌작 및 분향-추념사-현충의 노래 등	5천여 명	-
2005년 (50회)	자율참배(조조참배)-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4절)-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추념공연)-추념사-현충의 노래 제창-폐식-자율참배(식후참배)(전체 싸이렌)	-	-
2006년 (51회)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4절)-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싸이렌 취명, 조포 21발)-헌화 및 분향-추모공연-추념사-현충의 노래 제창-폐식	-	-

<그림 2-2> 현충일 추념식 광경



현충일 추념식의 배치도를 보면 각급 기관장들을 비롯해 유족대표, 미망인대표가 가장 앞좌석에 배치된다.

현충일 추념식에는 ‘훈장’, ‘소복’ 등이 중요한 상징적 기호가 된다.

이러한 절차들은 충혼묘지 공간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충혼묘지 공간을 중심으로 전도적, 전국적으로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가가호호마다 조기 계양이 권유되며,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동일 시간대에 요구된다.⁴⁷⁾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반국가적 행동으로 낙인되어 권위주의 국가 시절에는 곤혹을 치른 경우들이 종종 있었음을 볼 수 있다.⁴⁸⁾ 또한 6월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참배행사는 충혼묘지의 상징성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형식들을 통해 국가는 전국민을 충혼위령제의 의례공동체로 묶어 냈으며 이는 반공주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국적으로 환기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장치였다.

충혼위령제는 상징적 행위보다 언어적 구체성에 입각해 그 의도성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데, 4.3사건을 위한 절차나 언어적 구성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인 상징적 구성이 ‘전쟁’을 기념하고 ‘국가’를 강조하기 위한 절차로 수합되어 있듯이 언어적 구성 또한 국가를 위한 전쟁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의무로 가득 채워져 있다. 추념사를 통해 나타나는 전쟁은 ‘민족적 수난’⁴⁹⁾의 경험이었으며, ‘조국광복과’⁵⁰⁾ ‘통일’⁵¹⁾을 위해 ‘젊음을 불태운 호국영령’들의⁵²⁾ ‘호국정신’과⁵³⁾ ‘애국충절’의⁵⁴⁾ 뜻을 받들어 ‘조국의 근대화 과업완수’와⁵⁵⁾ ‘유신 과업의 위업완수’⁵⁶⁾, ‘평화통일’⁵⁷⁾, ‘조국의 새 역사 창조’⁵⁸⁾ 등을 이룩해야 하는

47) 1970년 현충일 추념식이 시작된 이래 오전 10시 개식과 10시10분 묵념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상징적 시간이다

48) 각 동사무소, 소방서, 파출소 등에서 동시에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충혼묘지에 있지 않더라도 전국민 혹은 전도민 전체가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동시에 ‘묵념’을 거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의례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이때 달리던 차량도 일하던 사람도 모두 묵념’에 임하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했음을 당시 6월 6일자나 7일자 신문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49) 제주신문 1965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50) 제주신문, 1971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51) 제주신문, 1971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52) 제주신문, 1965년 6월 6일자 이후 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언어였다.

53) 제주신문, 1983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54) 제주신문, 1983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55) 제주신문, 1971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56) 제주신문, 1973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획일화된 평가와 규정된 의무들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충혼위령제를 통해 유포되었다. 이러한 언어적 구성은 다양한 평가를 생산할 수 있는 축제성을 소멸시키고 국가에 의한 평가만을 일방적으로 내면화할 것을 강요하는 맥락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호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에 의해 규정된 반공주의의 보존이었다. 때문에 4·3사건의 국가 유공자들이 반공주의를 위한 ‘호국영령’으로 재구성된 이상 4·3사건은 ‘공산폭동’으로 고착화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4·3사건의 발발 시기가 한국전쟁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벌이 종식된 1954년에 기준을 두어, 4·3사건을 마치 한국 전쟁 와중에 일어난 ‘공비소탕’처럼 구획함으로써, 국가는 4·3사건이 공산폭동 그 이상 어떤 것도 평가를 용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수만 명의 민간인 학살 등의 경험은 이 충혼위령제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로지 전쟁 와중에 있었던 ‘공비소탕’의 국가 경험만이 유일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충혼위령제는 1989년 이전까지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기념의례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국가의 평가와 기념의례 방식에 동조해왔던 군경 및 우익 단체들과 유족들에 의해 다시 6·25기념식, 전몰군경합동위령제, 반공희생자 위령제 등 재생산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2. 유족 기념의례의 양상

가. 유족 기념의례의 형성과정

1) 4·3사건 희생의 유산과 억압

국가 주도의 4·3사건 관련 기념의례가 충혼위령제로 수합되어 토벌대 희생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그 기념이 형성되어가는 동안 그들에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만일 있었다면 그것은 국가주도의 ‘공

57) 제주신문 1982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58) 제민일보 1983년 6월 6일자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기사.

비'나 '폭도'이야기였다. 그러나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평가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여러 형태의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 우선 3만 여에 달하는 희생자를 비롯해 군경 토벌대에 의해 사라져 버린 마을터와 그들을 피해 도망 다녔던 수많은 은신처들, 끝내 그들에게 발견되어 학살당한 학살터, 시신의 은폐를 막고자 쌓아 놓고 묻어버린 매장지, 수용소 옛터 등은 4·3사건에 대한 국가평가와는 다른 유산들이었다.

때문에 국가는 4·3사건의 유산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으며, 이것을 들춰내는 행위를 '빨갱이' 행위로 규정하고 40여 년 간 탄압을 가했다. 그 기간 동안 대표적으로 대정읍 지역의 백조일손묘역의 유족들을 비롯해 남원읍 지역의 현의합장묘역 유족들과 한림읍 만병디묘역의 유족들, 조천읍 지역의 북촌마을 유족들은 4·3사건의 유산을 기념하고자 하는 일로 국가로부터 탄압을 당해야만 했다.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보고서에 대정부 건의안 7개 조항 중에 '정부가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제주시(구 북제주 포함) 76개 마을과 서귀포시(구 남제주 포함) 44개 마을 등 제주지역 120개 마을의 4·3사건 관련 유산을 조사한 결과 <표 2-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2>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현황⁵⁹⁾

59) 이 표는 제주도·제주4·3연구소에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발행한 『제주4·3유적』 I과 II의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밝힌 4·3유적은 4·3의 발발 시기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4·3사건과의 연관성에서 구성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4·3사건 이전에 설치되었지만 4·3사건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4·3유적의 분류는 증언자료 등을 토대로 분류되었는데, 여기서 밝힌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잃어버린 마을은 1948년 11월 이후 중산간 마을이 토벌대에 의해 전소된 후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마을로, 당시 가호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을 이 범주에 넣었다. ② 성은 1948년 12월 이후 각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 주변을 둘러 쌓은 것을 말한다. 성은 당시 쌓았던 것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곳을 지칭한다. ③ 은신처는 4·3이전 기간 주민들이 토벌대와 무장대에 쫓겨 산야를 헤매는 과정에서 동굴이나 여러 자연적 은폐물이 있는 곳을 발견, 숨어 지내던 곳을 말한다. ④ 희생터는 주민들이 4·3기간 토벌대나 무장대에 의해 집단학살된 장소를 말한다. 당시 5명 이상이 학살된 곳을 이 범주에 넣고 있다. ⑤ 민간인 수용소(지서나, 군의 유치장, 각종 창고 건물 등)는 4·3사건 기간 제주도 주민들이 토벌대에 무차별 체포돼 집단 수용됐던 곳을 말한다. '중산간 마을 소개민'을 수용했던 소개민 수용소나 소위 '도피자 가족'을 수용했던 도피자가족 수용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⑥ 주둔지(군경, 서북

유적구분	제주시지역 (구 북제주군지역 포함)	서귀포시 지역 (구 남제주군지역 포함)	계
잃어버린 마을	82	26	108
성	44	21	65
은신처	28	7	35
희생터	101	52	153
은신처 및 희생터	9	-	9
수용소	7	11	18
주둔지	50	33	83
희생자 집단묘지	2	4	6
비석	25	16	41
역사현장	45	16	61
기타	8	10	18
총계	401	196	597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 전역은 뚜껑 없는 4·3사건의 박물관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전역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이 서귀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마을수와 인구수가 당시에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산간 마을이 당시 제주읍과 애월면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피해가 컸다. 4·3사건의 유산 중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주민들이 희생된 학살터였다. 이는 집단학살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희생자 집단묘지가 가장 적은 것은 희생된 자들의 시신처리가 유가족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의 4·3관련 유산들에 대한 주민 접근이 통제되었기에 유적지들은 거의 방치되었다.

이에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다소 국가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기체사와 같은 전통의례에 기대어 4·3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의례를 형성시켜 왔는데, 이마저도 결국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4·3사건과 관련된 곳은 4·3발발 직후부

청년회, 무장대 등)는 4·3사건 기간 군경토벌대나 무장대가 주둔했던 곳을 말한다. 지서나 경찰서가 있던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⑦ 희생자 집단묘지는 토벌대에 희생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안장되어 있는 곳이다. ⑧ 비석은 4·3사건 기간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나 충혼비, 특정 단체에서 단체원들의 당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 등을 총칭한다. ⑨ 역사현장은 4·3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1947년 3·1사건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하여 첫 희생자를 낳았던 관덕정 광장이 있다. ⑩ 기타는 위 아홉까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에 세워진 기념물 등이다. 간혹 잃어버린 마을과 희생터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의 중요한 의미로 인해 포함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터 출신성분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줄곧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무장대와 민간인에 대한 굿이 종종 목격되어 왔는데, 이런 이유로 국가에 의해 굿과 무속인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다. 다음 증언은 굿이 국가에 의한 탄압대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중략) 그 굿을 하고 나서 지서에 불러갔다 왔어. 서에 가서 나는 ‘모르고 갔다. 나는 굿을 해 달라고 하니 갔다왔을 뿐’이라고 했어 내가 좀 똑똑하니까 무사했지. 허허허 어중간 했으(했으면) 신변이 좋지 못해실 거라(못했을 거다). 사실 그때까지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거든. 사건이 수습된 후에도 집에서 뉘 자당(누워서 자다가) 누구 오는 소리가 나면 겁이 바짝바짝 나. 어느 날은 집에서 자는데 차 소리가 와르릉 나니까, 나도 모르게 돌을(달아날) 생각부터 나더라고. ‘OOO씨 닥이나’고 묻는데 ‘씨’라고 불이니까 그때야 조금 안심했지. 경찰서장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관차(관용차)로 급히 나를 부르러 온 거라. 그때 당시엔 살아야 살 때지. 내가 아무리 경찰 쪽에 있어봐도 손가락질 하나면 갈 때니까 (생략).”⁶⁰⁾

굿을 한 심방은 당시 ‘지서(현 경찰지구대)’에 불러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4·3사건이 끝난 후에도 탄압에 대한 신경적 증세가 남아 있었던 측면과 경찰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촌마을의 경우는 1954년 4·3사건과 관련된 꽃놀림 의례를 연행했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 등 유지 10명이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마을 주민 65명이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⁶¹⁾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명목 아래 꾸준히 굿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에는 무장대 사령관 출신 이덕구의 사촌누이가 치병을 명목으로 굿을 한 것을 비롯해, 1990년에는 토벌대에 의해 집단 학살된 원동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굿이 시행되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굿과 무속인을 감시하던 경신연합회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면서 제주사회에 굿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는데, 한 심방은 그 시기 500집 이상 굿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제주4·3연구소, 1989). 대부분은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본주가 되어 굿을 의뢰했다.

이는 4·3사건에 대한 국가 독점적 평가 방식과 군경 및 우익 유공자만을 4·3의

60) 이 증언은 『이제사 말함수다(1989)』 p.24에서 재인용하였다.

61)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기념대상으로 삼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4·3사건의 유족들이 국가 대 유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족들은 그가 처한 입장에 따라 국가에 대한 태도가 달랐으며, 기념의례 방식이나 형식에도 차이를 드러냈다.

2) 반공국가시기 유족들의 대응

4·3사건의 희생자로 인한 유족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군경 및 우익 유공자들의 유족과, 두 번째는 군경 및 우익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세 번째는 무장대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네 번째는 군경 및 우익에 의해 희생당한 무장대 희생자 유족 등이다. 반공국가 시기 군경 및 우익 유공자 유족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족들의 움직임이나 구분은 특별히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군경 및 우익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유족인 경우 더욱 움추려 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희생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로부터 ‘폭도 가족’의 혐의가 씌워져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유족들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군경 및 우익유공자 유족들뿐이었다. 군경유족들은 대개 미망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일찍부터 유족회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해왔다. 대표적인 단체가 전몰군경미망인회이다. 이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충혼위령제의 중요 자원이자, 여타 군경 및 우익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국가의 반공 담론을 확장시키는 상징적 주체가 되었다. 전쟁미망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국가 수호를 위해 남편을 바친 의롭고 결백한 여인네의 모습에 그 이미지가 맞춰져 있다. 이러한 결백한 여인네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라는 논리로 반공담론을 확대시켜왔다.

반면 이 시기 국가로부터 용인되지 못한 희생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태도에 대해 ‘외면·침묵’하거나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형태를 보여왔다. 적응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일정정도 국가에 대한 패배주의가 관여하는 냉소적 순응과⁶²⁾ 다른 하나는 국가의 태도에 오히려 주도적으로 찬동함으

62) 김석준(1998)은 4·3사건 이후 제주도민의 투표행위 연구에서 제주민중들이 4·3사건 이후 ‘적응형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3공간에서 저항과 도전은 죽음을 의미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순응하는

로써 패배를 와전시키려는 적극적 적응으로, 군경에 의한 무장대 희생자 유족이 우익활동에 더욱 활발히 하는 경향이나 한국전쟁시기 자원입대하는 경향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⁶³⁾ 이들은 폭압적 국가를 경험했으며, 국가주의에 동조함으로써 그 생존 능력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의 변화가 오자 가장 먼저 4·3사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한 부류들도 이 적응의 형태를 보여 왔던 유족들이었다. 외면하거나 침묵했던 유족들의 경우 한참 후에야 4·3유족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에서도 무장대 활동 희생자 유족들은 유족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기념의례와 연결지어 본다면 군경 및 우익 유공자 유족들은 충혼위령제와 별도로 전몰군경합동위령제를 연행해 왔지만, 나머지 유족들은 근 40여년 동안 곳이나 기제사를 통해서만 4·3사건의 기념에 대한 일이 가능했다. 이 경우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자신들만의 비공식적 상징 세계에서 대항 기억, 대항 담론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것은 기성질서에 대항하는 자율적, 독자적 세계인 것이다(한석정, 2006). 여기서 곳은 공동체의 확인, 평등, 가변성, 역동, 변화, 갱신, 전복 등의 민중 의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것만이 생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러한 권력 행사에 대한 침묵과 순종을 확실한 삶의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4·3사건은 우익세력, 즉 막강한 무력을 지닌 권력 집단에 대한 좌익의 변혁적 도전이 지닌 정체성이 철두철미하게 진압되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잘 각인시켜 놓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그러한 정치권력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은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막강한 폭력을 지닌 정치권력에 대한 침묵과 순종, 그러한 권력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순응적 적응의 정체성이 대표적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는 4·3에서 경험한 폭력적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확실함이, 권력관계의 정당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자신을 그 권력관계의 철저한 종속자로서 위치 지우게 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렇게 굳어진 정치적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중심부 정치권력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종민(1999)도 주민들의 반응을 피해의식(레드콤플렉스), 허무주의, 멸사배타성, 불신평조 등 외면과 침묵의 대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63) 이덕구의 사촌 누이 동생이 4·3사건 이후 우익 활동을 했던 것이나, ‘폭도마을’로 지정되어 몰살당했던 북촌마을의 청년들이 한국전쟁시기 학도병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행동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3) 제주의 전통의례와 단골공동체

4.3사건과 관련된 민중적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굿’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전통의례와 단골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에서 굿과 같은 전통의례는 오랜 기간 중앙수탈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주민중들의 결속 장치이자 상담창구였다. 조선시대 유교주의가 확립되어가던 시기에도 중앙의 정치문화적 장치인 유교이념과 자주 갈등했으며, 개항 이후 서구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이전에 존재했던 굿과 기제사는 큰 갈등을 빚었다.

굿은 근대화의 명목 아래 탄압되어질 때에도 사라지기보다는 숨어드는 형태로 지속되곤 했는데, 제주사람들의 무속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척박한 토지, 위험한 어로 행위, 중앙기구의 수탈, 외적 침략 등의 여건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굿은 제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고통을 잊게 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마을 내의 본향당과 심방의 존재, 그리고 이들과 마을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제주지역에는 각 마을마다 그 공동체를 묶어주는 신당(神堂)이 존재한다. 마을 안에 여러 개의 신당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주신격이 되는 당이 본향당이다. 이 본향당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존재하며 매년 정기적인 굿과 모임이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굿을 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본향당에 매여있는 심방(무당)인데, 이들 심방은 세습무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과 깊은 단골 관계를 형성하며, 단골이 의뢰할 때는 굿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심방은 단골들의 일상 생활 전반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단골들도 심방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들의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또한 심방이 구송하는 ‘본풀이’ 등 사설에는 단골들이 의뢰한 치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간에는 암암리에 고해성사를 한 신자와 신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성립된다.⁶⁴⁾

64) 특히 굿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굿의 종교성 하에 하나의 연대모임을 형성하고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신뢰 형성뿐만 아니라 종교성을 해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 내 어떤

이런 문화적 장치는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는 정치적 사건을 보존하는 하나의 역사보존장치로 활용되었는데, 이런 곳들은 4·3사건의 민중적 연설을 대변하는 장치로, 같은 심방과 같은 단골의 토대를 갖고 있는 이 단골공동체는 ‘숨겨진 사본(hidden transcript)’의 비밀 공유자가 되곤 했다. 이 비밀스런 연대는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곳으로 생산되곤 했는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함께 모여 의례가 뽑어대는 공동의 상징을 접한 가족구성원, 지역공동체, 종교공동체는 하나의 대항 담론가 및 집단으로 키워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연하게 4·3의 피해에 대하여 언급하는 계기를 마련해낼 수 있었다.

나. 유족 기념의례의 형식과 구조

1) 유족 기념의례의 대상자

4·3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의 기념의례의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거의 대부분의 4·3사건 관련 희생자 유족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념의례를 연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탄압되어진 대상들이다.

일찍이 1966년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3사건으로 희생당한 군인과 경찰유공자들에 대한 유족회 차원의 기념의례가 실행되어 왔다. 제주시내에 있는 충혼각이란 사찰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충혼각 등이 주관이 되어 매년 음력 3월25~27일 사이에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를 개최해오고 있다.⁶⁵⁾

집에 ‘곳’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곳에 참가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3일 재계(신체 청결, 육류 섭취 금지) 등의 금기의식을 자발적으로 행한다. 종교성 아래 곳에 참가한 사람들은 곳 연행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한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65) 전몰군경합동위령제는 설봉스님(1929년생)에 의해 매년 음력 3월 1일, 19일, 20일에 법회를 지내오던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시작할 당시 현 제주시 사라봉 충혼각에서 지내다 충혼묘지 이전(移轉)과 함께 현 영실쪽 위치로 옮겨 18년째를 맞고 있다. 사라봉 시절 충혼각은 충혼묘지에 장사를 지내기 전 임시로 전사자 유골을 보관했던 곳이었는데, 당시 월남전사자 시신들도 보관했었다고 한다. 1966년 1월 충혼각에

반면 국가로부터 탄압당하는 기념대상들이 있었다. 그들은 국가와 4·3사건 관련 군경유족 등에 의해 기념되는 대상자들로부터 희생당한 사람들이었다. 이 시기에 억압의 대상들은 일반적으로 ‘조상’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기념해왔다. 주로 굿이나 제사를 통해 조상의 영혼을 위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굿의 명칭은 원혼굿, 무혼굿, 내력굿, 시왕맞이, 차사영맞이, 치병굿, 귀양풀이, 뉘들임 등 다양했다.⁶⁶⁾ 대체로 죽은 자의 혼을 위무하는 4·3사건 관련 굿은 치병이나 가내평안을 위해 원혼을 달래는 형태로 구성되어졌다. 만약 치병의 경우라면, 병의 원인은 조상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후손들을 괴롭힌다는 관념이 형성되므로 굿의 대상은 후손을 괴롭히는 조상을 모두 포함했다.⁶⁷⁾

설봉스님이 들어오면서 보훈 유족과 보훈단체, 각 행정기관(당시 제주도청, 제주시청)에 위령제를 제안하였고,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 당시 원호청으로부터 전몰군경명단을 받아 사라봉 충혼각에 위패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위패 조성은 제주시의 경제적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1966년 1월부터 준비하여 음력 3월에 지내게 된 전몰군경합동위령제는 20~30대의 미망인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위령제 때는 통곡바다가 되었다고 한다(설봉스님의 증언).

66) 후대에 와서 진혼굿, 추모굿, 해원상생굿 등의 명칭이 더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똑 같은 굿이라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진혼굿, 추모굿, 해원상생굿이란 말은 후에 민주화운동단체에 의해 쓰이면서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유족들은 내력굿, 무혼굿 등의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나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소 달리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편 뉘들임의 경우 당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사건을 당한 사람이 너무 놀란 나머지 혼이 탈출하여 신경적 질환을 앓고 있는 데서 그 의례의 형성이 시작된다. 때문에 혼을 복귀시켜 정신을 안정시키는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4·3사건의 증언자들에 따르면 4·3사건 직후 초도화된 마을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뉘들임 의례가 줄곧 행해져 왔다고 한다. 북촌마을 조사 당시 마을 사람들은 4·3사건 직후 뉘들임 행위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목격하기는 쉽지 않다.

67)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상을 잘 섬기지 않아서 생긴 질병은 간접적인 질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병은 혼(魂)의 탈출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병은 ‘뉘들임’이라는 굿으로 치료한다(고광민·강정식, 2006). 현용준(1986)은 이런 무의(巫儀)를 두고 탐혼주입의례(探魂注入儀禮)라 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① 제주도 무속에서는 인간은 육체와 몇 개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혼의 일부가 육체에서 이탈하면 병이 된다고 관념한다. 그 영혼은 깜짝 놀랐을 때에 탈출하는데, 특히 영혼 불안정기인 아이들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② 영혼의 탈출로 인한 병은 습속으로서의 뉘들임, 비념 형식의 뉘들임, 굿 형식의 뉘들임 등을 시행하여 치료하는데, 그 공통된 치료법은 혼이 탈출한 장소에서 방황하는 혼을 불러 육체 속에 복귀시켜 진정시켜 놓는 원리다. ③ 이러한 치료법으로 보아서 그 의례

4·3사건과 관련된 충혼위령제가 국가적으로 형성되고 다른 기억의 존재를 부정했던 시기, 굿은 치병담론에 의거해 국가와 다른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례의 미조심방 인터뷰⁶⁸⁾나 1949년 무장대 이덕구의 사촌여동생으로 우익활동을 하던 000의 증언은 당시 치병굿을 통해 4·3사건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했던 유족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⁶⁹⁾ 본 연구자도 1999년 성산읍 온평리에서 벌어진 치병굿의 현장을 관찰한 바가 있는데, 병의 근원은 ‘4·3사건 때 죽은 조상의 원혼이 썩었다는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치병은 조상의 원혼을 해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죽은 조상의 원혼 수가 전부 대두되므로 수십 명의 조상들이 굿의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 시기 유족기념의례의 대상은 형식에 따라서 그 기념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는데, 전몰군경위령제처럼 밖으로 드러내 놓고 기념할 수 있을 때에는 명확한 기념대상과 기념형식이 상정되었지만, 억압을 받았던 유족들의 경우 기념의례의 대상을 좀 더 폭넓게 상정함으로써 희생자로 집중되는 시선들을 분산시키는 측면들을 부여주었다. <그림 2-3>은 4·3사건으로 인해 학살된 원동마을 주민들의 혼을 복원하는 무혼굿으로, 산 자의 치병을 위한 굿은 아니지만, 망자의 위무를 통해 공동체의 복원을 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치병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⁷⁰⁾

<그림 2-3> 1990년 원동마을 무혼굿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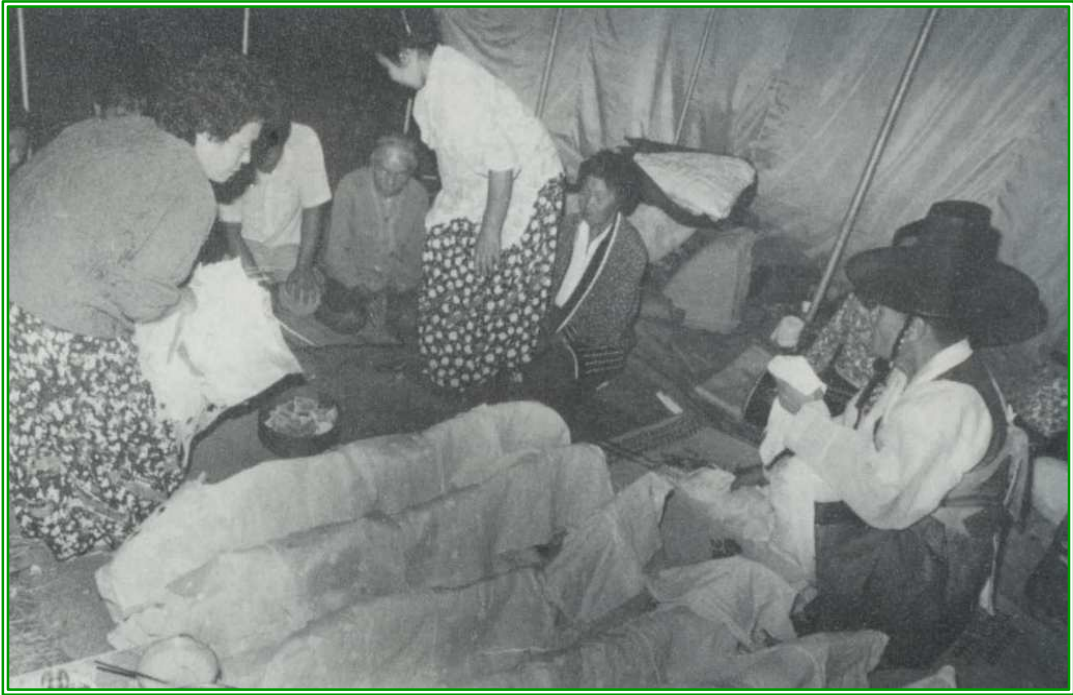
의 집행자인 심방은 영혼을 구사, 조종하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측면을 지닌 직능자라고 할 수 있다(현용준, 1986: 323). 여기서 병은 사악한 신령이나 요괴가 인간에 범접하여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병은 새드림, 푸다시, 두린굿(추는굿), 구삼승냄이라는 굿으로 치료한다(고광민·강정식, 2006). 이런 무의를 두고 협박구축의례(脅迫驅逐儀禮)로, 협박구축의 대상은 악령이요, 악신이라 할 수 있다(현용준, 1986: 340-348).

68) 김성례는 미조심방(서순실)을 인터뷰하여 4·3사건 때 굿이 치병에 의거한 굿이 많았던 측면의 증언을 들었다.

69) 제주43연구소에 증언 채록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였다.

70) 원동마을 굿 자료는 제주43연구소(1990a)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71) 1990년에 행해진 원동마을 굿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위 사진은 제주43연구소가 2004년에 제공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원동마을굿은 땅 찾기 소송과 관련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허화영(1991)을 참조할 것.



원동마을은 43 초토화 시기 마을 전체가 소실되고 주민들이 학살된 곳이다. 살아남은 마을 주민들은 인근 해안 마을 등으로 소개를 당하였는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990년 4·3사건에 비명횡사한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곳을 열었다.

2) 유족 기념의례의 시공간

군경 및 우익 유공자들은 일찍부터 유족회를 조직하고 기념의례의 분명한 시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던데 반해 나머지 유족들은 유족끼리의 경계도 불분명하거나와 국가의 탄압으로 개인의례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이들의 기념의례는 거의 학살된 날짜를 기준으로 전날에 맞춰져 있었다. 만일 사망일을 모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생일날이 기준이 되었다. 이 경우 희생자들 대부분은 4·3사건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었는데, 수장되거나 한국전쟁시기 예비검속으로 인해 전국의 형무소에 배치되었다가 학살된 수형인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망날짜를 모르고, 유해도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간적 위치는 아직 생존해 있음을 의미하는 생일날이 기념의례의 시간적 위치인 것이다.

다른 유족들과 달리 이들에 대한 공간적 위치는 불안하다. 유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간적 위치는 종종 헛모

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다. 헛묘는 혼백을 모셔다 안치하여 무덤을 만든 유해가 없는 빈묘이다.

동광 마을 임문숙 가족은 마을이 초토화되어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정방폭포에서 학살되었다. 이후 학살된 가족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9명의 가족을 7기의 헛묘로 만들었다.⁷²⁾ 같은 마을 김여수 가족도 같은 곳에서 학살된 가족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헛묘를 만들었다. 임문숙은 헛묘를 만든 경위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4·3사건이 진정되니까 살아남은 친척들 사이에서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칠성관을 만들고 학살터라는 정방폭포 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뼈들이 다 엉켜져서 도저히 누구누구의 시신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치를 아는 사람들과 여럿이 갔었지요. 거기는 우리 집 방(대략 5평 크기)만큼 했는데 구덩이를 조금 파고 그 안에서 전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옷도 일부 흩어져 있고 하였지만, 이미 살이 삭아들어 뼈만 남아 있었지요, 우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시신은 못 찾았지만 비석이라도 세우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죽은 이들의 혼을 불러다 헛 봉분을 쌓고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림에서 곳을 하고, 죽은 사람들이 저승에 가서 잘 살도록 길도 쳤습니다. 그 후 한번 시신들이 있는 곳을 가봤는데, 그곳은 다 바뀌어 집들이 들어서 있었어요.”⁷³⁾

헛묘는 이들에게 4·3사건의 경험을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비석에도 나타났다. 대다수의 비석들이 충혼비나 혹은 군경의 순직비, 공덕비 형태로 제주 전역에 공간 분할이 이뤄진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공덕비들이 남아 있는 것은 억압시기에도 저항적 면모를 지녔던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제주시 용담1동에는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한 현경호에 대한 공덕비가 있다. 현경호는 해방 후 1947년 안세훈, 이일선 등과 함께 제주읍에서 민족주의 민주전선 의장단에 취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1947년 3·1발포사건 후 미군정청 포고령 제2호 및 법령 제19호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1948년 12월 22일 읍내유지 6명과 함께 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제주중학교 교정에는 1969년 12

72) 2기는 합묘임.

73)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4, 『제주4·3유적Ⅱ』 p.141에서 재인용하였다.

월에 현경호 공덕비가 세워졌다. 비문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중략)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교육으로 헌신하시다가 1948년 12월 23일 애석하게도 작고하셨으니 고인이 마련하신 이 터전 위에는 오늘 2천여의 학도가 모이고 훌륭한 교육전당이 마련되었으니 선생님의 거룩하신 뜻과 더불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가슴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생략).’

비석의 내용은 지극히 향토교육과 관련된 공덕비였지만, 그의 경력과 비석이 세워진 시기를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저항담론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경력 중에 교육경력을 부각시킴으로써 4·3사건의 문제를 주변화시켜 탄압을 피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실 4·3사건과 관련된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비석에는 4·3사건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그저 몇 년, 몇 월, 몇 일에 죽었다는 표시만이 4·3사건 시기에 죽었음을 알려줄 뿐이다. 반공국가 시기 4·3사건을 기록하고 보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49년 토벌대는 이덕구의 선조 묘지를 보고 비석에 충절을 하여 비석을 꺾어 버렸던 적도 있었다. 4·3시기 19세의 나이에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행방불명된 강두호의 비에는 ‘서기 1948년 11월경 본도 4·3사건 당시 실종’으로 표시되어 있다. 경찰에 연행되어 실종되었다는 간단한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했던 것이다(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이런 억압적 상황에서도 미력하나마 그 희생자의 존재를 공간적 위치에 확보해 두었던 것은 주기적 기념제의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보전하고자 했던 장치로 볼 수 있다.

3) 유족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

전물군경합동위령제의 형식은 대체로 충혼위령제의 형식적 측면에 불교의례 형식을 가미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 위령제는 충혼위령제의 형식과 내용적 측면을 그대로 답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례-추념의 노래-내빈소개-제주분향-제문 낭독-추모사-추도사-인사말씀-유족대표 인사-일반 소향’ 등으로 이뤄지며, 충혼위령제에서 유포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언어적 구성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 위

령제의 절차가 끝나면 천도제가 거행되는데 천도제는 불교제의 특성상 언어적 구성을 보이는 위령제에 비해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는 매체성을 가지고 있다.⁷⁴⁾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적응의 형태를 보여주는 유족들이 아니라,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유족들의 기념의례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체로 국의 형태로 4·3사건을 기념하고자 하는 형태는 그 서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개 위령제가 하나의 이야기가 생략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국은 줄거리를 담보하기 때문에 민중의 선호를 받아 왔다. 특히 4·3사건 관련 국은 혼을 복원하는 제주의 전통국에 의거해 연행되었는데, 제주의 전통국은 본풀이라는 장치를 통해 그 서사성이 발달되어 있었다.

다만 억압을 받던 시기의 사설을 온전히 보전한 자료의 부재로 그 서사성을 살펴보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⁷⁵⁾ 남아 있는 자료들과 증언을 통해 살펴보면 4·3사건 관련 국들은 치병을 빙자한 조상 해원의 서사구조로 이뤄져 있음을 볼 수 있다.

4·3사건 관련 국은 제주의 전통국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데, 크게 ‘초감제’, ‘질치기’, ‘도진’의 절차로 이뤄졌다. 이 중 초감제 절차 안에 있는 ‘연유담음’과 질치기 과정 중의 ‘영게울림’ 단계가 중요하다.⁷⁶⁾ 연유담음은 국을 의뢰한 본주의

74) 설봉스님은 매년 천도제를 시행한다고 증언하였다.

75) 4·3사건 관련 국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국 자체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했지만, 국 본주 당사자들이 외부인의 진입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가의 탄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3국의 텍스트는 제5장에서 다룰 유족위령제에서 현재 채록한 것을 중심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6) 초감제는 1만8천신들을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이 초감제 세부 구성은 베포도업침(천지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인물의 발생 등 지리·역사의 발생을 노래)-날과 국 섬김(국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제차)-연유담음(국하는 사연을 노래)-군문열림(신들이 하강하는 신궁의 문을 여는 제차)-산 받아 분부사뵐(군문이 열리고 난 후 신갈점과 산관점을 통해 문이 열렸는지를 알아보고 신의 뜻을 본주들에게 전하는 제차)-새드림(신들이 하강하는 길에 부정을 쫓아내는 제차)-신청궐(신들을 제청으로 청해 들이는 제차) 등으로 이루어진다. 질치기의 세부구성은 날과 국 섬김-연유담음-군문열림-질치기(저승길 돌아 봄-연월도로 베기-막대로 치우기-따비로 파기-발로 밟기-비로 쏘기-청이슬 다리 놓기-나비 다리 놓기-처서영신다리 놓기-가위로 끊기-울궁기, 실궁기 메우기-시루다리 놓기-홍마음다리 놓기-등진 다리 놓기-애순다리 놓기-즈부연다리 놓기)-적베지 탐(망자의 저승명단인 적베지를 타 오는 제차)-차사질 돌아봄(저승의 차사가 오는 문을 돌아 보는 제차)-열두문에 인정 곁에(저승으로 가는 열두문에 인정을 거는 제차)-혼 부

현재 사연(병의 상태)을 심방이 눈물로써 읊는 과정이다. 4·3사건 관련 곳의 경우 이때 유족들은 현재의 고통스런 삶에 덩달아 눈물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산 자의 현재적 비극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4·3사건의 직간접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경병적 증세를 앓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때의 신경병적 증세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이야기되어 졌는데, 그 어디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곳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맥락을 띠고 있다.

<사례1>은 이덕구의 살아남은 친지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으로 50위에 달하는 가족 친지들에 대한 질치기가 이뤄졌는데, 이는 이덕구로 인하여 이덕구의 가족 및 친지가 상당수 사망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살아남은 사촌 누이는 열성 우익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치병 곳이 시도되었다.

<사례1>

“(중략) 곳도 4·3직후인 1949년말 1950년 초에 행해졌다. 곳을 의뢰한 이는 이덕구의 사촌누이였는데, 사촌누이는 우익계파의 열성활동가였지만 ‘치병’ 때문에 곳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 치병 곳에서 50위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질치기가 이루어졌는데…….”⁷⁷⁾

<사례2>

“아들이 너무 아파서 안 찾아본 병원이 없었다. 되는 일도 없고 해서, 결국은 주변에서 곳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외방 심방에게 곳을 부탁하게 되었다.”⁷⁸⁾

<사례2>에서도 아들이 너무 아파 외방(마을 밖) 심방에게 곳을 의뢰했다고 본주는 증언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이 쉬이 낫지 않아, 심방에게 곳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병곳을 위한 곳이었다. 그러나 곳을 연행하는 동안 심방은 4·3사건에 죽은 집안의 원혼이 이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토벌대가 들이닥칠 때의 상황을

름(망자의 혼을 불러 들이는 제차)-영계울림(심방의 입을 빌어 망자의 심정을 자손들에게 알리는 제차)-열두문 열림(영혼이 저승으로 들어가는 열두문을 열러 가는 제차)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도진은 제청으로 모셨던 모든 신들을 돌려 보내는 제차이다.

77) 이덕구 곳을 했던 심방의 기억으로, 『이제사 말함수다(1989)』에서 재인용하였다.

78) 성산읍 온평리의 사례로 본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였다.

보여주었다.⁷⁹⁾

위 사례들은 세속사회에서는 ‘알 수 없는 병’으로 통하는 ‘산 자(가족 및 후손)’의 병을 치유하는 길은 ‘죽은 자’, 즉 ‘4·3의 원혼’을 위무하는 것을 매개로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굳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망자들은 산 사람의 안녕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Assmann, 2003: 45). 그러나 이 시기에 이뤄졌던 곳들에서 4·3사건의 원혼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 이전까지는 4·3사건에 대한 직간접 언급은 일체 금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사 말함수다』의 한 심방의 증언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집에 어떤 곳을 가드라도(가더라도) 4·3내력이 나오지, 집안에 관, 경찰관이 있는 집은 가족들이 산에서 당한 집이 많고, 저쪽(산)에서 활약하다 죽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죽여분(죽여버린) 디가(곳이) 많고, 꼭 좌익 쪽이 아니고도 집안 원한관계로도 죽고, 심지어는 산에서 활약한 사돈끼리 원한으로 죽은 데도 있어 놓으니,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 나 심정도 그때는 괴로웠다고……. 말을 줄바로(똑바로) 못했주. 81년 이후 풀어지기 전에는 당당히 본주(곳의 제주)앞에 말해 주고 사실대로 말해야 할 건데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나 잘 안장시켜 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거지. 잘못해서 동티나면 큰 일이니까. 사태에 대한 말은 80년(1980년) 전까지 해보 질 못했어.⁸⁰⁾”

이런 형태의 기념의례는 4·3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4·3사건의 기억과 평가에 대한 정치적 맥락을 숨겨주고 있다. 김성례는 4·3사건에 대한 언설이 침묵당하는 억압적 상황에서 비록 접신 상태이지만, 무고한 죽음을 영혼의 울음으로 재현하는 제주의 곳은 4·3사건의 참상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파악하였다(김성례, 1989; 1999).⁸¹⁾

79) 1999년 5월 성산읍 온평리 현지 조사.

80)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1989)』 p.21-23에서 재인용하였다.

81) 김성례는 지라르(Girard, 1977)의 논의를 빌어 4·3사건의 폭력을 희생자의 입장에서 폭력의 부당성을 고발하며 희생의 고통 그 자체를 증언함으로써, 폭력에 저항하는 담론구조로서 무속적 중요성 및 저항의 적극성을 해석하려 했다. 지금까지의 4·3사건에 대한 담론정치가 폭력적 행위자(agent)의 담론(공산폭동 및 민중항쟁론)에 의해 지배되어왔던 것에 비해, 김성례의 연구는 권력의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 즉 희생자(victim)의 목소리를 문화적 장치인 무속의례에 나타난 고통을 증언함으로써 저항적 담론의 형태로 구현하

4.3사건 직후 ‘치병곳’이 많았다는 점에서 제주사회가 겪은 엄청난 충격과 사건에 대하여 폭력의 행위자이든 희생자이든, 제주 사람이라면 그 기억을 곳이라는 장치를 통해 담아두려고 했다는 점은 4.3사건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르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공통적인 열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4.3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의 부재와 근대 질서 재편 과정에서 국가가 폭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제주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은 혼돈의 전략을 쉽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병’은 발설이 금지되었던 1980년 이전, 간접적으로나마 4.3사건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표상이 되어왔다.

연유담음의 비극성은 ‘영계울림’의 절차로 넘어가면서 최고조에 이른다. 영계울림은 죽은 영혼의 이야기를 영혼에 빙의된 심방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하는 절차로, 심방의 입을 빌어 영혼의 생전의 심회, 죽어갈 때의 서러움, 저승에서의 생활, 근친들에게 부탁의 말을 올면서 말하는 절차이다(현용준, 1986). 이 과정은 질치기 중 ‘산 받아 분부 사됨’의 일부로, 곳 중에 점을 치는 것을 ‘산 받음’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을 ‘분부사됨’이라 한다. 이때 심방은 눈물로써 영혼의 뜻을 본주에게 전하는데, 이 대목을 영계울림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방의 빙의가 나타나며, 그러면 그 근친은 영혼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사연을 들으면서 교감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이때 가족과 친지 등 유족들은 심방의 빙의와 사설을 통해 죽은 자의 비극적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부채의식, 지독한 가난과 고생을 기억하며 북받치는 설움에 눈물을 흘린다. 때문에 이 영계울림은 곳에서 최고조의 비극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산 자의 병을 일으키고 있는 원혼의 억울한 죽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4.3사건의 원혼이 심방의 입을 빌어 산 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자신의 죽음을 내뱉는 절차도 바로 이 영계울림의 절차에서이다.

고자 했던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다만 희생자의 고통스러운 증언이 들어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4.3 사건 관련 곳이 동일 수준의 저항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4.3사건은 개인과 지역에 따라 그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4.3사건 관련 곳을 의뢰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누가 연행했는가? 언제 행했는가? 어떤 형태로 행했는가에 따라 담론의 논의 수준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 절차에서 ㄱ 사설은 ‘알 수 없는 병’의 근원이 조상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의 배경에 ‘시국’때문이라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가운데 가장 국가적인 폭력 사건이었다는 냉소적 반응을 형성해간다. 이런 반응은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개인적, 자전적 기억을 형성해 나가게 했고, 개별적 기억들은 상호 교차하면서 이후 세대에게 사회화의 담론 일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계승되었다. 이는 온정적인 권력행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 억눌림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정한 저항을 함유함으로써 억압적 권력의 실체를 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풍자, 조롱의 냉소적 자세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김석준, 1998; 이창기, 1992).

<사례2>의 성산읍 온평리 ㄱ의 영계울림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형태와 내용이 ‘억울한 죽음’과 ‘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심방은 병의가 된 채 원혼의 억울한 죽음을 울음과 사설, 죽을 당시의 행동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심방은 무장대에 의해 총과 칼로 찔림을 당해 죽은 원혼의 모습을 재현했다.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은 비통한 표정과 행동으로 병의된 심방을 원혼을 대하듯 하며 심방을 매개로 죽은 자와 산 자 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혼을 달래며, 현재 후손의 치병을 부탁한다.

<사례2>

“(중략) 이제 다 알았시메(이제 다 이해한다)’, 억울한 거 다 알았시메(이해한다), 시국 때문에 경현 길, (중략) 순덕이 오라방도(오빠도) 이제랑 풀어줍써(병에서 낮게 해달라)…….”

김성례가 1989년에 조사했던 심방은 명부를 관할하는 시왕에게 청하여 이승과 저승사이 허공에서 떠돌고 있는 환자부모의 영혼들을 저승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도록 길을 닦는 곳을 했는데, 이 곳을 한 다음 환자는 완전히 병을 낫지는 않았지만 그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증언했다고 보고했다. 사례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죽은 자가 산 자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점이다. 이는 산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제는 조상들의 부정적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후손들의 완전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암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⁸²⁾ 이는 기존 역사의 새로운 구성을 요구한다. 이

러한 절차는 바로 4·3사건의 국가폭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폭로할 뿐만 아니라 제주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의 정서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계울림의 비탄조의 사설은 역사적 폭력을 기억하고 현재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적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영계울림의 과정이 끝나면, 굶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조상들의 부정적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전향하려는 절차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질치기’이다. 질치기는 신이 내림하는 길을 치워 닦는 의식이나 사령(死靈)을 불러들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위무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길을 치워 닦을 때의 그 소로과정을 춤으로 실연하는 제차이다(현용준, 1980). 이 질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 자의 병에 대한 치유가 결정된다. 때문에 심방과 근친들은 질치기에 온 정성을 쏟는데, 결국 이 과정은 부정적 죽음을 맞이한 조상들의 완전한 해원과 고통스런 현재를 살고 있는 후손들의 치병과 연결된다.

이렇듯 굶은 죽은 자와 산자의 매개를 통해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삶으로의 복귀염원을 담은 상생의 상징화가 나타난다. 이는 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뿐만 아니라, 국가적 망각의 요구로 정신적 충격조차 벗어던질 수 없었던 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질병, 불행,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었던 신경병적 증세의 탈출구로써 작동되었으며, 그것은 4·3사건에 대해 왜곡 기억하도록 강요한 과거의 국가 폭력을 고발하고 완전하고 사실적인 역사 복원을 내포하는 장치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굶은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의 경험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역사구성 작업으로 볼 수 있다(문옥표, 1989). 4·3사건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지된 상황에서 산 자가 죽은 자의 입을 빌어 4·3사건의 비극을 기억하고 구성하는 제주주민들의 유일한 역사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는 굶이 단순한 치유기술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역사적 진리를 창출해내는 일상의 대체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소결

82) 표인주(2004)도 원혼적 자질을 가진 죽음은 통과의례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존재로 규정, 유교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음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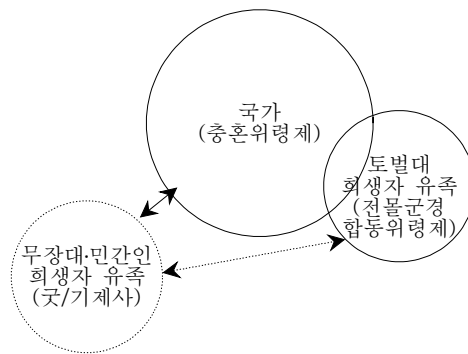
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공식 기념의례는 충훈위령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충훈위령제의 대표적인 의례는 현충일 추념식으로 오늘날까지 4.3사건시기 토벌대로 참여했던 군경 및 민간인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유공자의 유족들은 별도로 전몰군경합동위령제를 매년 연행하면서 반공적 국가담론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들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한 무장대·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전통의례에 기대어 이들과는 다른 기념의례를 연행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며, 망각이 요구되어졌다.

이 시기 각 주체들의 역학관계가 기념의례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살펴보면 <그림 2-4>처럼 가장 큰 영향력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주도의 강건한 기념체계와 억압 속에서 각 주체들은 적응하거나 외면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적응의 경우는 국가 못지않은 영향력 속에서 전몰군경합동위령제와 같은 기념의례를 연행하고 있었으며, 무장대 및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겉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게 기념의례를 치르면서 국가 기념의례에 외면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기념의례 텍스트의 선택에도 나타났는데, 국가와 유족들은 반공담론을 명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위령제를 선택하고 있다면 다른 무장대·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굿이라는 전통의례에 기대어 자구적 기념의례를 형성했다. 이 시기 반공담론에 대한 저항은 치병구제와 같이 일상적인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국가 전략은 반공담론을 지키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 담론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을 배제(exclusion)하는 것이다. 배제의 한 종류는 금지(interdit)라고 보았을 때 이 장에서 보여주는 반공담론과 충훈위령제, 그리고 유족의례의 억압은 이런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가 기념의례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반공담론의 유포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가에 의해 배제를 당하는 유족들은 전통 문화의 장치에 의거하여 대항적 기억과 평가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4> 반공국가 시기 4.3기념의례의 역학관계



점선 화살표: 잠재적 상황

실선 화살표: 드러난 상황

제3장 민주화집단의 저항과 기념의례 갈등

1. 사월제의 등장

가. 사월제의 형성과정

1)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5·18진상규명운동

4·3사건이 한국의 근대적인 국가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기원적 연원으로 인해 4·3사건의 문제는 언제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특히 4·3사건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귀결되어 그 진상규명운동은 쉽지 않았다. 오랜 군부정권기간 동안 4·3사건은 발설조차 금지되었다.

4·3사건의 진상규명운동이 재부활된 것은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운동과 5·18진상규명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였다. 6월 항쟁은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남겼는데, 박찬식(2007)은 제주현대사에서 제주지역의 6월 항쟁은 1947년 3·1집회, 1948년 5·10단독선거 거부 이후 사라진 대중적 집회 및 시위의 부활로 평가하고 있다. 이 경험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짓눌려 있던 제주지역의 주민들이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저항권을 인식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6월 항쟁을 통해 거리 정치를 전개하며 시민적 역량을 결집한 것은 제주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치사회적 경험이었고, 이는 4·3진상규명운동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의 장을 펼치게 했다.⁸³⁾ 특히 전국의 대학가와 민주화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5·18진상규명운동과 추모제’는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민주화 집단에도 영향을 주어 제주에서도 이들을 중심으로 ‘4·3진상규명운동과 추모제’

83) 이후 제주사회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회운동들은 이 시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송악산군사기지 반대운동,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운동, 탐동매립 반대운동 등이 있다.

가 거행되기 시작했다.⁸⁴⁾

6월 항쟁 역시 집권세력에 대한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반독재민주운동의 근원인 5·18민주화운동은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이런 운동의 원동력은 5·18진상규명의 물꼬를 트게 했는데, 광주청문회를 비롯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12. 1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12.17)제정’ 등 일련의 5·18진상규명과 과거사 청산 모델은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지역의 민주화 집단 및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절차상 비슷한 과정을 밟아갔다.

1990년대 들어서면 제주지역의 민주화 집단은 4·3사건의 진상규명이 5·18과 같이 드러날 수 있음을 종종 언급하였다. 이것은 연좌제의 사슬에서 심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다. 유족들에게 ‘5·18민주화운동처럼 4·3사건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부각시킴으로써 진상규명운동의 중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가 42주기 4월제 행사를 마련하는 뜻도, 이제는 제주의 4·3도 광주의 5월처럼 대명천지에 드러내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데 있다(사월제 공준위, 1990).’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의 모델은 유족 및 제주 주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졌다.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1997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4·3유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4·3특별법 제정에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하였으며, 기념사업에 있어서도 광주의 5·18과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부상하려 했다. 다만 5·18과 견주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가해자의 처벌과 보상 문제였는데, 향후 이 문제의 해결에 따라 4·3진상규명에 대한 평가는 5·18진상규명의 절차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84) 1985년 5월 14일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5·18광주사태 진상규명대회’에 대한 집회와 거리 시위가 열렸다. 제주지역에서 최초로 최루탄과 화염병이 등장할 정도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어 5월 18일에는 ‘광주사태 진상규명하라’는 전단을 뿌리고 횃불 시위를 시도하다 학생들이 연행되고 구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제대신문, 1985. 5. 27). 이듬해 5월 13일에는 5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광주민주항쟁 제6주기 추모제’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때 학생들은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과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제대신문, 1986. 5. 15). 이런 경험들은 후에 4·3사건 진상규명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2) 4·3사건 진상규명운동과 문화운동

4·3사건의 역사적 경험이 공공적 또는 대중적 차원에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은폐되어 온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온전한 회복 또는 재구성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 진실규명은 운동이 필요했고,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은 몇 단계 계기를 통해 확대될 수 있었는데, 4·19 혁명(1960년), 6·10 항쟁(1987년), 문민정부 출범(1993), 국민의 정부 출범(1998), 참여정부(2002) 등의 한국의 정치사회사적 변화를 통해서였다.

본격적인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은 1987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전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의 차원들이 있었기에 그 연속적 동력이 가능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제주 주민들은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리라 예상했다. 이 시기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가 조직되어 4·3진상규명운동을 전개했고,⁸⁵⁾ 모슬포 유족들은 집회를 열어 ‘특공대 참살사건(1949년)’과 ‘예비검속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⁸⁶⁾

1960년 5월 30일에는 국회에서도 김두진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가 통과되어 6월 6일 하루 동안 제주4·3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제주시의회는 6월 3일에 ‘4·3사건 등 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7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에 들어갔다.⁸⁷⁾ 6월 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는 10여년 만에 공식적 자리에서 양민학살의 불법성과 잔인성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때 박상길 의원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시효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일정상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자 명부와 피해 내용 등을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 6월 10일까지 조사단 앞으로 보낼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

85) 제주대 학생 7인으로 구성된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에는 고순화, 고시흥, 박경구, 양기섭, 이문교, 채만화, 황대정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도보로 제주지역 50개 마을을 일주하여 진상조사에 참여하였다(이문교 증언).

86) 제주신보, 1960년 5월 31일자를 참조하였다.

87) 제주신보, 1960년 6월3~4일자를 참조하였다.

신보』의 ‘4·3사건 및 6·25 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 접수는 6월 10일까지 연기되었다(박찬식, 2003).

그러나 국회조사단의 제주 방문은 형식적인 측면이 많아, 이후 국회차원에서 4·3사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재경 제주출신 학생들은 6월 21일 국회 앞으로 몰려가 4·3사건 진상규명과 범법자를 처단하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시위하였다.⁸⁸⁾ 또한 제주출신 김성숙 국회의원이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곧 뒤이어 일어난 5·16군사정변과 대대적인 국가탄압으로 진상규명의 분위기는 시들어버렸고, 박정희 집권 기간 내내 국가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강화로 금기되었다.⁸⁹⁾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은 증언이 아닌 문화예술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소설가 현기영의 1979년 소설 『순이삼촌』이 북촌마을의 4·3사건을 다루면서 4·3사건의 진상과 상처를 드러냈다. 유신체제가 파국으로 치닫던 시기이자, 4·3사건이 발발한 지 3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 소설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4·3에 대한 진실규명의 당위성을 각인시켜 주었고, 이런 진상규명의 욕구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추념, 애도의 표시로 나타났다. 1979년 4월 3일 재경 청년지식인, 사회운동가, 종교인들이 개인 가옥에서 비밀리에 추모의 제사를 지낸 것도 그런 심리가 반영된 행위였다(김영범, 2004: 53). 그 후로 4·3사건 진상규명운동에는 추모의 제의나 행사 시도를 통해 그 추동력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8년 4·3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사회에서는 5·18진상규명으로 시작된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6월 항쟁으로 이어져, 군부독재 정권이 퇴진하고 정치적 자유화의 큰 진전이 일어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4·3사건 진상규명운동도 마침내 조직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공산폭동론의 이데올로기적 평가 속에 4·3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운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제주지역 민주화 운동 집단을 자각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현대사의 재조명과 재인식의 기운 속에서 국가의 공산폭동론에 대한 대항담론으

88) 제주신보, 1960년 6월 22일자를 참조하였다.

89) 양민학살 진상 신고서 접수를 받던 제주신보사 전무 신두방이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진상규명동지회 이문교, 박경구가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로 민중항쟁론이 대두할 수 있었고, 집단학살의 실상과 그 책임소재의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5·18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대중적 접근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4·3사건 진상규명운동에는 언제나 집회나 추모제와 같은 의례적 행동이 수반되었다.⁹⁰⁾ 최초의 4·3사건 관련 공개적 추모제 및 집회가 시민사회에 대두된 것은 1988년 4월 3일 일본 동경에서였다.⁹¹⁾ 이 추모제는 재일교포 김석범과 김민주 주도로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이 주최한 것으로 이후 연례행사가 되었다.⁹²⁾ 한국에서는 ‘제주사회문제협의회’의 4·3사건 관련 학술모임을 비롯해, 재

90)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위한 주체들의 활동들 가운데 영향력과 집단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의례였다 (정호기, 2004: 232).

91) 마이니치신문 1988년 4월 7일자, 아사히신문 1988년 4월 4일자, 제주신문 1988년 4월 4일자 등에서 일본 동경의 행사를 다루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과 한국에서 40여 년 동안 금기시 돼 왔던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첫 집회를 보도했다. 아사히저널도 김민주의 인터뷰를 실는 등 일본 언론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92) 문경수(2007)에 의하여 일본에서의 4·3사건에 대한 관심은 40주년 이전에는 김석범, 김봉현, 김민주 등에 의한 문헌 활동으로 요약된다. 실제적인 행사는 1988년 4월에 ‘제주도 4·3사건 40주년 추모기념강연회(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를 시작으로 매년 추모강연과 문화공연 형식으로 모임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과 다르며, 재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문경수에 의하여 4·3시기 일본지역에서 열린 행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88년 4월 [제주도4·3사건40주년추모기념강연회](주최: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1991년 4월 대판에서 최초의 [4·3사건 추모 심포지움]

1995년 4월 [4·3강연회: 양영후 “제주도와 대판의 역사”]

1996년 4월 [4·3강연회: 藤永壯 “1930년대 제주의 해녀투쟁에 대하여”]

[50주년을 향한 최초 준비 회의](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1997년 3월 [동아시아의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주최: 50주년을 향한 제1회 사무국 회의)

4월 [제주도4·3사건 50주년 기념실행위원회발족]

[제주도4·3사건 50주년 기념사업실행위원회 발족]

9월 동경, 대판에서 기록영화 [잠들지 않는 함성(김동만 감독)]상영

10월 [4·3을 말하는 밤: 김석범·양석일 대담]

1998년 2월 양심인동우회주최, [레드헌트] 상영회

3월 50주년 기념행사 [브루스 커밍스 강연]

4월 50주년 추모기념콘서트](동경)

경학우회의 강연회가 열렸다. 제주에서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가 40주년 추모제를 준비했으나 국가의 저지로 성사되지 못했다.⁹³⁾ 이 때문에 4월 4일에는 제주

50주년 희생자 위령제콘서트[침묵을 뛰어 넘어]

8월 [동아시아의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제주도에서 제2회 국제 심포지움 참가)

9-10월 동경, 교토 등지에서 小田実 [아버지를 밟다]공연

2000년 4월 52주년 기념 집회 [43특별법의 제정과 재일의제주도43사건]

1부 김영훈·양동운 [43특별법제정과 그 의미]

2부 김시중·김석범 대담 [43과 재일의 한]

(주최: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대판재일본제주도43사건유족회준비위원회)

10월 재일본제주도43사건유족회 발족식(회장: 강실)

2003년 4월 55주년 기념강연과 마당극

[기념강연: 양조훈(제주43사건진상조사단기획단수석전문위원)]

[마당극: “한라의 통곡”(놀이패 한라산)]

공동대표(민단 荒川 지부 단장 및 荒川 상공회 이사장참가)

놀이패 한라산 [동경조선중고급학교에서 공연]

2004년 4월 동경·대판에서 56주년기념사업

[강연과 제주민속극]

[강연: 양조훈]

[극: “제주도43사건 그 희망의 시작”(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부회 공연단)]

2005년 4월 57주년기념강연회: 西村秀樹, 村上尚子(동경)

57주년 위령집회(대판: 관음사)

6월 대판공연[孤島の 黎明(외로운 섬의 여명)]

2006년 4월 58주년기념강연회(동경)

5월 58주년 기념대판집회[제주도43사건과 전후일본](대판)

다큐멘터리 [제주를 떠난 사람들]

[43사건을 말하다] 오광현, 西村秀樹, 김시중

(주최: 제주도43사건과 전후일본 실행위원회)

2007년 4월 59주년 기념사업(동경)

사랑과 평화에의 기원을 넣어: 강연과 라이브 콘서트의 집회]

이규배 [제주도43운동의 도달점과 과제] 이정미 라이브 콘서트

59주년 기념, 60주년을 향한 위령과 강연 집회(대판: 관음사)

영상자료 [영상으로 보는 제주43], 이규배 강연, 법요

(주최: 제주43사건60주년기념 사업 関西(관서)실행위원회)

93) 이 시기 한국에서는 『제주민중항쟁』 I 과 『잠들지 않는 남도』 등의 출판물이 출간되어 43연구의 선구

대생들의 ‘4·3사건 위령제 및 진상규명 축구대회’집회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⁹⁴⁾ 반면 제13대 총선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저조해지자, 출마자들은 총선거의 분위기를 가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중연설에서 4·3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4·3사건을 총선거용 사회 쟁점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듬해인 1989년 제주지역의 민주화집단들이 함께 모여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1회 ‘제주항쟁추모제’를 개최했다.⁹⁵⁾ 이 추모제 직후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됐다. 이 시기 제주4·3연구소와 제주신문 및 제민일보의 증언채록의 축적은 이후 4·3사건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진실규명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⁹⁶⁾ 또한 학살터, 묘지, 잃어버린 마을터, 무장대 활동지, 피신처 등을 둘러보는 유적지 순례의 시작은 4·3사건의 공간적 무대를 현실세계로 끄집어내는 과정이자, 실제 증거의 확보, 그리고 4·3사건의 비극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써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진상규명운동은 4·3사건에 대한 보다 확대된 대중적 인식이 필요했는데, 1990

적 역할을 했다. 당시 문공부는 아라리연구원에서 발생한 『제주민중항쟁』 등을 비롯해 4·3관련 서적을 포함한 7종의 서적을 사법부에 고발했는데, 이를 두고 조선일보(1988년 6월 23일)와 동아일보(1988년 6월 27일)가 다른 논평을 내기도 했다. 1988년 7월 제경 제주학우회는 제주 YMCA강당에서 4·3강연회를 열었고, 10월에 열린 국정감사는 4·3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후 국정감사 때 마다 4·3문제가 거론될 수 있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40여 년 만에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이 서울과 제주를 방문해 4·3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역설했다. 또한 「제주도 반란(Chejudo Rebellion)」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미 국무성 대외문제 분석관 존 메릴이 서울과 제주를 방문했는데, 4·3과 미국과의 관계를 두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88년 11월 10일자; 11월 17일자; 11월 22일자).

94) 동아일보 1988년 4월 5일자.

95) 이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청년연합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총학생 협의회 학생들도 ‘4·3자주 항쟁 계승 및 구국선열 위령추모행사’라는 주제 아래 집회를 가졌다(제주신문, 1989년 4월 4일; 한겨레신문, 1989년 4월 4일; 조선일보 1989년 4월 4일).

96) 제주4·3연구소는 『이제사 말해준다』 1권과 2권을 비롯해 「4·3장정」, 「제주항쟁」 등을 발간하였다. 같은 시기 제주신문은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1989년 말 제주신문 사태로 이 연재는 이후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이어지면서 4·3사건 관련 증언을 체계적으로 남기게 되었다. 또한 소설가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는 민중수난의 여러 사례를 체계화시킴으로써 대학살의 일면을 증언하는 성과를 남겼다.

년대 들어서면 이전과 달리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여러 분야의 진상규명을 위한 확대된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외의 추모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문화운동과 학술활동들은 4·3사건의 대중적 인식 확대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⁹⁷⁾ 이 시기 방송매체들에서는 드라마를 비롯해 4·3증언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⁹⁸⁾ 반면 정치권은 3당 합당(1990), 한소정상회담(1991) 등의 분위기로 상당부분 경색되어, 4·3사건진상규명운동과 그것을 견인하고 있는 문화·학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가해졌다.⁹⁹⁾

탄압의 국면에 변화가 온 것은 1992년 제주4·3연구소에 의해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지역에 있는 다랑쉬굴에서 4·3사건 때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11구가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이 일은 4·3사건의 참상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했으며, 언론보도를 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유발했다(고창훈 1990).¹⁰⁰⁾ 이로 인해 ‘다랑쉬굴 4·3희생자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제주도민 4·3진상규명을 위한 도민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듬해인 1993년 한 해 내내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4·3피해신고를 공식

97) 제주지역의 문화운동은 김영범(2004)를 참조할 것. 이 시기 서울에서는 제주사회문제협의회와 재경제주학우회 주관으로 추모제의 연례행사가 시도되었고, 미국에서도 ‘남기주 민주청년학생회’가 연례적인 4·3추모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98) KBS는 1990년 들어 제주4·3사건을 포함한 ‘해방과 분단시리즈’ 3편을 방송한다고 소개했지만, 외압으로 방송 하루 전 취소되었다. 방송매체가 처음으로 4·3사건을 다룬 것은 1992년 MBC 대하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 4·3사건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면서부터였다. 방송 등 영상매체와 관련된 정리는 권귀숙(2004)를 참조할 것.

99) 1989년에는 청년문화회 회장 오승국을 연행해 청년문화회가 연 ‘4·3문학제’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소속 놀이패 한라산(당시 대표: 김경훈)이 무대에 올린 마당극 ‘4월곳 한라산’이 ‘빨치산가’와 ‘무장대 선언문’등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공연 2개월 후 소환조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4·3사건 관련 유인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와 부산 경성대 총학생회 간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제주민중항쟁』을 발행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라리 연구원장 김명식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되는 등, 법적 강제력이 작동했다. 1991년 추모제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무산되었으며, 유적지 순례까지 대규모 경찰들이 동행하는 등 국가는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대중적 접근을 철저히 봉쇄하려고 했다.

100) 또한 이 사건을 연상하는 듯한 강요배 화백의 ‘4·3역사 그림전’은 전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적으로 접수하고 읍면별 피해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4·3사건에 대한 전국화와 공공화,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3)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이듬해 민주화 집단은 추모제를 사월제로 명명하고, 추모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운동을 포괄하는 정치투쟁을 통해 4·3사건이 ‘항쟁’이었다는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은 ‘공산폭동’이라는 국가의 공식 담론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군경 및 우익 유공자 이외의 새로운 4·3기념의례의 대상자 선정은 여러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시기 사월제의 추모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념의례의 대상을 선정하고 있지 못했다. 4·3사건의 성격과 희생의 규모에 대해 분분한 가운데, 4·3사건시기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집단만을 상징할 뿐이었다. 이러한 희생자 규모에 대한 파악이 미진했던 것은 애초 학살 때부터 학살이 무작위로 이뤄진데다, 학살의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여러 오류들이 존재했었으며, 결정적으로는 국가가 이를 은폐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사월제 주체들은 정치투쟁 못지않게 4·3사건의 희생자 규모와 사건의 진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로 인해 1989년 제주4·3연구소가 창설하게 되었다.¹⁰¹⁾ 제주4·3연구소가 4·3사건의 실태와 희생자의 규모를 파악해 나가는 동안, 사월제의 주체들은 반미항쟁 선상에서 벌이던 4·3운동을 진상규명차원의 4·3운동으로 전환하였다.¹⁰²⁾ 그리고 그 결과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본격적인 4·3희생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사월제의 주체는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이하 사월제 공준위)’였다. 사월제 공준위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의 구성체였다. 사월제 공동체들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여 증가하였는데, <표3-1>에서 보듯 초반의

101) 제주4·3연구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4·3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102) 전 제충협 회장 오영훈의 증언

1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되었던 사월제 공준위는 1993년에 이르면서 20여 개의 단체로 확산되었다. 기존의 시민단체 외에 새롭게 창립된 시민단체들이 4·3추모제에 행동을 같이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종교단체 및 정당이 또한 사월제 공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초반의 구성원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한 문화패, 시민단체,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면, 후반의 구성원들은 사회유력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4·3사건의 담론투쟁 주체들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다른 사회운동과 궤를 같이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3-1> 사월제 공준위 구성원¹⁰³⁾

명칭	사월제 공준위 구성원
제1회 추모제 (사월제)	주최: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그림패 반쯤코지, 제주YWCA대학부, 청년부, 제주교사협의회, 제주사회연구소 준비위원회, 제주4·3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제주지역 총학생협의회, 제주지역 동아리연합회 협의회 후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2회 사월제	주최: 42주기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제주4·3연구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 노래모임 숨비소리, 8·15통일염원 범민족축전 우리 땅 밟기 대행진 참가동지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지역 총학생 협의회, 제주지역 동아리연합회 협의회 후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3회 사월제	-
제4회 사월제	4·3제주민중항쟁42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건), 제주지역 총학생협의회, 노래빛 사월,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년회 제주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4·3연구소
제5회 사월제	제주4·3항쟁45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공동대표 35명, 추모위원 216명, 자문위원 61명) 제주개발특별법철폐 및 민주화실천 범도민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제주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지역 총학생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지역노동상담소, 제주여민회, 노래빛 사월, 민주당 제주시 지구당,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건설준비위원회, 제주청년연합,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4·3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월제의 공준위의 구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볼 수 있는데, 대학생 집단과

103) 표는 본 연구자가 사월제의 자료를 모아 작성하였다. 제3회 대회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작성하지 못했다. 각 명칭들은 자료집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시민사회단체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두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문화운동단체와 일반 시민단체였다. 후반에 가서 종교 단체 및 노동운동단체들이 포함되었으나, 공동체의 기본적인 성격의 변화에는 영향이 없었다. 다만 이후 사월제가 추모제에서 예술제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들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담론투쟁을 전개해 나갔다.¹⁰⁴⁾

이들 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경험했으며, 그 속에서 운동의 방식을 습득한 세대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생운동을 거쳐 시민운동단체를 구성한 첫 세대들로서 5·18민주화운동과 학내자율화운동 등 여러 운동 경험을 습득한 세대들이었다. 이들 주체의 선경험은 사월제를 성립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나. 사월제의 형식과 구조

1) 사월제의 대상자

제주지역의 민주화세력은 4·3사건과 관련된 추모제를 벌이기로 했다. 1988년 추모제는 무산되었지만 1989년 제주지역에서 첫 추모제가 열렸으며, 이들의 추모 대상은 군경 및 우익유공자 등 토벌대 희생자를 제외한 무장대 및 민간인 희생자였다. 이로써 최초로 4·3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기념의례가 전개되었다. 이는 국가가 정한 4·3사건 기념대상자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공산폭동론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제시였다.

사월제가 처음 상정한 기념대상자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것은 4·3사건에 대한 피해상황이나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겨진 최초의 추모제 자료들을 보면 ‘서북청년단, 경찰응원대, 철도 경찰대’ 등에 의해 희생된 ‘30만 도민’, ‘수많은 4·3영령’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추해 본다면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4) 본 연구에서는 예술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예술제에 대한 부분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 희생자의 성격은 두 개의 시각이 혼재되어 있었다. 하나는 수난사적 맥락 속에 민간인 희생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른 하나는 항쟁사적 맥락 속에서 민간인 희생자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일본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 시작된 수난사적 역사 전개 속에서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에 의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학살당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다른 하나는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제국주의와 매국노들의 분단음모에 결연히 일어섰다 희생당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두 개의 시각은 혼재되어 있었는데, 정치사회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양자 중 하나의 시각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월제가 진행되는 동안은 후자의 시각이 강조되었지만, 사월제가 사라진 뒤 전자의 시각은 진상규명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강조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양자의 시각 기저에는 우리의 ‘선조(先祖)’라는 의식이 공통으로 들어 있었다. 이것은 유족이 아닐지라도 현재의 사월제 주체들을 비롯해 제주주민을 ‘후손’에 배치시키는 구조를 형성시켜,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당위적 주체가 사월제 주체들을 비롯해 제주 주민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후에 반공적 성격의 4·3유족회는 사월제 주체들이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인체 한다.’고 공격을 한 적이 있었다(4·3유족회, 1994). 이것은 사월제 속에 들어있는 선조와 후손의 맥락을 해체시켜 사월제 주체를 4·3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로 몰아감으로써, 오히려 사월제 주체가 4·3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90년부터 제주4·3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증언채록과 4·3사건에 대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월제 측은 일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추모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반대로 반공적 4·3유족회도 4·3사건의 유족들을 모으고 희생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그 희생자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시기 사월제의 기념대상은 그 범위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사월제를 통해 국가가 기념하는 4·3사건의 희생자와는 다른 희생자가 있었음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시초가 되었다.

2) 사월제의 시공간

4·3사건과 관련된 군경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기념일은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함께 기념되는 현충일이었다. 이것은 앞서 보았듯이 한국전쟁 개전일에 초점을 맞춰 아직도 전쟁 중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으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반대로 사월제는 처음으로 4월 3일에 맞춰, 민간인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까지 일어난 사건인데, 제주사람들은 무장봉기가 일어난 1948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4·3사건’ 혹은 ‘4·3사태’라고 불려왔다. 이러한 명칭이 국가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민간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월제 측은 제주 주민들이 부르던 ‘4·3’에 초점을 맞추고 매년 4월 3일에 추모제를 지냈다.

특히 사월제 주체들은 반제국주의와 자주적 국가운영에 대한 민중항쟁으로써 일어난 4월 3일의 봉기일에 초점을 맞춰 기념함으로써 4·3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발생시키고자 하였다. 즉, 미국은 여전히 제국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제국주의 성격의 지속으로 현재 제주도민들 역시 4·3사건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수입개방과 제주의 하와이형 개발은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권의 또 다른 제주학살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극복은 4·3사건의 항쟁 정신을 계승하여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추모제는 4월 3일에 4·3사건의 기념일을 배치함으로써 4·3사건의 항쟁적 성격을 보존하고자 했다.

이러한 항쟁적 성격의 보존은 주로 거리 정치를 통해 이뤄졌는데, 거리정치는 4·3사건의 항쟁적 성격과 그 계승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월제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 이 거리와 광장은 추모제의 중요한 공간이었다.

추모제는 전체적으로 집회라는 범주 안에서 가두시위와 추모제, 순례를 동반했는데, 가두시위는 거리에서, 추모제는 광장에서, 순례는 4·3사건의 현장에서 이뤄짐으로써 전체적으로 ‘거리-광장-4·3사건의 현장’이라는 큰 공간적 구성을 가지

고 있었다.¹⁰⁵⁾ 이러한 공간적 구성은 4·3기념의례의 공간을 전도적으로 구획하는 효과를 드러냈다.

거리는 대체로 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이용되었는데, 이 거리는 시민들의 핵심적 생활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구호와 깃발, 민중가요, 시위 등을 통해 4·3사건 진상규명을 외치는 일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4·3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관덕정광장과 탑동광장은 추모제의 주요 선호 공간이었다. 이 두 곳은 제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공간이었는데, 관덕정 광장은 민란의 집결지로서, 민란의 장두들이 효시되었던 곳으로 민중 저항의 상징적 성소였다.¹⁰⁶⁾ 반면 탑동광장은 제주도 관광 개발 정책과 이에 편승해 개발 이익을 독점해온 개발업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도시 개발 사업 중의 하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해 제주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화된 시민운동이 전개된 장소였다.¹⁰⁷⁾ 이러한 공간은 4·3사건의 항쟁적 정신을 중첩적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공간이자, 대중적 소통이 가능한 매개체였다.

거리와 광장은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산발적 집단들이 거리 시위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드는 최종 집결지는 광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리 시위 집단과 시민들의 소통이, 또한 거리 시위 집단들 간의 연대가 거리와 광장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달리 4·3사건의 현장들은 순례의 공간이자, 추모제를 연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발생하는 성지였다. 순례는 대체로 집단 학살터, 초토화되어 버린 마을,

105) 시위는 서울과 제주에서만 이뤄졌으며, 추모제는 일본·서울·제주에서, 순례는 학살의 현장이 있는 제주지역에서만 일어난 행사였다. 일본에서의 추모제는 동경과 대판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에서는 주로 대학가 등지에서 재경제주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사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재경제주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추모집회를 거행했다.

106) 관덕정 광장에서의 추모제는 국가 기구가 용인하지 않아 종종 무산되어서 시민회관이나, 대학 등에서 치러지곤 했다. 후에 추모제는 탑동광장으로 집중되었다.

107) 이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증가와 독점자본의 지배강화에 따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위기의식과 1987년 6월 항쟁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의 붕괴로 인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부만근(1998), 조성윤(1992)을 참조할 것.

피신처, 무장대 접전지, 희생자 매장지 등의 공간이 선호되었다. 이런 공간들에서 희생당한 자들은 추모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공간들은 상당부분 일제 강점기의 군사시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순례는 4·3사건이 단순히 무장대와 토벌대의 접전 가운데 주민희생이 일어난 것이라는 단선적 측면보다, 4·3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앞선 과거의 사건들과 이후 냉전과 지역분할 과정에서 섬이 겪었던 역사적, 공간적 특수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4·3사건의 인식을 국가적, 세계사적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사월제의 형식과 내용

사월제의 형식은 크게 가두시위-추모제-순례라는 형식적 측면을 보여왔다. 이러한 형식은 사월제 측과 4·3유족회 간의 합동위령제가 탄생하기 직전인 1994년까지 대체로 동일한 유형을 보여왔다. 이 가두시위-추모제-순례로 이뤄지는 형식적 구성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강력한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동력이 되어주었는데, 특히 가두시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욱 강력한 형식적 요소였다.¹⁰⁸⁾

가두시위는 구호와 민중가요, 항의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팔동작 등 상징적 행위와 언어를 통해 그들의 시위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때문에 진상규명운동의 유력한 동력자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두시위의 주체는 사월제 주체들이었는데, 핵심은 대학생 집단이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4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여왔는데, ‘전국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대협)’를 통해 전국적으로 ‘4·3민중항쟁계승’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4·3사건도 4·19혁명을 비롯해 총학생 발대식 및 투쟁선포식이 개최되는 4월에 일어났다는 공통의 시간적 관념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일어난 4·3관련 가두시위는 <표 3-2>와 같다.

<표 3-2> 사월제 추진 및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 집회¹⁰⁹⁾

108) 정호기(2003)는 집회 및 시위, 기념식 등을 의례 투쟁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109) 1988년 이후에서 1995년 사이의 신문자료들을 수집하여 집회의 수와 형태를 정리하였다. 이용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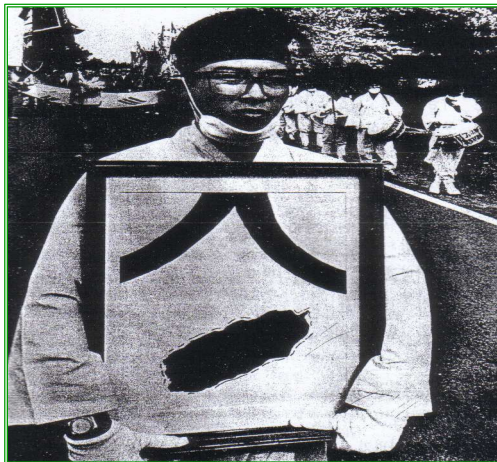
년도	날짜	집회 명칭	주최	규모	시행 장소
1988	4월 4일	[4·3사건 위령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	제주대총학생회	2백여 명	제주대
1989	4월 3일	[4·3자주항쟁계승 및 구국선열 위령추모행사]	제총협	1천여 명	제주대
1990	4월 3일	[4월 투쟁 선포식 및 4·3제주항쟁 기념식]	전국27개 대학	1만여 명	전국
	4월 3일	[4·3민중항쟁정신계승 및 반민중야합분쇄투쟁결의대회]	제주교대 총학생회	1백여 명	제주교육대
	4월 3일	[4·3진상규명과 민자당 분쇄를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	제주대 총학생회	5백여 명	제주대
1991	3월 31일	[총선투쟁 보고 대회 및 민자당 타도를 위한 4월 투쟁선포식]	제주대 총학생회	3백여 명	제주대
	4월 3일	[4·3추모제 원천봉쇄 규탄]	사월제공준위	-	제주시청
	4월 3일	[4·3민중항쟁 계승과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	제주교육대 총학생회	1천여 명	제주교육대
	4월 3일	[4·3항쟁 계승과 노태우 정권 퇴진]	제주대 총학생회	1천~1천5백여 명	제주대
	4월 3일	제주대 동맹휴업	제주대 학생회	-	제주대
	4월 3일	[4·3항쟁 계승 및 4월 구국투쟁]	전대협, 서총련 등 전국 25개 대학	1만여 명	전국
	4월3일	[4·3추모제]	재경제주학생소모임협의회	-	고려대
1992	4월2일	[4·3항쟁 추모 및 계승대회]	서울대, 한양대, 단국대 총학생회 등	-	전국
	4월 3일	[희생자 추모집회]	전국15대 대학	-	전국
	4월3일	[44주기 4·3자주항쟁 계승대회]	제주대 총학생회, 제주전문대, 한라전문대, 제주교대	7백여 명	제주대
	6월 10일	[제주도민 4·3진상규명을 위한 도민대회]	다량수굴4·3희생자대책위원회	3백여 명	제주교대
	4월 4일	[4·3자주항쟁계승 및 남북합의서 이행,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	제총협	2백여 명	중앙성당
1993	4월 2일	[45주기 4·3 4월제 선포-4·3제주민중항쟁 추모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내정간섭 반대를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	제총협	2백여 명	제주대
	4월 2일	[45주기 4·3항쟁 추모 및 청년아라 계승대회]	제주대 총학생회	3백여 명	제주대
	5월 18일	[4·3진상규명과 5·18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	제총협	4백여 명	답동광장
	9월 27일	[4·3진상규명 및 4·3특위 설치 촉구] 가두선전전	제총협	1백여 명	중앙로
	10월 25일	[4·3진상규명 국회청원 성사 결의대회]	제총협	-	답동광장
1994	4월 1	[4·3정신 계승과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진군대회]	제총협	3백여 명	관덕정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지역총학생협의회(이하 제총협)’ 소속 대학을 중심으로 4

는 제주신문(1988년 4월 4일자; 1989년 4월 4일자; 1990년 4월 3일자; 1991년 4월 4일자; 1993년 4월 3일자; 1994년 4월 1일자), 동아일보(1988년 4월 5일자; 1992년 4월 2일자; 1993년 4월 3일자), 한겨레신문(1989년 4월 4일자; 1990년 4월 4일자; 1992년 4월 4일자; 1992년 4월 5일자), 조선일보(1989년 4월 4일자), 서울신문(1990년 4월 4일자), 한라일보(1991년 4월 2일자; 1991년 4월 4일자; 1993년 4월 5일자; 1993년 5월 19일자; 1994년 4월 2일자), 제민일보(1991년 4월 1일자; 1991년 4월 3일자; 1991년 4월 4일자; 1992년 6월 11일자; 1993년 4월 2일자; 1993년 9월 27일자; 1993년 10월 25일자; 1994년 4월 2일자), 중앙일보(1992년 4월 3일자), 제주대신문(1995년 4월 5일자) 등이다. 실제 참여규모는 신문자료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당시 신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대학들이 각 대학에서 학내 집회를 가진 뒤, 각각 가두시위에 나섰다. 이 가두시위는 ‘4·3진상규명’에 대한 구호를 외침으로써 시위의 의도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었는데, 4·3사건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선전효과가 있었으며, 전국적인 대학집단의 가두시위는 4·3사건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차원의 문제로 옮겨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 3-1> 사월제의 거리 집회 및 추모제 광경



제주대 학생 등 제총협 학생들이 사월제 기간 동안 거리 집회에 나섰던 모습이다.



추모제에는 언제나 초감제라는 곳이 열렸는데, 정공철 심방이 초감제를 연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모제는 다시 크게 두 개의 형식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식전 행사격인 추모굿과 다른 하나는 본행사격인 진상규명(결의)대회였다. 추모굿은 대체로 초감제라는 형식을 띠었는데, 이는 유족들이 행하는 4·3관련 굿의 일부에서 차용한 것이었다.¹¹⁰⁾ <표 3-2>에 나타나는 해원굿(1991년), 열림굿(1992년), 추모굿(1993) 또한 초감제를 차용한 굿의 형태였다. 초감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4·3사건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세습무가 연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유족들을 모으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제주지역의 큰 심방의 등장은 4·3사건 희생자 유족들로 하여금 4·3사건

110) 추모제에서 초감제 방식의 의례는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가운데 현대적 변용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와 추모 위령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 형태는 차후 4·3예술제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 공공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이었다.¹¹¹⁾

이러한 절차의 도입은 당시 민주화 집단이 국가이데올로기를 주입하던 제도권 기념의례에 대한 대안적 의례로서 전통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던 것도 한 몫 했다. 굿의 등장은 4·3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후세대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는데, 굿의 사설은 앞선 세대의 경험을 후세대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했다.

<표 3-3> 사월제의 형식과 순서¹¹²⁾

의례명칭	형식	시행일자	장소	순서
제1회 추모제	추모제	1989. 4. 1 1989. 4. 3	제주 시민회관	○ 초간제 (수심방:안사인 중요무형문화재71호) ○ 41주기4·3추모제 및 범도민진상규명촉구대회 -1부 추모제 -2부 4·3진상규명 촉구대회
제2회 추모제	추모제	1990. 4. 3	제주교대	○ 4·3해원굿 ○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제안서발표 ○ 각계의 입장발표 ○ 결의문 낭독
제3회 추모제	추모제	1991. 4. 3 →4. 5	탐동광장 →송악산	○ 무산→유적지 순례(1991.4.5) 중 송악산 고사포 진지에서 추모제 거행
제4회 추모제	추모제	1992. 4. 3	탐동광장	○ 1부 분향, 열림굿(제문협) ○ 2부 4·3추모 노래공연(섬하나산하나, 노래빛 사월) ○ 3부 범도민 진상규명 촉구대회
제5회 추모제	추모제	1993. 4. 3	탐동광장	○ 1부 식전행사 -추모굿 -공동대표 및 각계인사 소개 ○ 2부 본행사 -국민의례 -4·3영령에 대한 의례 -공동대표, 추모위원, 각계인사, 유가족 대표 공동 분향 및 헌화 -경과보고 -추모사 낭독 공존위 유족 제주도의회 국회의원 한국총학생연합회 -추모시 낭독 -추모노래 -45주기 사월제를 맞는 우리의 입장 낭독 ○ 3부 참석자 분향 및 추모행진 -추모행진 코스: 탐동→동문로터리→관덕정 -추모행진 마감 집회:관덕정 추모노래 및 성명서 발표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미국에 보내는 공개 서한 유엔에 보내는 공개 서한

추모굿이 4·3사건에 대한 비극성을 들춰내는 의식이었다면 <표 3-3>에 나타나는 진상규명대회는 그 비극성을 축제성으로 전환하는 의식이었다. 진상규명대회

111) 이날 굿을 하기로 했던 ‘큰 심방’이 도피해버려서 심방수업을 받고 있던 문화운동가 출신 정공철이 굿을 연행했다.

112) 제주지역에서의 추모제와 형식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모아 표를 작성하였다.

는 4·3사건의 발발 과정을 18세기 조선사회에서부터 해방정국까지 이어졌던 제주 주민들의 항쟁을 줄거리로 엮어내면서, 그 결과 정부와 미국을 대상으로 한 반독재,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했다(사월제 공준위, 1989; 1990; 1991; 1992; 1993). 이러한 서사구조는 민중항쟁 계승을 다짐하는 구호와 함께 성명서나 결의문 등으로 제시되곤 했는데, 1992년 다량쉬굴이 발견된 이듬 해에는 그 여파로 유엔 및 미국정부, 한국정부 등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기도 했다.

시기적으로 구별해본다면 반제, 반미가 제시된 것은 1989년 추모제부터였다. 이때 사월제 공준위는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4·3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한국의 ‘반미’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1주기를 맞아 사월제 공준위에서는 ‘4·3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서’ “8·15해방과 더불어 한반도 민중의 열망을 무시하고 군인과 경찰에게 학살을 지시한 우리 등 뒤에 숨어 지시한 배후자”로 미국을 지목했다. 이때 4·3사건 희생자들의 죽음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 자주화의 싸움이기 때문에 4·3사건 진상규명은 민주화, 자주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반독재, 반미저항을 역설하였다. 1991년의 추모제에 이르면 4·3사건의 배경이었던 미국의 지배구조는 오늘날 제주개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구성해내지만, 국가 탄압으로 제주에서의 추모제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4·3사건의 원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범도민적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1993년의 추모제는 다량쉬굴의 발견으로 이전 추모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자주적 독립국가 수립과 민족통일을 이루려 했던 저항운동’을 강조했다. 이때 사월제 공준위는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앙정부, 미국 등을 향한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송부함으로써 두 개의 전략을 택하였는데, 그것은 책임론과 투쟁론이었다. 정부와 미국을 향해서는 책임론을, 제주 주민과 지방의회 등에는 투쟁론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했다.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완곡한 표현을 써가며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와 피해보상, 위령탑의 건립, 4·3사건의 재해석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지만 정부 및 미국에 대한 공개서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표현을 써가며 4·3사건

이 공산폭동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오히려 4·3사건은 국가기구인 경찰 및 서북청년단의 횡포로 인한 대규모 학살, 한국전쟁과정에서의 예비검속으로 인한 학살, 독재정권의 기억의 탄압 등을 고발하며 국가의 잘못을 시인할 것과 더 나아가 피해자의 한 축이었던 무장대 또한 이런 국가 기구의 횡포에 의한 피해자의 하나로 해석해내고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추모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4·3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은폐하고 대량학살의 원인을 공산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추모제의 내용들은 앞서 보았던 충혼위령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추모제의 마무리는 순례로 종결되었는데, 순례는 반드시 4월 3일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 순례는 사월제 시작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4·3사건의 학살 현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순례는 기획될 수 없었다. 4·3사건에 대한 첫 순례는 사월제가 아닌 제주4·3연구소에 의해 1989년 8월 14일과 15일에 처음으로 유적지 순례를 기획하면서이다. 사월제에서 순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제3회 추모제가 경찰기구의 탄압으로 무산되면서 시작되었다.¹¹³⁾ <표 3-4>에서 보이듯 그 이전에는 한라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추모제를 종결지었다. 그런데 1991년 4월 3일에 추모제를 지내지 못한 4월제 공준위가 4월 5일에 4·3유적지 순례를 감행하였고, 대정읍 송악산 고산포 진지에 이르러서 힘들게 조출한 추모제를 거행하였다. 학살의 현장에서 지낸 추모제로 인해 순례는 사월제의 중요한 추모의례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갔으며,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도함으로써 4·3사건

113) 추모제가 무산된 날 사월제 공준위 대표 30인은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4·3추모제 원천봉쇄 규탄대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뒤 시민, 학생 2천여 명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였다(한라일보 1991년 4월 2일자; 한라일보 4월4일자; 제민일보 1991년 4월 4일자).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발사와 연행으로 시위대 중 2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상반된 두 개의 의례에서 사람들은 명백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기억투쟁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후 사월제 공준위는 4월 5일 4·3항쟁 유적지 순례 행사 중 대정읍 송악산 고산포진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열었다. 그리고 나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백조일 손지묘에서도 제를 지냈다. 이 추모제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온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이 추모제 행사에 경찰이 동행했는데, 4월 3일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았음을 의식하여 충돌은 없었다.

의 잔학상과 비극성은 실제적인 것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유적지는 학살터나 매장지, 초토화되어 버린 마을 터 등이어서 이곳은 사월제 주체들에게 4·3사건의 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

<표 3-4> 사월제 기간의 순례¹¹⁴⁾

명칭		시행일자	순례 장소	세부 장소
제1회 추모제	제1회추모 한라산 등반대회	1989.	한라산	-
제2회 추모제	제2회추모 한라산 등반대회	1990.4.8	한라산	-
제3회 추모제	유적지 순례 (제1회)	1991.4.5	송악산 일대	섯알오름-고사포진지-송악산(추모제 거행)-백조일손지묘
제4회 추모제	유적지 순례 (제2회)	1992.4.5	동광리	출정식-동광리 헛묘-큰 넓케-도노리 오름
제5회 추모제	유적지순례	1993.4. 4	다량쉬굴 일대	순례단 발대식-다량췌굴 도착-다량쉬굴 희생자 추모제-다량쉬굴 현장 사진전-다량쉬 마을 순례-다량쉬 오름 등반-해단식

이 시기 4·3사건과 관련된 담론은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 질서와 가치규범이 지배력을 잃은 대신, 주변부적, 반문화적, 지역적 담론들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은 역사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갔다 (Turkle, 1997).

2. 합동위령제의 등장

가. 합동위령제의 형성과정

1) 반공적 4·3유족회의 등장

1987년부터 제주, 서울, 일본 등지에서 일어난 4·3사건의 진상규명운동과 함께

114)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하였다.

4·3사건이 민중항쟁임을 선언하는 새로운 기념의례들로 반공적 성격의 충혼위령제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주체들은 국가만은 아니었다. 무장대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및 우익 희생자 유족들 또한 위기로 받아들였다.

1988년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반공희생자 유족회’는 그런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 이들은 이후 1990년 6월에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이하 4·3유족회)’로 개칭하였는데,¹¹⁵⁾ 4·3사건의 논의 중심이 지역사회 권력을 좌우했던 공안기관, 행정당국에서 시민사회, 언론, 지방의회 등으로 이동하면서 그 명칭에서 ‘반공’을 삭제하게 되었다. 박찬식(2008)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반공이념 일변도의 극우세력 중심의 지역권력이 약화되었거나 중층화되는 상징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동안 이들은 반공적 성격을 견지하였다.

이들의 태동은 제주지역 민주화집단들이 4·3사건이 민중항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다. 초기 반공적 4·3유족회가 건립될 당시 발표한 취지문을 보면 그 것을 알 수 있다.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열기에 편승하여 일부 몰지각한 세대들은 4·3사건을 왜곡, 건국혼란기를 틈탄 적화를 위한 남로당의 폭동지령으로 선량한 제주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이른바 인민투쟁을 비정파 헌정에 항거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정부운동, 즉 민중항쟁으로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1만 2천여 유족은 물론 50만 도민은 통한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 유족들은 망각과 수수방관으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며 가신님들을 욕되게 하는 현실을 보다 못해 지난 88년 10월 공비에게 희생된 일부 유족들로 민간인 유족회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사건 주범인 남로당 과격분자들의 죄는 천추에 남을 일이지만 사상도 이념도 없이 살기 위해 방황하다 희생된 분들은 건국도상에서 억울하게 가셨기에 건국의 주춧돌이 되었다.¹¹⁶⁾

115) 4·3유족회는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반공희생자 유족회’에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이후 제주도4·3사건 희생자 유족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으로 개칭해 현재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로 그 명칭의 변화와 함께 성격도 변화해 왔다.

116) 4·3유족회의 당시 건립취지문이다.

윗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시기 4·3유족회는 4·3사건이 공산폭동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역 민주화 집단들이 4·3사건을 왜곡하여 민중항쟁으로 호도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 현실을 보다 못해 무장대에게 희생된 유족들로 유족회가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목적은 당시 4·3유족회의 정관에도 드러났는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좌경세력에 대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이 실천사항으로 내놓은 것이 4·3사건과 관련된 ‘위령탑을 건립하고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을 비롯해 4·3사건에 대한 왜곡편향보도에 대해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4·3유족회, 1991: 24).

이 유족회는 1990년에 ‘조직강화 대회’ 등을 통해 1,300명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기 4·3유족회의 핵심 임원은 무장대에 희생당한 희생자의 유족들이었는데, 이러한 유족회의 성격이 기념의례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발생초기인 1991년 3월부터 제주도 사회단체로 등록(제5호)하고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들은 1991년 4월 3일에 ‘제1회 4·3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하였다.¹¹⁷⁾ 1988년 10월 29일에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지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4월 3일이란 시간적 전환을 꾀한 것은 4·3사건의 상징적 시간이라 할 수 있는 4월 3일에 사월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설적이게도 사월제 주체들이 4월 3일의 무장봉기와 민중항쟁을 기념하고자 했다면 반공 유족회에게 4월 3일은 ‘건국도상의 희생’¹¹⁸⁾을 가져온 근원이자, ‘공산폭동을 진압’¹¹⁹⁾하기 시작한 ‘개전’을 기념하였던 것이다. 만일 반공유족회의 기념일이 4·3사건이 마무리되던 1954년 9월이었다면 이것은 새로운 출발과 이어져 있겠지만, 건국 이전과 개전일(開戰日)을 기념하는 것은 여전히 이들 또한 군경유공자 못지않게 희생

117) 이후 이 4·3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사월제 공준위의 추모제가 합쳐져 1994년 제1회 제주도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해오다. 2000년부터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로 개칭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로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명칭과 성격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 있었지만, 현재의 합동위령제가 1994년 합동위령제에서 기원을 따름에 따라 1994년 4·3유족회와 사월제 간 공동으로 치러진 1994년 위령제부터 합동위령제로 명명하고자 한다.

118) 4·3유족회(1990)의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119) 4·3유족회(1990)의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과 동시에 공산폭동에 대한 인식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무장대 및 토벌대 등에 희생된 1만 2천여 명령들을 기념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 이들 유족들이 전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4·3유족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대략 320명이었는데, 4·3유족회는 4·3사건의 유족이라는 배경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적 권리를 사월제 주체들에게 뺏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다소의 차이를 제외하고 민간인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두 세력이 전혀 다른 기념의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4·3사건 및 해결의 명분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잠재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등장은 각 집단의 명분을 지키는데 중요한 자원이었다.

반공적 성격의 4·3유족회와 사월제 공준위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합동위령제와 추모제를 지냈다. 합동위령제는 충혼위령제의 형식을 빼닮아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헌화 및 분향(4·3영령에 대한 묵념)-종교의식(대한 불교 조계종 법화사)-추념사-추모사-헌시낭독-분향-천도-폐식’ 등의 순서로 이뤄졌는데,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과 더불어 4·3영령에 대한 묵념은 이 합동위령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들은 사월제의 주체들과 사월제에 대해서 ‘90년대를 전후해서 4·3사건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의 무지의 소치’로 평가하였다.¹²⁰⁾ 첫 위령제의 추념사에서 당시 4·3유족회의 회장은 ‘엄연한 공산화 폭동 사건인데도 천만부당한 “민중봉기니, 민주항쟁이니” 라고 뒤집어 말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고 있는 데도 강 건너 불 보듯 어느 누구도 정론을 말하려는 자’ 없다고 항변하면서 반공적 성격의 유족회의 탄생과 위령제가 거행될 수밖에 없음을 당위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이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4·3사건의 긴장관계가 민주화집단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만나면서 위기의식을 느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위령사업의 전개

120) 4·3유족회(1990)의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1992년 지방자치제가 한국사회에서 다시 실시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4·3사건의 문제 해결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오랫동안 국가에 의한 억압으로 크게 제도권에 대한 희망적 기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89년 제주지역의 민주화집단이 4·3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정부의 일정 역할을 주문했을 때에도 당시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군보 지사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4·3에 관한 각기 다른 주장은 제주발전에 이롭지 못하다.”면서 “각계각층의 자료를 수집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을 뿐이었다.

1992년 출범한 제주도의회는 당시 가열되고 있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주민반대운동과 4·3사건 진상규명운동 및 기념의례들을 둘러싼 제주사회의 주민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다. 또한 그 해 다량취굴의 유해 발견은 4·3진상규명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로써 1993년 제4대 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4·3특위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1994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6년 동안 4·3희생자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받아 총 12,243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상황을 작성할 수 있었다(4·3사건위원회, 2003: 368).

여전히 많은 유족들이 연좌제와 국가 탄압의 경험 속에서 신고를 미뤘음에도 상당수의 희생자가 신고된 점은 변화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지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이전과 달리 희생자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에 이르도록 해주었다. 이 점은 4·3진상규명운동에 큰 동력이 되었으며, 합동위령제의 대상자 규정에도 큰 변수가 되었다.

이 시기 제주도의회는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가 각기 치르던 기념의례를 합쳐 합동위령제로 수합하게 되었다.¹²¹⁾ 그러나 수합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두

121) 실제 제주도의회 중재를 먼저 건의한 것은 사월제 공준위 측이었다. 그러나 4·3유족회가 이미 제주도로부터 받아놓은 예산 때문에 거부함으로써 1993년 합동위령제는 실패하였지만, 1994년 합동위령제는 성사되었다.

집단 간에는 논쟁이 일어나, 합동위령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제주도의회는 1994년 <표 3-5>의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합동위령제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에 의해 희생자 접수가 이뤄졌으며, 기념사업이 지방정부 주도로 전개될 수 있었다. 4·3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도적 차원에서 한시적 조례였지만, 4·3위령사업의 공식화 및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의미에서 4·3특별법이 제정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기념사업의 인적, 물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은 많은 유족들을 모으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표 3-5>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항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2. 위령제 및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및 정부와의 절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40인,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40인, 제주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20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명, 감사 2인을 둔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령사업 관련 경비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4·3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이 국가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도기적 단계였으며, 실상 지방의회가 존재했던 시기마다 4·3사건의 진상조사와 규명운동이 일어났던 점은 4·3사건의 문제 해결에서 지방자치제가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의 합의사항

1992년 다량취굴의 유해 발굴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면서 4·3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초래했다. 이 다량취굴의 실체는 그 간의 이념논쟁을 불식시키고, 진실복원의 계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 문제는 4·3사건 관련 단체들을 압박하였는데, 양분되어 지내고 있던 기념의례를 합칠 것을 제안하는 온정주의가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었다.

이에 1993년 사월제 공준위는 3월 12일에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4·3관련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합동위령제를 지낼 것을 제주도의회와 4·3유족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시간과 예산의 형편상 당해년에 주관하기 어렵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또한 3월 16일에는 유족회도 합동위령제를 공동으로 치루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사월제 공준위는 다음날인 3월 17일에 합동위령제 성사를 재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3월 19일 4·3유족회에서는 사월제공준위가 하는 사월제 행사 모두를 중단하면 합동위령제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제안을 보냈다. 3월 25일 제주도의회의 중재로 사월제 공준위와 유족회 간의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동위령제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합동위령제는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위령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500~70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을 중재한 것은 제주도의회였는데, 제주도의회는 양자의 4·3 기념의례를 중재하고 ‘합동위령제’를 성사시켰다. 이때 1994년 합동위령제를 위해 1994년 3월 15일에 4·3특위위원(위원장: 김영훈)을 비롯해 4·3유족회(대표: 김병언), 4·3공준위(대표: 고창훈)가 모여 합의된 사항을 도출하였는데, 명칭과 구성원수 등 크게 4가지였다.¹²²⁾

<1994년 합의사항¹²³⁾>

1. 금년도 4월 3일 행사의 명칭은 ‘제46주기 제주4·3희생자 위령제’라고 한다.
2. 주최는 ‘제46주기 제주4·3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3. 봉행위원회 기획단은 6인으로 하여 유족회 3인과 공준위 3인으로 하며 공동계획 및 집행계

122) 이 합의사항 외에 4·3유족회는 사월제가 연행하던 모든 행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는데, 당시 설립된 제주민예총은 반발하며 독자적인 4·3예술제를 치루었다.

123) 이 합의사항은 당시 합동위령제 자료집에 게재되었다.

획을 수립한다. 단 위원장은 유족회 회장으로 한다.

4. 기타 나머지 사항은 봉행위원회 기획단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최초의 합동위령제에 누군가 무장대의 책임자였던 이덕구의 이름을 종이 위패에 적어 넣은 것이 문제가 되어 1995년 타협안에는 ‘도민정서를 고려하여 ‘도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인사들을 배제’하는 논쟁을 시작으로 ‘공산폭동’과 ‘민중항쟁’에 대한 성격논쟁이 다시 가열되었다. 그리고 ‘극단적인 용어(폭동, 항쟁)’를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체 하에 9가지 사항에 대해서 43유족회와 사월제 공준위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때 제주도의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1995년의 타협안은 1996년과 1997년 타협안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후 유족회의 성격 변화와 함께 타협안은 1995년보다 좀 더 유연한 상태를 보여주며 ‘도민에게 혐오감 주는 인사’에서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로 어투가 바뀌기도 했다.

<1995년의 합의사항¹²⁴⁾>

1. 행사 명칭: 제주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위령제
2. 행사의 대표: 제주도 43사건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예: 제주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김병인)
3. 봉행위원회 구성: 양측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4. 봉행위 준비위원회: 기획, 총무,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인원구성은 두 단체에서 각 3인씩 6명으로 한다.
5. 96년도부터 이 행사를 범도민적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 43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원하는 도내 사회단체를 영입하기로 한다.
6. 모든 문서에는 공식 명칭만을 사용하고 약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위령제시 봉행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주제사], 기획위원 1인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8. 43으로 인해 사망했으나 도민의 정서를 고려 도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사료되는 인사는 본 위령대상에 제외한다.
9. 안내는 두 단체에 동수의 인원을 차출 행사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러한 타협안의 존재는 합동위령제의 기념대상과 기념형식, 기념주체 구성에

124) 1995년 합동위령제 자료집에 실려 있는 것을 재인용하였다.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사실 유족 내부의 갈등도 아닌 비유족과 유족 간의 이러한 대결은 당연히 민주화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타협안의 존재로 민주화집단은 ‘항쟁’의 담론을 드러내는 것을 일부 포기해야 했으며 일정 부분 유족이 원하는 합동위령제를 용인해야 했다. 국민의례 등 일부 절차를 놓고 서로 갈등했지만, 명칭과 형식에서 대부분 4·3유족회의 이전 합동위령제 형식을 따름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합동위령제에 사월제가 포섭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담론 집단 전부가 이러한 ‘합의사항’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4·3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기념의례 집단 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매 합동위령제 시기마다 이 다양한 스펙트럼은 결국 갈등하는 담론들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합동위령제 내에서 투쟁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994년 처음으로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 사이에 열린 합동위령제에서 안내 책자에 무장대의 책임자였던 이덕구와 조몽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4·3유족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족회장이 사퇴하게 되었다.

<김병언 4·3유족회장의 사퇴 성명서>

지난 4월 3일 위령제 봉행시 안내 팜플렛에 우리 부모, 형제들의 희생에 빌미를 제공한 후 혼자 살아남기 위해 탈출하려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이덕구와 그의 줄개들, 그리고 4·3을 도발시킨 후 제주도에 인민공화국 수립이 불가능함을 인식, 내륙지방으로 탈출, 행상 도중 체포되어 형을 받고 출옥, 20년 전에 병사한 조몽구 등이 등재된 사실에 대해 2천 5백여 회원의 집결체인 4·3유족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여 회장직을 사임한다.¹²⁵⁾

4월 15일에 이르면 새로운 유족회 회장 대행은 ‘4·3희생자위령제를 공동 봉행한 우리들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4·3사건은 공산폭동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의회와 4·3단체 등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합동위령제의 주도사에서 “4·3을 왜곡된 역사”로 표현한 제주도의회의장을 비롯해 4·3특

125) 제주신문, 1994년 4월 14일자에서 재인용하였다.

별위원회 위원장의 관음사 천도제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고, 천주교 제주교구청과 사월제 공준위 측에 대해서는 위령제를 악용하거나 왜곡시켰다며 항의했다.

이덕구와 조몽구의 명단 기재로 드러난 합동위령제의 갈등은 사월제 공준위에 의해서는 합동위령제 준비 과정상의 실수로, 4·3유족회에서는 고의성이 있는 의도된 계획으로 평가내리면서 대치하게 되었다.¹²⁶⁾ 이로 인해 4·3유족회는 사월제 공준위가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업자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명단 문제로 시작된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 사이의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4·3유족회는 명단만이 아니라 합동위령제 장소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불만은 사월제 공준위가 ‘위령제장 내 만장게시 금지’, ‘특정 단체 거론 금지’ 등의 약속을 어기고 마치 재야의 시위장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위령제는 제사이고 제주(祭主)가 있기 마련이므로 합동위령제 주관이 사월제 공준위에서 4·3유족회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⁷⁾ 이들은 1994년의 합동위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함께 봉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타협안에 폭동이나 항쟁이란 두 단어를 배제하기로 합의하고 합동위령제가 성사되었지만, 다시 합동위령제 준비위원이었던 유족회 사

126) 사월제 공준위는 1994년 4월 29일 ‘제46주기 제주4·3희생자 봉행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시간상의 촉박 등으로 명단 등제에 대한 원칙 논의의 부재, 둘째는 예산문제 처리에 대한 원칙 문제에 상당 시간 소모, 셋째는 도지사의 원고가 늦게 도착한 부분, 넷째 시간 제약으로 인한 업무확인의 미흡 등이었다. 이 모든 기저에는 ‘시간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는 맥락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념대상자 선정 문제는 도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임을 언급함으로써, 기념대상자 문제자 단순히 반공적 성격의 4·3유족회 결단만을 따를 수 없음을 내비쳤다(고성만, 2005에서 재인용). 반면 4·3유족회는 1994년 5월 30일에 ‘94년 4월 29일 사월제 공준위의 제46주기 제주4·3희생자 봉행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4·3유족회는 이덕구와 조몽구가 들어 있는 명단은 제주4·3연구소를 통해 고의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월제 공준위 측 공동대표 중에는 유족이 한 사람도 없음을 들먹이며, 유족이 아니면서 유족인 체 해서 4·3유족회를 왜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3유족회, 1994).

127) 제주도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1995년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무국장이 3월 30일자 지방 일간지에 ‘4·3사건과 대만 2·28사건은 흡사한가’란 기고에서 “4·3은 공산폭동”이란 주장을 하면서 합동위령제에 내의 담론적 갈등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1996년 4월 4일에는 ‘제주 청년단체 협의회’와 ‘제주지역 총학생 협의회(이하 제총협)’ 주최로 열린 ‘4·3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에게 전달된 전단지에는 ‘탄압이면 항쟁이다’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4·3유족회와 갈등했다. 제총협은 “4·3운동을 유족회와의 관계 속에서만 사고하고 매몰되는 것은 4·3운동의 영역을 넓히는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¹²⁸⁾ 며 사월제 공준위와 차별화된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런 초기의 합의과정은 담론투쟁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기념의례가 합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4·3에 대한 평가와 담론을 선택하고 배제해 나가는 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은 1997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존속되다가 사라졌는데, 유족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산폭동론을 주장할 정치사회적 배경이 사라졌으며, 사월제 공준위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민주화 세력의 승리였기에 더 이상 합의안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기념의례에서 나타나는 담론 투쟁도 결국 주체를 넘어선 정치사회적 지형의 변화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4)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의 구성

합동위령제는 매년 위령제를 봉행하는 봉행위원회를 구성해 왔는데, 매년 유족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방정부 등이 참여해 왔다. 최초의 합동위령제의 봉행위원회는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 간에 구성되어졌다. 이들은 양분된 위령제를 하나로 합치고자 네 번에 걸친 합의 모임을 가져왔으며, 동수의 인원으로서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합동위령제를 봉행해왔다.

합동위령제의 봉행위원회 조직은 봉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유족회 및 민주화 집

128) 제8기 제주지역 총학생협의회의 입장은 고성만(2003)에서 재인용하였다.

단, 지방정부 등의 성격 변화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보여왔다. 첫 번째 변화는 1994년 제주민예총의 탄생이었다. 민주화집단과 4·3유족회 간의 합동위령제가 성립됐던 1994년에 이르면 사월제 공준위 구성원 중 상당수가 제주민예총의 4·3 예술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합동위령제는 4·3유족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형태였으며, 4·3문화운동의 한 차원으로 이뤄지던 추모제와 같은 의례의 형식적 구성이 아니어서 민주화세력의 상당수는 예술제에 주력하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합동위령제 성사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는 진상규명의 분위기 속에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다수의 유족들이 유족회로 몰려들고,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반공유족 인사 중심이었던 4·3유족회가 1996년을 기점으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로 유족회의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전체 봉행위원회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합동위령제의 담론 변화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4·3특별법의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토벌대에 희생된 유족들은 새로운 유족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뿜어냈는데, 재경제주4·3유족회를 비롯해 재일본4·3유족회가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 구성되어졌으며, 사건별로도 각종 유족회가 구성되어 제주4·3행방불명인 유족회, 백조일손 유족회, 7·7만병디 유족회, 한국전쟁 시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 등 수많은 유족회들이 만들어졌다.

세 번째 변화는 1997년 민주정권의 교체와 1998년 4·3발발 50주년이라는 상징이 중첩되면서 이 시기를 계기로 더 이상 민주화 세력과 4·3유족회 간의 합의 사항이 구성되지 않았다. 특히 이때 학술문화 및 위령·기념사업추진위가 구성되고, 거기에 대부분의 민주화 진영의 인사들이 투입되면서, 합동위령제에서 민주화집단은 점점 그 역할이 다른 분야로 옮겨갔다.

네 번째 변화는 지방정부의 등장이었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되고, 1999년 4·3특별법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는 합동위령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봉행위원회 등을 제주도지사가 지명하는 형태로 가져가더니 급기야 2001년부터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제주도지사가 봉행위원장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합동위령제를 주도하는 세력에 따라 합동위령제의 봉행위원회는 <표 3-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준비위원회에서 봉행위원회, 그리고 다시 봉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상존하는 형태로 바뀌어나갔다. 또한 주체의 성격 변화는 반공

적 성향의 4·3유족회와 민주화 진영 양대 주체에서 중립적 성향의 4·3유족회와 민주화 진영, 그리고 50주년을 기점으로 도지사가 준비위원회를 지목하는 상황으로 나가면서 우익성향의 지역 권력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점 민간주도에서 관민 주도 형태로 나가고 있으며 민의 성격은 우익 성향의 유족에서부터 민주화집단, 지역 권력가 등 다양한 세력이 상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기념의례에서 담론투쟁이 복잡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결과 담론은 모든 주체들을 아우르는 추상적 담론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져 갔다.

<표 3-6>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의 특징¹²⁹⁾

시기	봉행위원회	전체 위원수	위원회의 특징	기타
1994년(46주기)	기획단(6인) 의장단-김병언, 고창훈 총무위원-양영호, 이용중 홍보위원-박서동, 이영운	78	4·3유족회(반공성향) 민주화 진영 동수	합의사항 유
1995년(47주년)	준비위원회 기획위원-김병언, 고상호 총무위원-박서동, 이아성 홍보위원-강창근, 김태완	79	4·3유족회(반공성향) 민주화 진영 동수	합의사항 유
1996년(48주년)	준비위원회 기획위원-오선범, 강창일 총무위원-양영호, 강남규 홍보위원-김평담, 고상호	56	4·3유족회 민주화 진영 반반	합의사항 유
1997년(49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박창욱 기획위원-양영호, 양동윤 총무위원-김두연, 강남규 홍보위원-고윤권, 고상호	56	4·3유족회 민주화 진영	합의사항 유
1998년(5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조승옥 기획위원-박창욱, 송원화, 김두연 총무위원-고승중, 황승삼, 고앵자 홍보위원-양중해, 현학순, 조명철	131	우익활동 인사 4·3유족회 지역권력가	도지사가 준 비위 지명
1999년(51주년)	고문-김동익, 김형옥, 김황수, 송봉규, 이군보 봉행위원회 위원장-조승옥 부위원장-고승중, 박창욱 준비위원-김두연, 양영호, 양동윤, 임문철, 김지유, 김상철	100	우익활동 인사 4·3유족회(우익+중립) 지역권력가 민주화진영	

* 이름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 대표

5) 4·3특별법 투쟁

4·3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초기 발언은 1989년 10월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제

129) 위의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하였다.

주를 방문해 ‘4·3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발언은 당시 국가나 지방정부의 4·3사건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나타나는 4·3사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계기였다.¹³⁰⁾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투쟁은 사월제가 형성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사월제 주체들은 4·3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법적 투쟁을 통해 4·3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것은 1995년 광주특별법의 제정과 이후의 후속 조치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의 문제해결과 5월운동이 제도화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1997년에 이르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로 나선 김대중 후보가 다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제주4·3사건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제주도4·3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런 움직임은 제주 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4·3사건 50주년 1년 전인 1997년에 ‘제주4·3 50주년 기념사업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 김중배, 김찬국, 정윤희)’가 꾸려져, 4·3유족회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양금석, 임문철, 김영훈)’ 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의 구심점 역

130) 김대중 대통령은 1987년 11월 30일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당시 평민당 후보로 제주 유세에 나서서 처음으로 4·3관련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4·3사건을 이슈화한 것으로 이후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의회 선거 때마다 제주지역에서는 정치인들의 단골 이슈가 된 4·3공약의 시발점이었다(김종민, 1999:345).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 1989년 10월 22일 평민당 제주도당 결성대회, 1990년 7월 22일 제주방문,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주유세 때, 1994년 4월 2일 제주대 교수협의회 초청강연 때, 1997년 9월 12일 「제민일보」의 대선 후보 인터뷰 때, 1997년 10월 13일 「한겨레신문」 대선 후보 인터뷰 때, 1997년 10월 31일 제주호남 대통령선거 TV토론 때, 1997년 11월 24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제주지역 대선 공약 때, 1998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창간 10주년 특별 인터뷰 때, 1998년 9월 14일 제주MBC 창사특집 특별 대담 때, 1998년 9월 25일 전국체전 참석차 제주 방문 때 등 지속적으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서 언급해 왔다.

할을 하였다.

1999년 10월이 되자 제주도내·외 24개 관련 단체들이 결집하여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9년은 천년의 마지막 해라는 상징적 의미와 15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정치적 의미가 중첩된 해였다. 연대회의는 상경투쟁을 비롯하여 서명운동 등 4·3특별법 제정 운동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12월 말 제15대 국회 폐회 전에 4·3특별법 제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났는데,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국 184개 시민단체 694명의 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4·3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갔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기 조성해 놓은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기회를 놓치면 4·3특별법 및 4·3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더해져 1990년대 말은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기념의례에 반영이 되어 나타났으며, 이전의 담론투쟁은 법투쟁으로 모아지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4·3사건을 양민학살로 수합해 나갔다. 그리고 1999년 완벽하지는 않지만, 12월 16일 4·3특별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4·3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념의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나. 합동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1) 합동위령제의 대상자

1994년 최초로 좌우 논쟁을 봉합한 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기념의례로써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합동위령제의 대상자는 2월 29일까지 제주도의회에 신고·접수된 희생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발발 이후 공공 기관에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하루 만에 피해상황을 파악했던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은 것은 1994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신고 접수가 처음이었다.

1960년 국회 양민학살 신고처 접수는 총 1,259건으로 인명피해는 1,457명으로 접수되었다. 1994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29일 동안 제주도의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수는 <표 3-7>에서 볼 수 있듯 총 12,243명으로 제주 전 지역에 걸쳐 다수의 희생자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전체 희생자 중 남성이 7-80%에 해당하였다. 특히 2-30대 연령이 주요 희생자였음을 보여주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는 토벌대로 전체 신고의 84%에 해당하는 10,277건이었다. 한편으로 무장대에 의한 가해는 1,353건으로 접수되었다. 몇 차례의 4·3의 희생자에 대한 접수를 통해 보여준 것은 대부분의 희생에 대한 주요 가해자는 토벌대였으며, 무장대 또한 가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냈다.¹³¹⁾ 그 외로 자살 혹은 정체불명으로 인한 희생 등도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강경진압작전 진행 전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집중적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차후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나타났다.

<표 3-7> 합동위령제의 기념대상자¹³²⁾

시기	제주시	서귀포시	구 북제주군	구 남제주군	도외지역	신고접수자수 (총 신위 수)
1994년(46주년)	1,454	1,077	4,375	2,083	-	8,989
1995년(47주년)	1,431	1,076	4,680	2,108	-	9,295
1996년(48주년)	1,431	1,076	4,680	2,108	-	9,295
1997년(49주년)	3,187	1,099	4,418	3,058	-	11,762
1998년(50주년)	3,223	1,103	4,448	3,100	-	11,874
1999년(51주년)	3,384	1,197	4,523	3,133	6	12,243

합동위령제가 시작됐던 1994년 4월 3일의 기념대상자는 대개 이 기간 신고된 8,989명이었다. 희생자 신고 접수가 2월 7일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2~3월 동안 희생자에 대한 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때 참여한 유족들은 5천여 명 이상이 되었다. 이것은 이전 4·3유족회나 사월제의 각 기념의례에서 참여했던 유족수를 훨씬 넘기는 대규모의 참여였다. 이런 참여규모의 확대에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희생자 신고접수가 크

131) 토벌대의 범주에는 경찰, 군인, 서청, 자경대, 응원대, 민보단 등이 포함되었다. 무장대의 범주에는 무장대, 유격대, 자위대, 인민군, 폭도, 공비, 괴한 등이 포함되었다(4·3사건위원회, 2003: 371).

132)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하였다. 수치는 제주도의회에 신고되었던 희생자이다.

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날 합동위령제 행사장에 ‘4·3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였는데, 1천매가 넘는 피해신고서가 당일 배부되었다.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합동위령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보고 피해신고를 결정하려고 탐색하러 나왔던 유족들이 많았다는 증거였다. 이는 4·3사건이라는 원초적 사건보다 4·3사건 이후 유족들이 어떻게 탄압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¹³³⁾

초기 합동위령제의 기념대상은 특별히 구분이 없었다. 다만 군경 및 우익 유공자 등 토벌대 희생자들을 제외한 민간인 희생자라는 측면에서 암묵적인 합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앞서보았던 이덕구와 조몽구의 명단 작성으로 제1회 합동위령제 이후 기념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합동위령제에서 누구를 기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공동주체인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의 기념대상이 합치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희생자에 대한 성격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반공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던 4·3유족회는 무장대 희생자들을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월제 공준위는 4·3사건의 희생자와 기념대상에 대해서는 범도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실상 4·3유족회 내부에는 무장대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과 우익 희생자 유족들,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들 중 무장대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과 우익 희생자 유족들이 유족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예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합동위령제에서 제단 위의 위패를 읍면별로 나누어 나열하다 보니, 한 마을 안에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와 토벌대였던 우익 희생자가 앞뒤로 위패가 놓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성격의 희생자 유족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4·3사건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인데다, 합의된 담론이나 희생자에 대한 성격 고찰도 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한데 뭉뚱그려 판단한 상황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때부터 합동위령제는 누구를 기념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붙었으며, 결국

133) 합동위령제 때 통곡하는 유족들이 많았는데, 당시 체민일보(1994년 4월 4일자)에는 그 중 강경생(당시 56, 경기도 김포시)의 사례를 싣고 있다. “강경생씨가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 1948년 아버지 강창호가 토벌대에 끌려가 죽은 뒤 가족 및 친척들까지 내낸 괴롭힘을 당하고 13살 어린 나이로 11살 여동생과 둘이 서울로 가 갖은 고생을 다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 즉, 무장대 간부급 희생자를 제외한 선에서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희생자 성격으로 인한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합동위령제는 모두 냉전과 건국과정의 희생자라는 맥락 속에서 ‘양민학살론’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우리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화합’의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는 무장대 희생자를 제외함으로써 나머지 희생자를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간 전략이었다. 반면 이로써 무장대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 여지는 사월제의 소멸, 합동위령제에서의 배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멸되어 갔으며, 몇몇 민주인사들만이 순례 등을 통해 그들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2) 합동위령제의 시공간

합동위령제는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 모두가 기념하던 4월 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동의했다. 그것을 바라보던 두 주체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외연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실제 이런 시간적 위치에 대해 당시 주체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다수의 제주 주민들이 사건을 ‘4·3’으로 명명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 크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간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초반 합동위령제의 기념공간은 ‘광장’이었다. 이것은 사월제 공준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는데, 처음에 4·3유족회는 시위현장을 연상케 한다면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합동위령제의 기념공간은 <표 3-8>과 같이 탑동광장에서 1996년까지 3년 동안 치러진 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터에서 치러졌다. 이는 단순히 보면 광장에서 광장으로의 이동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개방적 공간에서 폐쇄적 공간으로의 이동이었다. 탑동광장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었다. 이 변화의 시기는 4·3유족회 내부의 권력 변화와 더불어 4·3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와 4·3유족회가 부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합동위령제 초반 기념의례의 주관은 사월제 공준위였는데, 이는 제단 구성에 그 성격이 드러났다. 합동위령제의 중요한 상징적 설치물 중 하나는 제단이었는데, 이때 <그림 3-2>과 같이 제주도 모형의 제단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주도 모형의 제단 위에 가득 찬 1만여 위의 위패는 4·3사건의 참혹상을 말해주는 중요한 상징이자, 기념의례구성의 중요한 원초적 자원이었다.

특히 <그림 3-2>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방이 뚫려 있어 어느 방향에서든지 개인 제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유족 스스로 제의적 행위를 연행할 수 있었다. 제주 주민들에게는 전통의례에 대한 문화적 심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심성은 사전조율이 없었음에도 유족들 스스로 개인 제사를 준비해 와 각각 연행하는 축제를 연출해 냈다.

<표 3-8> 합동위령제의 장소와 제단의 유형¹³⁴⁾

실제 명칭	주최/주관	시행일시	시행장소	제단의 유형
제46주년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합동	1994. 4. 3	제주시 탐동광장	제주도 모형 개방형
제47주년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합동	1995. 4. 3	제주시 탐동광장	제주도 모형 개방형
제48주년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합동	1996. 4. 3	제주시 탐동광장	제주도 모형 개방형
제49주년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합동	1997. 4. 3	제주시 종합경기장	제주도 모형 개방형
제50주년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합동	1998. 4. 3	제주시 종합경기장	제주도 모형 개방형
제51주년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합동	1999. 4. 3	제주시 종합경기장	제주도 모형 개방형

<그림 3-2> 제주도 모형의 합동위령제 제단¹³⁵⁾

134)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하였다.

135) 당시 합동위령제에 대한 보도는 제주도내 언론 가운데 제민일보만이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제민일보의 1995년 4월 4일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탑동 및 제주종합경기장 주변에서 치러졌던 합동위령제의 모습이다.

3) 합동위령제의 형식과 내용

1994년에 이르러 합동위령제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지만, 이때의 합동위령제의 형식적 구성은 반공적 4·3유족회에서 지내오던 합동위령제의 형태를 따른 것이었다. 이후 합동위령제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 기본적인 순서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체로 합동위령제의 순서는 <표3-9>처럼 ‘입제선언-초혼-국민의례-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위령제 봉행 취지문-종교의식-주제사-추모사-추도사-추도시 낭독-헌화 및 분향-소지-과제’의 형태로 상징적 구성과 언어적 구성에 치중해 있었다.

처음과 끝은 초혼과 과제라는 유교식 제사 형태를 띠었지만 주요 절차들은 근대적인 기념의례의 형태를 띠었다. 이런 절차의 기원은 이미 충혼위령제에서 시행되었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월제 공준위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갈등했지만, 유족회는 당연한 절차처럼 받아들였다. 매 절차마다 각 주체들의 입장이 반영되었는데, 초혼은 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던 일종의 유족들의 기제사를 반공적 성격의 4·3유족회가 치르던 합동위령제에서 비롯되었다.

<표 3-9> 합동위령제의 순서 및 의례사¹³⁶⁾

주기	순서	의례사(주제사/추모사/추도사)
제46주기 (1994년)	입제선언-조혼-(국민의례)-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위령제 봉행취지문-종교의식-주제사-추모사-추도사-추도시 낭독-헌화 및 분향-소지-파제	주제사-봉행위 의장단 김병언(4·3유족회) 추모사-봉행위 의장단 고창훈(사월제 공준위) 추도사-제주도지사 친구범 제주도의회의장 장정언 국회의원 강희찬 국회의원 변정일 국회의원 양정규 국회의원 현경대
제47주기 (1995년)	입제선언-조혼-국민의례-진혼곡-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위령제 봉행취지문-종교의식-주제사-추도사-추도시 낭독-헌화 및 분향-소지-파제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김병언(4·3유족회) 추도사-봉행위 위원 고상호(사월제 공준위) 제주도지사 김문탁 제주도의회의장 장정언 국회의원 현경대 국회의원 양정규 국회의원 변정일 국회의원 강희찬
제48주기 (1996년)	입제선언-조혼-국민의례-진혼곡-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위령제 봉행취지문-종교의식-주제사-추도사-추도시 낭독-헌화 및 분향-소지-파제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오선범(4·3유족회) 추도사-봉행위 위원 강창일(사월제 공준위) 제주도지사 친구범 제주도의회의장 김인규
제49주기 (1997년)	입제선언-조혼-국민의례-진혼곡-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위령제 봉행취지문-종교의식-주제사-추도사-추도시 낭독-헌화 및 분향-소지-파제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박창옥(4·3유족회) 추도사-봉행위 위원 양동윤(사월제 공준위) 제주도지사 친구범 제주도의회의장 송봉규
제50주기 (1998년)	입제선언-조혼-국민의례-진혼곡-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종교의식-주제사-추도사-추도시-헌화 및 분향-소지-파제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조승옥 추도사-유족회장 박창옥 제주도지사 친구범 제주도의회의장 송봉규
제51주기 (1999년)	【제1부】 입제선언-국민의례-조가 합창-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종교의식-주제사-추도사-추도시 낭독-헌화 및 분향-소지-파제-【제2부】 4·3희생자를 위한 차사영맞이 굿(김윤수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 (기능) 보유자)	주제사-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 위원장 조승옥 추도사-유족회장 박창옥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의회 의장 강신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조세형 자유민주연합총재 박태준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합동위령제 성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절차 중의 하나는 국민의례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비롯해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 및 4·3영령에 대한 묵념’의 절차에 대해 사월제 공준위 측은 4·3사건이 국가에 의한 학살인데, 국가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절차는 추모의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유족회는 이것에 대해 반대했다. 앞서 보았듯이 4·3유족회는 이미 4·3사건의 희생이 건국과정에서 생겨났던 희생으로, 4·3영령들을 순국선열의 위상과 같은 위치로 보고자 했다.¹³⁷⁾ 이런 갈등은 결국 1994년 첫 합동위령제의 식순에는 국민의례가 기재되

136) 위의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하였다.

137) 그런 정황들은 이후 여기저기서 보인다. 유족들은 그들의 후손이 사회적으로 독립유공자 자녀와 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했고, 그것은 점점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 있었지만 결국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합동위령제에서는 시행되었다. 그것은 합동위령제에서 민주화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헌화 및 분향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져 왔는데, 첫 번째의 헌화와 분향은 위령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공식기관 및 사회 유지급 인사들의 행렬이라면, 두 번째의 헌화와 분향은 식이 끝나기 직전 유족들의 행렬로 마무리되었다. 이 헌화와 분향에 대한 절차도 논란이 있어서 유족과 사회 인사들 중에 누가 먼저 분향을 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붙었다. 이는 정치권력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여파로 실제 합동위령제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후 나타나는 유족단위 위령제에서는 유족들이 먼저 사회인사들 보다 헌화와 분향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³⁸⁾

합동위령제 봉행 취지문은 1997년까지 작성되어졌는데, 유족회와 사월제 공준위 간의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합동위령제의 봉행위원회에서 ‘봉행 취지문’을 밝혔다. 이 봉행취지문은 합동위령제의 기념 의도를 밝히는 절차로 이때 봉행위원회에 밝힌 합동위령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디딤돌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4·3사건 희생자의 신원문제는 제주주민들의 책무로, 제주 주민 모두가 4·3사건의 피해자이며 해결자임을 인식하고자 하는 뜻에서,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한 주민단결의 장으로 합동위령제를 벌임을 명시하였다.¹³⁹⁾ 이 모든 기저에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념에 대한 열망이 공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취지문만으로 합동위령제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합동위령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담론과 의도가 격돌하고 있었는데, 크게 4·3유족회와 지방정부, 사월제 공준위 등이 상호 격돌했으며, 그런 태도들은 종종 여러 의례사에 나타나곤 했다. 의례사는 대체로 주제사, 추도사, 추모사 등으로 나뉘어 각 주체들의 의도를 표현했는데, 주제사는 대체로 봉행위원 중에서 유족회 쪽의 인사가 했다면 추도사는 사월제 공준위 측의 인사가 하는 식

138) 대표적으로 현의합장묘위령제의 경우 유족들이 가장 먼저 분향을 하고, 유족들 중에서도 고령의 유족부터 분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리배치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있다.

139) 1994~1997년 합동위령제 취지문 참조

으로 위령제 일부 절차를 나눠 갖는 형태가 199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절차를 분배하는 형식으로 서로 격돌하면서도 절차를 분배받은 댓가로 각 주체들의 입지를 다소 퇴보시켜 ‘공통의 열망’을 만들어내는 전략이었다.

초반 합동위령제는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배분적 관념에 입각해 8~10명에 이르는 의례사(儀禮辭)가 진행되었는데, 1996년에 들어서면 이런 의례사들이 일괄 정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98년부터 주제사는 봉행위원회 대표가 맡아서 하고, 추도사는 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각계 사회 인사들이 맡아 하면서 정돈된 형태를 띠어 갔다. 이것은 절차의 분배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우익 인사들이 의례사의 인사로 부상되는 반면 사월제 공준위 등의 민주화 세력들은 오히려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각 주체별로 의례사를 살펴보면 4·3유족회와 사월제 공준위, 정치권력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유족회는 유족회의 지도부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1998년을 기점으로 그 주장하는 바가 달리 나타나지만 1997년까지 유족회가 합동위령제를 사월제와 같이 하는 데에는 ‘항쟁’논리의 확산을 막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략) 지금 이 사회에는 님들이 희생되실 당시의 갈등이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부이지만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일보의 후퇴도 없으며 젊은 세대들은 민중항쟁이란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님들을 모시는데 있어서도 혼선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 전에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님들을 항쟁의 대열에 끌어들여 자기네의 주장의 볼모로 우리를 붙들어 매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는 안된다는 우리의 외침이 점차 이 사회에 메아리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양극된 주장을 잠시 잠재우고 함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생략).¹⁴⁰⁾

반면 이 시기 사월제 공준위는 추모사를 통해 합동위령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장임을 밝히고 있다.¹⁴¹⁾ 1998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요구는 유족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유족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¹⁴²⁾’ 및 ‘위령사업의

140) 제47기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 위원장이자 유족회장 김병언의 ‘주제사’ 중에서 발췌하였다.

141) 1994년 ~1995년의 합동위령제 추모사에 나타났다.

142) 1999년 합동위령제의 추도사 등에서 시작되었다.

지원과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¹⁴³⁾ 이에 반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은 동시에 두 가지 전략을 보였는데, 하나는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을 위한 노력을 경진하겠다는 의지의 천명과 다른 하나는 합동위령제에서 결집된 힘을 모아 현안(개방화, 국제화, UR, 지방화, IMF)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용하자는 현실 담론정치를 펼쳤다.¹⁴⁴⁾ 이러한 주체들의 전략은 때때로 상호 갈등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며, 교환 및 수용되기도 했는데, 가장 유력한 주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 시기 종교의식은 1999년까지 존속되다가 사라졌는데, 이러한 절차는 제주지역에서만 유독 강조되는 절차였다. 1994년에서 1999년 6년 동안 개신교, 불교, 천주교계의 종교의식이 자리했다. 4·3사건 진상규명운동에 일찌감치 발을 들여놓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역할도 있었지만, 추모곳을 무속적 종교의례로 파악한 4·3희생자 유족들 중 종교인들의 요구로 인해 결국 이 종교의식의 절차가 형성되었다.

이와 달리 합동위령제 안에는 합동위령제와 전혀 다른 성격의 소규모 전통의례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유족들의 개인제사였다. 유족들은 합동위령제가 진행되는 동안 합동위령제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의 개인 제사를 지내는 것에 오히려 집중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개적인 제사에서 대성통곡하는 유족들이 많았으며, 제사가 끝난 뒤에는 신위 앞에서 가족이나 이웃끼리 모여 음복을 하는 장관은 사월제의 축제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장치였다.

다. 전야제의 시행

1) 제주민예총의 성립

143) 1998년 합동위령제의 추도사 등에서 시작되었다.

144) 이때 경쟁적으로 1998년 추도사에서 신구범 지사는 “제주도에서도 제주의 4·3문제 해결은 민간단체, 제주도, 정부, 국회 등이 함께 논의하여 풀어나가는 협력형 해결방식을 전제로 1998년을 ‘제주4·3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정하고 1999년부터 ‘공동체 보상의 원칙’과 ‘평화추구의 원칙’에 따라 위령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추도사에서 우근민 지사는 “도의 일관된 4·3해결의 기본원칙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공동체적 보상, 평화의 추구”라고 밝혔다.

1994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민예총)가 발족하였다.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은 문화운동으로부터 많은 추진 동력을 얻었는데, 이 뒤에는 문화운동집단들이 있었다. 제주민예총이 설립되기 이전 1987년 제주지역에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를 비롯해, 제주청년문학회, 우리노래연구회, 놀이패 한라산, 그림패 브람즈 등이 있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 노래패 숨비소리, 풍물패 새날, 문학동인 들메 등이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을 꾸려 활동하다, 이 조직은 1994년 제주민예총으로 흡수되었다.

제주민예총은 발족 때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운동을 벌여왔는데 이들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굿, 문예비평, 풍물, 민요, 영상 등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려 4월 예술제를 개최해왔다. 창립당시부터 4·3사건의 예술적 해결방안을 천명했는데, 당시 창립선언문에는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민예총은 반외세 자주 통일의 꿈을 이루려 했던 4·3민중항쟁 정신을 예술 창작과 실천 속에서 보듬어 안아 연표 위에 자랑스럽게 기록되도록 할 것이며 제주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제주민예총 창립선언문, 1994).

이 시기 제주민예총은 전야제를 포함한 4·3예술제를 합동위령제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고 싶어 했지만, 4·3유족회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사월제 공준위와 4·3유족회가 공동개최하는 합동위령제에서 병행되지 못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걷게 되었는데, 덕분에 4·3예술제는 독자성과 창의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4·3 기념의례들이 지녔던 엄숙성, 중후함, 비극성을 오히려 해학적, 연극적으로 풀어내면서 효율적으로 4·3사건이 ‘민중항쟁’임을 선언해 갔다.

특히 예술제 중에서도 전야제는 사월제의 추모제를 계승하는 한편 현 사회의 당면문제도 반영하면서, 여러 전통적인 장치와 창작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중항쟁’의 담론을 생성해 나갔다. 이것은 합동위령제가 ‘용서와 화합’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1998년 4·3사건 50주년을 기점으로 제주민예총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4·3예술제를 역사문화축제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속에서 핵심적인 기념의례는 전야제와 이후에 나타나는 해원상생굿이었다.

2) 전야제의 형식과 구조

전야제라는 명칭에서 기대하는 것은 4월 2일의 연행이지만 이 시기 전야제의 시간적 위치는 전야제가 갖는 이미지와 잘 맞지 않았다. 이것은 전야제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4월 3일을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4월 한 달을 4·3사건의 상징적 달로 보고 4월이 들어가기 전 바로 전날인 3월 31일에 전야제를 치렀던 것이다. 이것은 4월 한 달을 ‘4·3추모기간’으로 삼고자 하는 상징적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차후에 ‘4·3주간’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야제의 공간적 구성은 사월제 시절의 ‘광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으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전 사월제는 가두시위, 추모제, 순례 등의 의례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추모제가 사라지면서 사월제는 예술제를 명명하는 단어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부터 하나의 의례체제를 이루던 가두시위와 순례는 독자적인 행사로 전환되어 나갔다.

<표 3-10> 전야제의 내용¹⁴⁵⁾

명칭	일자	장소	행사내용
46주년 제1회 예술제	전야제	1994.3.31	제주도문예회관 놀이마당
47주년 제2회 예술제	전야제	1995.3.31	제주도문예회관 야외극장
48주년 제3회 예술제	전야제	1996.3.31	탐동해변공연장
49주년 제4회 예술제	전야제	1997	-
50주년 제5회 예술제	전야제	1998.4.1-2	한라체육관
51주년 제6회 예술제	전야제	1999.4.2	탐동해변공연장

<표 3-10>과 같이 전야제에서 핵심은 사월제의 추모제에서 연행하던 ‘굿’을

145) 표는 본 연구자 자료를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빈 공간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자료수집이 되지 않아 작성할 수 없었다.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때의 곳은 초감제 형식으로 세습무가 연행했다. 이 곳은 종종 외연은 전통굿이었지만, 내포한 의미는 합동위령제에서 배제된 희생자들을 기념하기도 했다. 이는 사월제 이후 민주화 집단의 ‘민중항쟁론’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측면을 불식시킨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전략이 달라졌는데, 하나는 합동위령제의 담론을 실천하면서도 다른 하나는 전략적으로 전야제 등을 이용해 ‘민중항쟁’의 기억을 산출해냈다.

이 시기 곳은 사월제 초반의 추모제의 보다 연극적인 요소에 기대어 민중항쟁의 담론을 쏟아냈는데, 예를 들면 1995년의 전야굿 산신놀이는 주목할 만하다. 원래 산신놀이는 수렵과 목축의 신인 ‘백중와살’이란 산신을 위하여 벌이는 놀이 곳이다. 대개 7월 백중에 행하는 본향굿에서 볼 수 있는데, 포수 두 명이 사냥감을 다투다가 화해하고 사냥감을 나누는 과정을 연출하는 곳이다(제주도, 1993). 그런데 이 곳을 1995년 전야제에서 실행했다.

단순히 본다면 그냥 전통적인 산신놀이겠지만, 주체들이 의도를 갖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산을 무대로 활동했던 무장대를 산신놀이의 포수나 여러 산신의 위치에 배치시킴으로써 민중항쟁의 담론을 연극적으로 풀어가려했던 측면들을 보여준다.

이런 문화적 장치가 가능한 것은 이 전야제의 주체들이 제주 전통세습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문화적 자원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야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전야제란 명칭을 달고 시행되다 이후 전야제란 명칭이 사라지고 거리굿이란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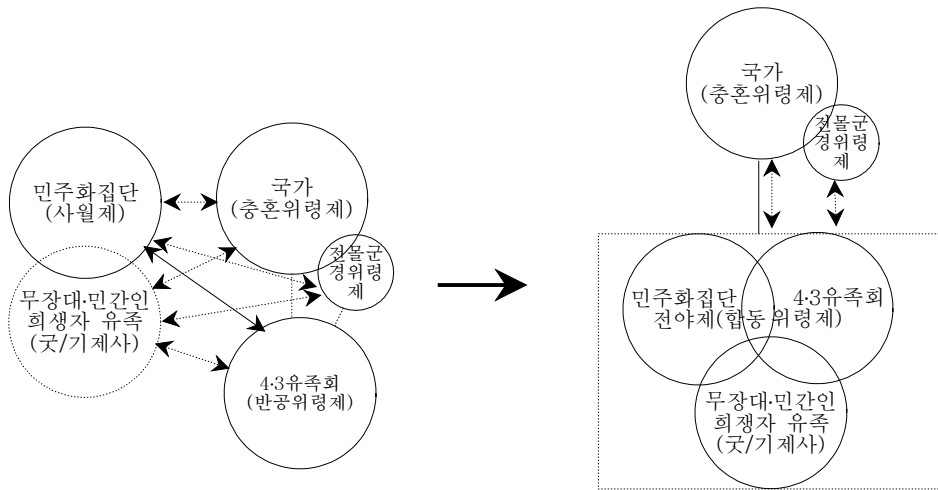
이 시기는 민주화집단의 추모제의 등장으로 충혼위령제 등 반공적 시각이 도전을 받고 새로운 담론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담론투쟁의 주체들은 여러 층위가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희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란 맥락에 따라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과 민주화집단 등이 <그림 3-3>처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들의 대립으로 각 주체들의 영향력과 역학관계가 변화하였으며, 각 주체들의 기념의례를 통한 담론 투쟁은 가열되었다. 군경 및 우익희생자에 대한 충혼위령제를 제외하고, 반공적 성격의 4·3유족회의 합동위령제와 민주화집단의 추모제가 드러내놓고 대치하였다. 이들 갈등의 핵심에는 민간인 희생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들은 결국 간부급 무장대 희생자들을 배제한 채, 각각의 의례를 합동위령제로 통합하였다. 합동위령제의 합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많았지만, 여기에 제주도의회와 지방정부가 중재자로 나섰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유족이기도 해서 이들의 역할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의 제도권 내 진입을 가능케 했다.

그럼에도 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합동위령제는 공산폭동의 담론과 민중항쟁의 담론을 잠시 탈락시켰고, 이를 대신해 ‘양민학살’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조성해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4·3사건의 공식화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합동위령제는 충혼위령제와 더불어 민간인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있던 합동위령제가 새로운 국가 기념의례로 부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주체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4·3 담론에 대한 전일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그런 변동은 기념의례를 통해 감지되고 있었다.

1989년에서 1993년까지 치열했던 각 주체들의 담론투쟁은 1994년 하나의 기념의례로 통합하면서 치열했던 양상이 수그러들었고, 각 주체들은 일정정도 담론 일부를 양보하였다. 그 속에서 4·3사건에 대한 담론은 ‘양민학살’, ‘도민화합’이라는 온정적이고, 추상적인 담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림 3-3>은 그런 역학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3> 민주화집단의 등장과 4·3기념의례의 역학관계



점선: 잠재적 상황
 실선: 드러난 상황

제4장 새로운 국가 기념의례의 정립과 유족 기념의례의 확산

1. 합동위령제의 수용과 정립

가. 합동위령제 수용과 정립과정

1) 과거사 정리 및 국가의 공식 사과

‘과거사 정리’는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화두였다. 일제치하부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역사복원 프로젝트였다. 지난 시기 여러 차례의 과거사 정리는 실패를 경험했는데,¹⁴⁶⁾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사 정리의 재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과거 여러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희생자 유족들을 움직였는데, 2004년 8월 이전까지 과거청산과 관련된 운동들은 일제하 강제동원진상규명, 친일진상규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광주5·18, 삼청교육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의문사 진상규명, 군의문사 진상규명, 인혁당, KAL 858폭발사건, 그리고 제주4·3사건 등이었다(김성길, 2005: 35).

제주4·3사건의 경우 5·18과거사 청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진상규명운동과 특별법 투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 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사건위원회가 4·3사건 진상규명에 착수하게 되었다.

4·3사건위원회는 3년간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증언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4·3사건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그

146) 반민특위의 좌절, 4·19혁명 희생자 유가족회의 진상규명운동의 좌절 등이 대표적이다.

과정에서 국정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4·3사건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3년 10월 31일 제주에 내려와 제주 주민들에게 ‘4·3사건 동안 일어났던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이 일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4·3사건의 매듭을 푸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4·3사건을 공론화하고 4·3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 토대를 마련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흐름을 이어 가시적 결과를 내놓은 것이었다. 이때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4·3평화공원 조성 및 명예회복지원에 대해 약속했는데,¹⁴⁷⁾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이 전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동춘(2005)에 따르면 국가의 과거사 청산 모델은 과거사 진상규명→가해자 처벌→피해자 명예회복→사과→보상과 배상→기념사업의 형태를 띠어왔는데, 4·3사건의 경우도 4·3특별법 제정→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대통령 공식사과→대통령 위령제 참석의 형태를 띠어왔다. 다만 가해자 처벌 부분은 여전히 4·3사건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2003년 정부의 공식사과와 2006년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자, 4·3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¹⁴⁸⁾ 2003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밝힌 이후 한국 정치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는 그 어느 시기보다 큰 화두가 되었고, 결국 논란 끝에 2005년 5월 3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일명 과거사법)’이 통과되었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견지해 온 과거사 정리 해법을 4·3사건 문제에서 직접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 2005년에는 경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허준영 경찰총장이 4·3평화공원에 참배를 했는데, 4·3사건의 주 가해자 측이었던 경찰기구의 공식적 사죄와 참배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

147)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4·3사과 전문 참조(제주의 소리, 2003년 10월 31일자).

148) 대통령의 참석은 취임 첫 해인 2003년에 검토되었지만, 진상조사가 난항으로 치달던 시기여서 고건 총리가 대신 참석하였고, 2004년에는 위령제 참석과 함께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사태로 좌절되었다. 2005년에는 국회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었던 터라 이해찬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은 합동위령제 등 4·3기념의례가 정부 행사로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념의례의 성격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2) 4·3특별법과 평화공원조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법률 제6117호)’은 이전 제주도차원에서 유지되던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키고, 기념사업이 국가적으로 수렴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달리 4·3특별법은 ‘보상’이라는 맥락 대신 ‘희생자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중시 여겼는데, 여기에는 이제껏 ‘희생’에 대한 왜곡된 규정을 바로잡아 주고, 국가적 차원의 올바른 기념사업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때문에 4·3특별법에 의거한 명예회복의 범위는 명백히 기념사업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유족들의 이러한 요구는 연좌제의 피해로 상당기간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는데, 실제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4·3사건 때 군경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제주주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렸는데,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남아 있는 그들에 대한 냉소주의와 트라우마는 상당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¹⁴⁹⁾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을 유발시켰던 국가에 의한 제도적 확답을 얻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런 요구는 법 제정 투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4·3특별법의 목적도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4·3특별법에 의하여 그 일을 담당할 기구로써 국무총리 소속 하에 4·3사건위원회를 두었다. 이 4·3사건

149)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연좌제의 피해 실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보안감찰 및 요시찰의 피해, 둘째 각종 입학, 취직시험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신원조회, 승진 등), 셋째 출입국시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위원회의 존재는 4·3기념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특히 2가지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기념대상자의 선정문제였다.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기념대상자 선정 문제는 제주도 조례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의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모두를 기념대상자로 삼았다. 그러나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뒤, 특별법 제2조와 제3조 법조항에 의거하여, 4·3희생자 선정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4·3사건위원회로 넘어가면서 4·3사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선정된 자만이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기념사업의 기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⁵⁰⁾ 특히 4·3사건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은 4·3사건 희생자 선정에 주된 변수가 되었는데, 무장대 출신, 수형인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갈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위령공간 및 상징과 관련된 문제였다. 4·3특별법 제3조는 위원회가 위령공간 및 위령탑 등의 기념사업에 대한 물리적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드는 경제적 지원은 제8조에 의거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는 기념공간과 기념물에 관련된 사항이 전적으로 4·3사건위원회의 소관 하에 제도적으로 고착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4·3기념의례의 공간적 위치가 4·3사건위원회의 영향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 4-1>은 4·3특별법 내 기념사업과 관련된 조항들로 기념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

<표 4-1> 기념사업과 관련된 4·3특별법 법조항

150) 2008월 4월 3일 합동위령제에 참석했던 신촌리 김남규는 2007년까지 위령공원 내 위패 봉안실에 부착되어 있었던 부친의 위패가 사라졌다고 증언하였다. 이 경우 4·3희생자로 신고접수했지만 희생자로 선정될 가망성이 없자 지방정부가 제거해 버렸다.

조항	법률안	영향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사업 전반에 영향
제2조2호 (정의)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제3조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희생자 선정에 영향
제3조2항2호 (위원회)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희생자 선정에 영향
제3조2항3호 (위원회)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 전반에 영향
제3조2항5호 (위원회)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기념공간에 영향
제3조2항8호 (위원회)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기념사업 전반에 영향
제3조3항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임 또는 위촉한 자.	기념사업 전반에 영향 특히 희생자 선정에 영향
제3조 (시행령)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관련 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영향
제8조1호 (위령사업)	위령묘역 조성	기념공간에 영향
제8조2호 (위령사업)	위령탑 건립	기념물에 영향
제8조3호 (위령사업)	4·3사료관 건립	기념공간에 영향
제8조 4호 (위령사업)	위령공원 조성	기념공간에 영향
제8조 5호 (위령사업)	기타 위령관계 사업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영향

이러한 법적 근거는 4·3합동위령제를 포함한 기념사업 전반이 국가 토대 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요구는 유족 및 제주도민들의 요구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도 한데,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수형인과 관련된 희생자 범위문제(제2조제2항 개정 문제), 집단학살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에 관한 조항(신설문제), 4·3사건희생자 추모일을 지정하는 문제(신설문제) 등 기념사업과 관련된 요구들이 국가차원에서 수합되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2005년 4·3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4·3희생자 유족회 1,5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0.8%(295명)에 해당하는 유족들이 4·3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의 성과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75.1%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유족회원들 94.2%가 가장 많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¹⁵¹⁾

‘4·3해결 및 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64.2%가 중앙정부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중앙정부 다음으로는 지방정부, 4·3유족, 민관의 협력 순이었는데, 이것은 국가 책임(보상)의 완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편 합동위령제 공간의 또 다른 제도적 변수는 <표4-2>의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354호)’였다. 2008년 4월 2일에 제정된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4·3평화공원의 이용에 대한 강화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읽을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4·3평화공원과 위령제단의 운영과 관리, 위패의 규격이나 희생자의 배열순서, 기념의례 방식이나 시간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조항들은 4·3기념의례의 제도화, 공식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국가 기념의례에 나타나는 성격을 고스란히 닮게 함으로써 권력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전락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 4-2>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151)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 13일간 미래리서치가 제주4·3사건희생자 유족회의 의뢰를 받아, 4·3사건희생자유족회원 1500명 전수를 대상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 자료집(2005. 7. 29)』에 실려 있다.

조항	조례안
제2조 (정의)	2. “위령제단”이란 제주43평화공원에 조성하는 위패봉안실, 승화탑, 추모탑 등의 공간으로써 헌화, 분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위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이하 “43희생자”라 한다)의 이름이 각인된 석물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제주43평화공원 관리 2. 위령제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제5조 (위패의 봉안)	① 위령제단내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는 43희생자 중 사망자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이하 “43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위령제단 내 위패봉안실의 위패의 규격, 재질, 희생자 배열 순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령공간에서의 존엄유지)	①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에서는 가무, 유흥, 야영 그밖에 희생자 영령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령제단에는 헌화용 화환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등 그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위령제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위령참배)	① 위령공간에 대한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단 참배가 가능하도록 위령공간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령제 등 단체 행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제주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을 비롯한 녹지공간 등은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단체 행사 등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의 변화

2000년 합동위령제는 43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43특별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2000년 8월 43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이하 43사업소)’가 생겨나면서 2001년 합동위령제부터 43사업소 주관 하에 봉행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전 합동위령제의 주체들이 유족과 민주화 집단, 대학생, 지방 정부, 지방의회 등 다양한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었다면, 제도화, 고착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등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43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제주도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청에 43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43사업소는 제주도에 희생자 신고 접수, 희생자 사실 조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실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때문에 43사업소의 등장과 이 기구의

기획과 섭외에 의해 합동위령제는 봉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라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합동위령제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제주도와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 4-3>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의 변화¹⁵²⁾

시기	봉행위원회	전체 위원수	위원회의 특징	기타
2000년	봉행준비위원 위원장-조명철 부위원장-박창욱, 임문철	100	4·3유족회+ 민주화진영	봉행준비위원과 위원 나눔
2001년	봉행위원회 위원장-우근민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조명철	봉행위원152 집행위원11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봉행 및 집행 위원 중복
2002년	봉행위원회 위원장-우근민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조명철	봉행위원153 집행위원11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봉행 및 집행위원 중복
2003년	봉행위원회 위원장-우근민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조명철	봉행위원159 집행위원10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봉행 및 집행위원 중복
2004년	봉행위원회 위원장-우근민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조명철	봉행위원161 집행위원10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봉행 및 집행위원 중복
2005년	봉행위원회 위원장-김태환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조명철	봉행위원200 집행위원11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봉행 및 집행위원 중복
2006년	봉행위원회 위원장-김태환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고태호	봉행위원206 집행위원11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봉행 및 집행위원 중복
2007년	봉행위원회 위원장-김태환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고태호	봉행위원248 집행위원12	제주도지사+ 실무위원회	봉행 및 집행위원 중복

<표 4-3>을 보면 4·3특별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합동위령제의 봉행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는데, 이것은 합동위령제의 정형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이전 주체들의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한 과정이었다. 실제 200여 명의 이르는 민간봉행위원이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거의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전 시기 조력자의 역할을 하던 지방정부는 현재 실질적인 합동위령제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4·3기념의례 주체로의 전환은 기념의례의 주체였던 유족들을 비롯하여 나머지 다른 주체들을 외부환경으로 전환시킨다. 유족

152) 위의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들은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행위만이 용인되는 기념의례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념의례의 형식이 나타나므로, 국가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때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갈등관계를 경험했던 유족들이나 다른 집단들에 의해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제도화 및 공식화의 단계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 주도의 형식적 배분을 통해 각 주체로부터 국가 주도의 명분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각 주체들의 담론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이다.

나. 합동위령제 형식과 구조의 변화

1) 합동위령제 대상자의 선택과 배제

2000년 4·3특별법의 제정·공포는 4·3위령제를 포함한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군경 및 우익 유공자에 대한 충혼위령제와 달리 제주지역 민주화집단과 4·3유족회,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거행하고 있었는데, 4·3특별법의 제정은 이 합동위령제의 국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합동위령제의 국가 수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기념대상자 선정과 다른 하나는 기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93년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1994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6년 동안 이뤄져 왔던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문제는 2000년 6월부터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 접수문제가 국가차원으로 확대된 문제만은 아니었다. 4·3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4·3사건위원회는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4·3사건 희생자 선정 문제에도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에 의한 4·3사건 희생자 범주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때 4·3위원회를 비롯해 4·3사건 희생자 선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치열했다.

희생자 선정은 3단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 단계는 2002년 ‘희생자 심의

기준안'을 확정하기까지의 논쟁과 함께 민간인 희생자들을 희생자로 선정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2005년 수형인의 일부를 처음으로 4·3사건 희생자로 인정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2007년 그동안 침묵하게 대립해 왔던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사형수, 무기수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들을 통해 기존 군경 및 우익 유공자만을 4·3사건의 희생자로 보고자 했던 국가의 태도는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국가가 용인하는 '희생자'만을 4·3사건의 희생자로 보겠다는 기본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집단 인명 희생의 분류를 초토화 시기의 살상, 도피자가족 살상, 자수자 살상, 함정토벌, 피난 입산자 살상, 보복살상, 예비검속자 살상, 형무소 재소자 희생, 무장대에 의한 살상 등으로 분류하여 희생자를 범주 짓고 있었는데, 국가에 의해 규정된 '희생자'들의 범주에는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및 무장대 희생자들이 포함되지는 않았었다. 다만 『진상조사보고서』가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들을 낳은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드러냄으로써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을 희생자 선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었다.¹⁵³⁾ 이들에 대한 뜨거운 논쟁 끝에 2007년에 이들은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수형의 원인을 개인의 불법행위에서 찾던 맥락에서 국가의 불법재판으로 그 맥락이 전환되면서 이제 수형인 희생자들은 죄가 없는 민간인 희생자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¹⁵⁴⁾

153) 불법재판의 희생자, 형무소 재소 희생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54) 문성윤(2005)에 따르면 4·3사건과 관련하여 1949년 7월경까지 군사재판을 받아 수형인이 된 사람이 모두 2,530여 명에 이르고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아 수형인이 된 사람은 1,30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군사재판을 받아 수형인이 된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에 관련된 기소장이나 판결문 등 재판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다만 수형인 명부에 수형인으로만 등재되어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런 수형인들에 관하여 4·3특별법에 딸 희생자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형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계속하여 수형인으로 남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형식으로 풀어야 될 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뒤따른다(문성윤, 2005: 23-24). 한편 이들 수형인들은 한국전쟁시기에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은데,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발발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이었고, 이중 평택 이남 형무소 재소자는 20,229명으로 제주에서 이송된 4·3사건관련 재소자는 일반 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그럼에도 국가의 ‘희생자’ 선정에는 무장대 간부 출신 혹은 혐의를 갖고 있는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박찬식(2008)은 원천적으로 당시 죽은 사람들 모두를 ‘시대적 희생자’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서술내용의 부재를 지적하며 앞으로 남은 희생자 선정의 끝마무리 싸움이 쉽지 않음을 예견하였다(박찬식, 2008: 518).

또한 희생자 선정범위와 관련해 최초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곳은 헌법재판소였는데, 가해자 측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희생자 명예회복 제외대상자로 수괴급 무장병력 지휘관 및 중간간부,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 방화에 가담한 자를 꼽았다. 이 사안은 4·3사건위원회 안과 밖에서도 만만치 않은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일은 후에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2002년 3월 14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중석, 2008).

반면 국가유공자들을 비롯해 유공자가 되지 못한 민보단원 등의 우익단체 출신 중의 상당수는 ‘희생자’신고에 참여하였으며, 국가유공자(민간인 유공자) 517명, 경찰 48명(사망47명, 후유1명) 등이 신고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희생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와 4·3희생자 선정은 별개라는 주장과 국가유공자와 4·3사건 희생자 선정은 중복이라는 의견 대립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신고접수는 2000년 6월 8일부터 2007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신고접수는 <표 4-4>에서 보이는 것처럼 14,373명으로, 이중 13,564명(2007년 3월 14일 기준)이 현재 4·3중앙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인정받았다.¹⁵⁵⁾

형무소에 수감되어, 이들 2,500여명은 모두 행방불명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155) 1차 신고기간은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1월 4일까지였으며, 2차는 2001년 3월 2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이다. 3차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이었으며, 4차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였다. 이중 생존하고 있는 후유장애자 131명이 신고·접수되었으며, 이중 108명의 후유장애 생존자가 4·3사건 희생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인정받았다. 4차시기 부터는 유족들의 신고 접수도 받고 있어서 신고접수된 모두를 현재 기념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신고접수된 수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희생자들 상당수는 토벌대에 의한 희생으로 국가폭력의 양상을 드러냈는데, 시기적으로는 강경진압작전 진행 전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집중적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차후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는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학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민간인 희생자들을 또 하나의 4·3사건 ‘희생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이는 새로운 정권이 4·3사건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부여하는 자원이 되기도 했다.

<표 4-4> 합동위령제 기념대상자의 변동¹⁵⁶⁾

시기	제주시	서귀포시	구 북제주군	구 남제주군	도외지역	신고접수자
2000년(52주년)	3,384	1,197	4,523	3,133	6	12,243
2001년(53주년)	-	-	-	-	-	13,138
2002년(54주년)	3,876	1,262	5,255	3,459	34	13,886
2003년(55주년)	3,742	1,243	4,915	3,278	30	13,208
2004년(56주년)	-	-	-	-	-	14,028
2005년(57주년)	-	-	-	-	-	14,373
2006년(58주년)	-	-	-	-	-	14,373
2007년(59주년)	-	-	-	-	-	14,373

그러나 애초 몇몇 무장대 간부급만을 제외한 채, 전체 신고된 희생자들을 추모했던 합동위령제는 이런 국가의 ‘희생자’선정 개입으로, 국가가 용인한 자만을 기념의례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처음 4·3평화공원의 위패봉안소에 모셔져 있던 신고접수된 희생자들 중에는 후에 ‘희생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되면서 위패가 떼이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는 국가가 용인한 자만이 4·3사건의 희생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기본 논조가 바뀌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반공담론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4·3사건 희생자 선정과 기념의례에 대한 유족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국가에 의해 4·3사건 희생자로 선정된 희생자 유족들이 합동위령제에서 기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태도라면, 둘째는 국가에 의해 희생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위패가 있는 동안 합동위령제에 참가하여 4·3사건의 희생자로 선정되기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세 번째는 아직도 국가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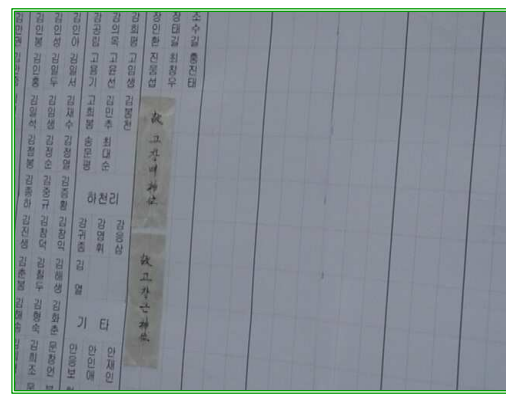
156) 위의 표는 합동위령제 자료집과 4·3사업소 관계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빈 공간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접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합동위령제를 통해 관망하는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오랜 기간의 불신으로 <그림 4-1>처럼 합동위령제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그제서야 임시 위패를 만들어 붙이고 기념의례에 참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는 후에 4·3사건위원회에 희생자 신고 접수를 한 유족들도 있다. 이것은 국가 억압에 대한 유족들의 심리적 기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맥락이자, 유족들이 모두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바라볼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4-1> 합동위령제의 기념대상자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가 마련되기 전인 2000년 합동위령제 때로 신위를 확인하는 유족들로 복세통을 이뤘다.



합동위령제 때의 임시위패이다.

2) 합동위령제 시공간의 변화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의 7개 건의 항목 중의 하나는 4·3사건에 대한 국가 기념일의 제정과 국가에 의한 기념사업의 확대였다. 이 『진상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유족과 민주화 집단은 한 목소리로 4·3사건에 대한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4·3기념일 제정에 대한 보다 외부적인 환경은 정권교체 이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다. 유족과 민주화 집단은 4·3사건이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비극적 사건이고, 특히 건국 후 정부 수반이 최초로 국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행한 기념비적 사건인 만큼 4월 3일을

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유족들의 4·3사건에 대한 피해 의식의 시간적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가적 차원의 역사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4·3’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유족들이 느껴왔던 공포감 내지 외상신경증후군에 대한 심리적 보상의 차원이라면 후자는 국가 차원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간적 의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축에서는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파악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었다.¹⁵⁷⁾

이런 시간적 위치 변화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나타난 것은 기념공간이었다. 김대중 정권 교체 직후인 1999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부지매입비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제주도에 지원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즉시 제주시 봉개동에 5만평의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그림 4-2>와 같이 평화공원을 조성해가기 시작했다.¹⁵⁸⁾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4·3사건 유족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김대중 정권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당시 정권은 5·18민주화운동처럼 4·3사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기념사업을 요구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기념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¹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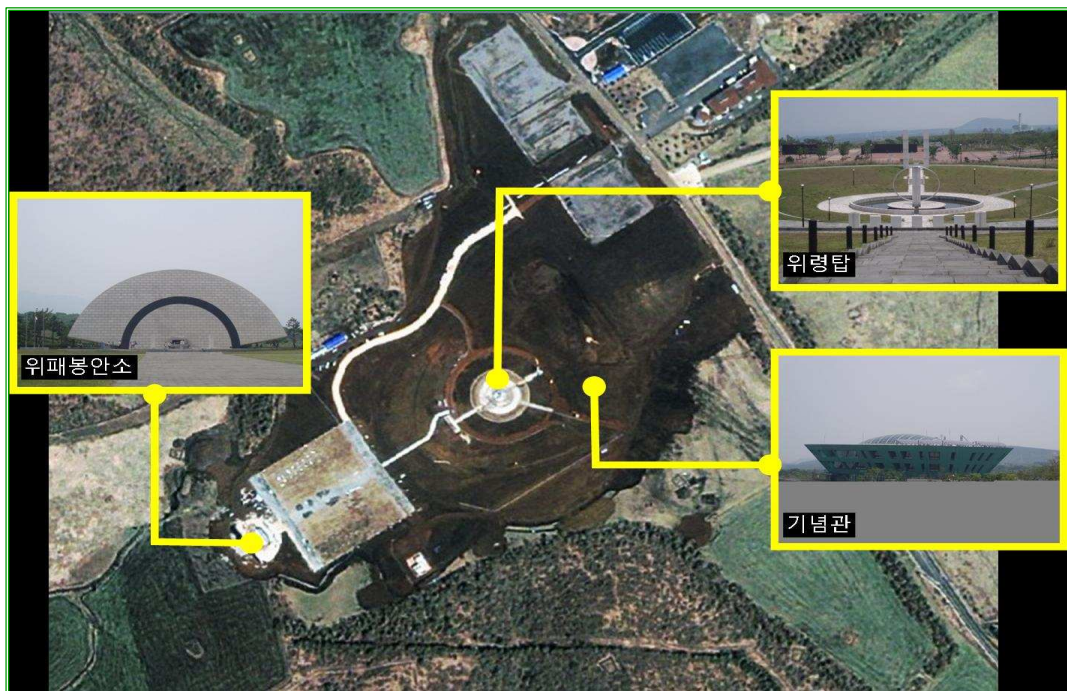
157) 이 문제에 대해 보수 우익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제성호(중앙대 법대)는 ‘4·3 사건 규명위원회에서도 역사적인 평가를 유보한 상황에서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밝히기도 했다(제주4·3연구소, 2008년 5월 21일자 성명서 참조).

158) 이 공원의 가치는 위령공원이었는데, 이후 평화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93억원으로 2001~2008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사업은 2001~2003년까지로 위령 제단 및 위령탑, 추념광장 등이 조성되는 단계이다. 2단계는 2004~2006년까지로 기본·실시설계, 기반시설, 조경시설, 4·3사료관 전시 및 콘텐츠시설 등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2008년까지로 4·3문화관, 조형물, 조경시설 등을 완료하는 단계이다. 2008년 현재 면적은 1단계 사업 추진 시 5만여 평과 2단계 시 구입한 7만 평을 더해 5필지 총면적 396,743㎡(12만평)로, 제주시 봉개동 산51-3번지(128,948㎡), 산 52번지(54,367㎡, 산 53-5번지(165,290㎡), 산 53-11번지(11,059㎡), 봉개동 237-2번지(37,079㎡) 영역에 해당한다(박경훈, 2004).

159) 1999년 합동위령제에서 4·3유족회장은 추도사에서 “광주 5·18묘역은 6만2천여 평에 3백5억여 원이 지원되었고, 거창사건에도 4만5천여 평에 2백여 원이 지원돼서 그야말로 굉장한 공원이 됐습시다만 그곳에 비하면 몇 십 배의 희생자를 낸 제주4·3사건에 대해선 여태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으니 도세가 약해서 이런 겁니까(생략).”라고 항변했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와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도 약속이행을 강권하고 있다.

4·3사건의 경우 공동묘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묘역이 존재하는 공원과 달리 위패만이 모셔진 기념공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공원 조성은 전적으로 4·3특별법 제8조에 따라 4·3사건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고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초반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4·3사건과 무관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논란이 일었는데, 이는 국가가 기념사업의 주체로 나서면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였다. 이때 부지 매입을 다시 하자는 쪽과 부지에서 4·3사건의 관련성을 찾거나 만들자는 의견이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전자의 의견보다는 후자의 의견이 현실적이라는 판단 하에 평화공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의사소통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림 4-2> 4·3평화공원 조감도



맨 왼쪽에 있는 위패봉안소 일대가 합동위령제가 치러지는 장소이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 합동위령제가 치러지던 2004년 4월 3일은 위패봉안소가 개소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소된 위패봉안소는 유족들의 큰 분노를 샀다. 평화공원조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결과적으

로 구성된 당시 위패봉안소의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패의 크기가 너무 작아 희생자의 명단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족들과 민주화 집단, 참여자들은 위패봉안소와 위패의 규모 문제보다는 지방정부와 국가의 의사소통문제에 비난을 가했다.

유족들에게 위패봉안소에 부착된 희생자의 명단 존재여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죽은 자들을 확인하는 일 없이는 기념할 수 없다’는 유족들의 말처럼 이름을 확인하는 일로부터 유족들은 망자를 애도했다.¹⁶⁰⁾ 뿐만 아니라, 합동위령제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희생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명단의 배치는 다시 유족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우리 모두 피해자’이니 ‘화합’하자는 담론 정치 결과 약화되어버렸다. 위패봉안소를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위패봉안소 앞에 조성된 제단은 언제나 유족들과 지방정부 간의 마찰을 불러왔다. 매년 위패봉안소와 제단을 둘러싼 갈등은 심심찮게 목격되었다.

<표 4-5> 합동위령제의 장소와 제단의 유형 변화¹⁶¹⁾

실제 명칭	주최/주관	시행일시	시행장소	제단의 유형
제52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 (제주도/제주도의회 후원)	2000. 4. 3	제주4·3위령공원부지 (봉개동)	직사각형 모형 임시제단
제53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봉행위원회	2001. 4. 3	제주4·3위령공원부지 (제주시 봉개동)	직사각형 모형 임시제단
제54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제주4·3사건 희생자범도민위령제 봉행위원회	2002. 4. 3	제주4·3평화공원부지 (제주시 봉개동)	직사각형 모형 임시제단
제5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범도민위령제 및 평화공원 기공식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봉행위원회	2003. 4. 3	제주4·3평화공원부지 (제주시 봉개동)	직사각형모형 임시제단
제56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 봉행위원회	2004. 4. 3	4·3평화공원 주념광장(제주시 봉개동)	위패봉안소 앞 제단
제57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위령제 봉행위원회	2005. 4. 3	4·3평화공원 주념광장(제주시 봉개동)	위패봉안소 앞 제단
제58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	2006.4. 3	제주4·3평화공원 (제주시 봉개동)	위패봉안소 앞 제단
제59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제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위원회	2007. 4. 3	제주4·3평화공원 (제주시 봉개동)	위패봉안소 앞 제단

처음 2000년 4·3평화공원에서 합동위령제가 치러질 때에는 <표 4-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위패봉안소가 없는 상태에서 공간적 배치는 명백히 두 개의 제단

160) ‘위패가 없는데, 제사를 지내면 무엇 하나’ 당시 유족들이 항변하던 말이었다.

161) 위의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는 본 행사의 합동위령제를 위한 주(主) 제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主) 제단을 뒤로 위패가 놓인 제단이 하나 더 있었다. 전자의 제단에는 분향과 국화꽃만 놓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후자도 애초에 의도는 비슷했지만, <그림 4-3>처럼 개인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매년 유족들은 이 후자의 제단 위에 제물을 얹고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이런 제사 행위는 유족들로 하여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했다. 매년 이런 모습들은 한동안 반복되어 나타나곤 했다. 이런 두 개의 제단은 새로운 기념방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국무총리 고건이 합동위령제에 참여하고, 이듬해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인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유족들의 제사를 허용하던 제단은 사라져 버렸다. 이때 위패봉안소가 완성되었던 해이기도 했는데,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 측과 유족회가 논의를 거쳐 유족들의 제사를 합동으로 위령탑이 있는 공간에서 하기로 했지만 이 위령탑은 합동위령제의 제장과 위패가 놓여 있는 장소를 벗어난 곳이어서 상당수의 유족들은 <그림 4-3>처럼 위패봉안소가 있는 곳에서 개인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는 좀 더 국가 기념의례와 비슷한 측면으로 가꿔가고자 했던 국가 의도와 유족회, 유족들 간의 입장이 상호 격돌하고 있는 측면들이었다.

<그림 4-3> 개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유족들



2003년 합동위령제 때로 이 시기까지만 해도 두 개의 제단 가운데 하나의 제단은 유족들의 제사를 가능하게 했다.



개인 제사를 금지시킴으로써 몰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유족들의 모습이다. 2007년 합동위령제 때.

2005년에는 급기야 유족들의 개인의례를 막으면서 유족들과 공무원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4·3평화공원에서 유족회 차원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각 주체들은 합의했지만, 상당수의 유족들은 다시 합동위령제에 개인의례를 준비하고 왔다. 이전과 달리 2005년의 합동위령제에는 하나의 제단만이 설치되었다. 유족들은 그 제단에 준비해온 제물을 바치고 개인 제사를 지냈는데, 본 행사 직전 국무총리가 입장한다는 소리에 지방공무원들이 쓰레기 치우듯 큰 가마니들에 제물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으면서 유족들이 반발했고, 유족들과 지방공무원들이 극하게 대립하였다. 지방정부의 태도는 중앙 정치권의 행보에 조심스러워 했지만, 유족들은 그런 지방정부의 태도를 못 마땅하게 여겼다.

2006년 최초로 대통령의 합동위령제 참석은 이러한 공간적 질서에 체계적인 국가 질서를 부여받기 시작한 때였다. 대통령의 참석으로 유족들의 공간적 구획과 활동은 국가기구로부터 제한을 받았다. 4·3평화공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표를 지닌 채 보안검색대를 지나야했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대통령의 반경에 따라 움직임이 정해졌다.¹⁶²⁾

이때 위패봉안소의 방문은 식후(式後)로 제한되었으며, 유족들의 개인제사는 유족회를 통해 완전히 통제되었다. 간혹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유족회의 활동에 관심이 없는 유족들이 제사음식을 마련해 왔지만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때문에

162) 비표가 없는 유족들은 합동위령제로부터 배제당해야만 했다.

그후 유족들 중에는 아예 합동위령제 시간을 피해 따로 제사음식을 마련해온 뒤 위패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몰래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기념의례 공간이 국가에 의해 제도화되면서 공간과 제단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정부, 봉행위원회, 유족들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유족들의 또 다른 비밀의례가 양산되고 있다.

한편 이와 달리 공간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한 각 주체들의 합의점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공원의 성지화’에 대한 이미지 창출이었다. 물론 각 주체들이 ‘성지’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은 달랐다. 우선 유족들의 입장에서 4·3평화공원은 묘지이거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특히 행방불명인의 혼백안치와 개인표석 등의 문제를 통해 볼 때 유족들에게 4·3평화공원은 위패봉안소를 중심으로 성지의 개념이 시작되며, 또한 4·3사건으로 인한 죽음의 기원을 회복시켜주고 격상시켜주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지’의 개념이 도출되고 있다. 각 공적기구들에서 보내온 조화는 죽음에 대한 격상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며, 여기에 부응한다.

반면 제주민예총 등 민주화 집단은 ‘상생’으로부터 ‘성지’ 개념이 도출된다. 이 집단의 상생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과 유족·주민들의 명예회복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이상적 국민국가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화한다. 제주작가회의의 시화전이나, <그림 4-4>와 같은 제주민예총의 만장들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4·3문제 완전해결’ ‘용서와 화합’, ‘진실의 승리’, ‘평화와 인권’, ‘상생의 성지’ 등과 같은 언어적 기표들은 4·3사건에 대한 완전한 문제해결만이 평화와 인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런 시발점 상에 있는 것이 4·3평화공원임을 천명하고 있다.

전자가 국가에 의한 죽음의 격상으로써 성지라면 후자는 죽음의 근원을 파헤치는 시발점으로 4·3평화공원에 대한 ‘성지화’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이것은 4·3평화공원을 죽음의 종점으로 보는가 아니면 죽음의 출발점으로 보는가 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종종 이 양자의 입장은 현실의 정치담론과 결합되어 4·3평화공원이 마치 ‘평화의 섬’의 압축적 전형인 것 마냥 담론이 유포될 때가 있다. 주로 봉행위원회와 정부 측에 의해 제공되어 왔는데, 희생자들을 ‘평화의 섬 창조신’¹⁶³⁾으로 전환함

으로써 평화의 섬 담론이 4·3평화공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은 공간적 구획을 선포한다.

<그림 4-4> 만장과 조화



제주민예총은 합동위령제때마다 다양한 만장을 선보이고 있다. 이때 만장은 제주민예총의 담론 일부를 선보이는 도구로 활용된다.



각 기관에서 보내온 조화들은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격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 기호들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성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속스러움을 상정하는데, 유족들에게 속스러움은 희생자들의 묘지, 매장지, 학살터 등의 장이라면, 민주화집단에게 속스러움은 현실적인 사회운동의 장이다. 또한 정부에게는 현실 정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성지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인식과 개념 도출은 외연적으로는 언어적 기표에 의해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속스러움의 공간이 존재하며, 이 공간은 서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다.

3) 합동위령제 형식 및 내용의 변화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4·3평화공원과 합동위령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국가 기구의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더욱 권위적인 형식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결국 정권이 바뀔 1998년이라는 시점은 민주화세력에게는 승리와 더불어

163) 매년 합동위령제 고유문 낭독에서 강조되는 담론이다.

어 안일함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고, 그 속에서 기념의례는 유족회, 국가 주도의 구조로 나아가게 되었다.

형식적인 변화를 보면 4·3특별법의 제정으로 행사는 커져 2000년 처음으로 제주도립예술단이 합동위령제에 등장하는 것을 비롯해 이때 차사영맞이 굿 등 지방정부 소속의 예술단과 문화운동 단체인 제주민예총의 공연이 함께 실행되었다. 다른 국가 기념의례에서 전통적인 굿 시연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였지만, 합동위령제에서 식전행사로 지속적인 굿 시연이 있었던 것은 초반 유족들과 민주화집단이 주체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부터 합동위령제의 형식적인 측면을 놓고 국가(지방정부), 유족회, 민주화집단 등 각 주체들이 보이지 않는 격돌 양상을 보였는데, 이 격돌은 문화예술공연에서는 민주화 집단이, 유족제사는 유족회가, 위령제는 국가(지방정부)가 맡아서 하는 배분적 차원에서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림 4-5> 합동위령제의 유족고사와 식전 행사



2004년 식전에 치러졌던 유족고사이다. 이 유족고사는 현재 위령전야제리의 독립된 의례로 분리되었다.



2004년 제주민예총의 식전공연행사이다. 주로 기존 문화운동의 상징들을 일부 공연화했다.

<그림 4-5>의 왼쪽 그림은 2004년 처음으로 합동위령제 내에서 유족회 차원의 유족고사가 진행되었을 때의 그림이다. 이때 앞서 공간 문제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 인사가 참여하면서 유족들의 개인 제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격돌하던 중 식전행사 중의 하나로 유족들만의 제단을 따로 마련하여 유교

식 제사 의례를 치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개별 유족들 상당수는 위패봉 안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면서 유족회와 유족들 간에 격돌하기도 했다.¹⁶⁴⁾

민주화 집단의 식전행사는 <그림 4-5>의 오른쪽 그림처럼 거의 ‘민중항쟁’을 알리는 성격의 퍼포먼스로 구성되었다. 대나무, 동배꽃, 만장, 기메와 같은 장치들을 이용한 이들의 공연은 4·3문화운동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위령제라는 형식 속에 간혀 식전행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의 추모제 및 굿과 같은 추모제의 장치는 위령제와의 격돌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의 형태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중항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그림 4-6> 합동위령제의 광경



2008년 합동위령제의 전경이다. 매년 합동 위령제에는 1만명 가량이 참여한다.



2008년 합동위령제의 분향의 모습. 누가 먼저 추모할 것이냐는 문제를 낳는 절차이다.

<그림 4-6>과 같이 국가 및 지방 정부가 관여하는 합동위령제는 제도권 내로 포섭되면서 형식적 절차 또한 고착화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종종 의례에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는 국가의 욕구가 침투한다. 외국의 기념의례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전통의례의 일부를 차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고유한 양식이라고 제정한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에게 부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필수 불

164) 특히 유족들은 희생자에 대한 제사 이후 제사음식을 나눠 먹는다. 음식과 술은 그들 공동체를 유지하기 근원적 형식이 된다(Assmann, 2003).

가결한 요소이다(Geertz, 1983). 그리고 국가는 많은 곳에서 지배적 의미를 만들어 간다.

합동위령제의 제차에서도 ‘식전행사-(초혼례)-국민의례-경과보고-(고유문)-주제사-추도사-추모시-조가-헌화분향-폐제’ 등으로 규정되어 나가면서 담론의 훼손당하지 않는 선에서 주체들의 의례사를 배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고유문은 봉행위집행위원장, 주제사는 제주도지사, 추도사는 정부인사 혹은 유족회장 등이 맡아서 하는 구조로 정해지면서, 위령제라고 하는 닫힌 공간 내에서 순화시키기 위한 엄밀한 규칙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2004년 초혼례의 변동으로 더욱 국가기념일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2006년 대통령의 합동위령제 참석으로 유족들의 개인 제사 의례가 금지되고 4월 2일 유족회 차원의 전야위령제례로 독립되면서 합동위령제는 근대적인 성격의 위령제 모습을 띠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국민의례 과정에서도 조기와 조가, 조화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앞서 있었던 순국선열 및 43영령의 묵념 형태가 강조되었으며, 정부 인사들의 참여로 전에 없던 경과보고 절차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6년 합동위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참석으로 국민의례 절차가 더욱 강조되어, 합동위령제 참가자를 선별하고,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에게 미리 애국가를 연습시켜 70~80세 이상의 촌로들로 하여금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합동위령제 초기 국민의례에 대한 논란이 정권의 변화와 합동위령제의 국가 기념의례의 부상으로 10년 뒤 완전히 상황이 변화하게 된 것이었다. 조가(弔歌) 또한 2005년부터 제주경찰악대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¹⁶⁵⁾

<표 4-6> 합동위령제의 순서 및 의례사의 변화¹⁶⁶⁾

165) 음악이나 공연자제도 합창형태의 조가와 국가기념일에 사용되는 정형화된 기념곡들로 채워졌다. 이전 사월제의 민중가요 등 절차상 주목할 만한 것은 추도시 또한 민족문학작가들에서 43청소년백일장을 통해 입상한 청소년들로 바뀌었으며, 이것은 세대 전승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166) 위의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각 명칭들은 자료들의 것을 그대로 기입하였다.

주기	순서	의례사(주제사/추모사/추도사)
제52주기 (2000년)	혼을 부르는 소리(제주판굿/제주도립예술단)-【제1부】개식-초혼례-국민의례-주제사-추도사-인사의 말-조가-헌화 및 분향-소지-4.3진혼무【제2부】4.3희생자를 위한 차사영맞이굿(김윤수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 보유자)	주제사-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 위원장 조명철 추도사-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의회 의장 강신정 인사말씀-유족회장 박창욱
제53주기 (2001년)	개제-초혼례-국민의례-고유문 봉독-주제사-추도사-인사말씀-추모시 낭독-조가(제주불교합창단 부루나)-헌화 및 분향-폐제	고유문-봉행위 집행위원장 조명철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제주도지사 우근민 추도사-제주도의회의장 김재호 인사말씀-유족회장 이성찬
제54주기 (2002년)	개제-초혼례-국민의례-고유문-주제사-추도사-추모시 낭독-조가(제주불교합창단 부루나)-헌화 및 분향-폐제	고유문-봉행위 집행위원장 조명철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제주도지사 우근민 추도사-제주도의회의장 김재호 유족회장 이성찬
제55주기 (2003년)	개제-초혼례-국민의례-고유문-주제사-추도사-추모시 낭독-조가(제주불교합창단 부루나)-헌화 및 분향-폐제	고유문-봉행위 집행위원장 조명철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제주도지사 우근민 추도사-국무총리 고건 제주도의회 의장 김영훈 유족회장 이성찬
제56주기 (2004년)	위령제 식전행사-개제-국민의례-고유문-주제사-추도사-추모시 낭독-조가(제주불교여성합창단)-헌화 및 분향-폐제	고유문-봉행위 집행위원장 조명철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제주도지사 우근민 추도사-행정자치부 장관 제주도의회 의장 김영훈 유족회장 이성찬
제57주기 (2005년)	개제-국민의례-경과보고-고유문-주제사-추도사-추모글-헌화 및 분향-폐제	고유문-봉행위 집행위원장 조명철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제주도지사 김태환 추도사-국무총리 이해찬 제주도의회 의장 양우철
제58주기 (2006년)	제58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식전문화행사'초혼굿, 꽃넛으로 살아'-개제-국민의례-헌화 및 분향-경과보고-주제사-추도사-추도문 낭독-위령공연(진혼무/제주도립예술단)-헌화 및 분향-폐제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제주도지사 김태환 추도사-대통령 노무현
제59주기 (2007년)	제59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식전문화행사(다시 피는 평화, 생명의 꽃이어)-개제-국민의례-경과보고-주제사-추모사-추도사-추모시 낭송-유족대표 인사-위령공연(진혼무/이애주와 한국전통춤)-헌화 및 분향-폐제	주제사-봉행위 위원장 김태환 추모사-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양대성 추도사-행정자치부 장관 대독(대통령)

이런 국가 중심의 기념의례의 부상으로 합동위령제는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기념의례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표 4-6>에서 보여주듯이 상징적 구성과 언어에 치중한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전 합동위령제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주체들의 행위는 점점 더 국가적으로 규정되어 갔다. 이런 절차상의 구조는 유족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박경훈(2004)은 최초의 위령제로부터 점차 문화적 특색을 잃어버리고 점차 무미건조한 행정요식행위적인 제례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족과 위정자들의 관계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이 절차만은 아니었다.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합동위령제의 내용은 ‘평화’ 담론에 집중되어있다. ‘평화’ 담론이 대두된 것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이제는 4·3사건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기념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유족들은 아직도 4·3사건이 완전히 진상규명되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다. 그것은 진짜 배후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진짜 배후가 누군지 모른 상황에서 평화담론의 전개는 국가에 의한 또 다른 담론 정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태초의 평화담론의 기원은 1998년에 이뤄진 ‘도민해원상생굿’에서 비롯되었다. 4·3사건 50주년이 되던 해에 제주민예총 등 민주화집단이 4·3희생자들의 원혼과 제주도민의 한을 풀어서 서로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민해원상생굿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 ‘해원과 상생’의 맥락이 합동위령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용서와 화해’로 전도되었고, 다시 이것이 정부공식사과 후 합동위령제가 제도화되면서 ‘평화’로 전도되었다. 그 이후 섬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다시 ‘평화’와 ‘섬’이 만나 ‘평화의 섬’이란 담론을 창출하게 된 것이었다. 이런 전환들은 대부분 국가권력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특히 2004년의 합동위령제는 전년도 대통령의 사과로 고무되어 ‘화해와 상생’, ‘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더욱 강조되는 주체들의 의례사들이 쏟아졌고, 결국 2005년 1월 27일에는 국가차원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서명식이 있었다.

국가에 의한 ‘평화의 섬’ 선포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섬’을 강조하면서 해군군사기지건설, 한미FTA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평화 담론은 제주 주민들의 일상을 규정짓는 하나의 내면적 환경이 되어 이 문제들에 대한 거센 저항을 표출하고 있다.¹⁶⁷⁾

이처럼 상징의 세계는 전술이 전개된다. 어떤 요소나 소품이든 늘 같은 의미를 띠지 않으며, 누가 늘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 세계에 개인, 집단, 국가 등이 그들의 목적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두루 참여하지만,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장악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4·3사건에 대한 대항 담론이 공식적 상징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167) 서귀포 지역의 해군기지철폐문제나 한미 FTA철폐 문제에 범도민적인 지지가 이뤄졌던 이면에는 4·3사건과 평화담론이 작용하고 있었다.

2. 유족단위 위령제의 확산

가. 유족단위 위령제의 형성과정

1) 원초적 사건의 차이

유족단위 위령제는 매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 수는 현재 2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이 유족단위 위령제는 4·3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단일 사건으로 규정을 만든 집단적인 학살이 제주 전역에서 자행되었고, 그 집단 학살 희생자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당한 집단 학살을 4·3사건 내에서도 독립적인 단일 사건으로 인식하고, 집단 학살의 규명과 세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비롯해 지위 향상 및 국가 주도의 진상규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유족회의 구성과 유족단위 위령제는 더욱 활발히 생성되고 있다.

이런 유족단위 위령제는 대체로 크게 집단학살의 경험을 가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집단학살은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4·3초토화 시기의 집단학살과 다른 하나는 예비검속 시기의 집단학살, 마지막은 이 전시기를 통틀어 행방불명되어 학살된 경우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은 한국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4·3초토화 시기의 집단학살은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 창설과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등을 통해 강경작전의 준비 작업을 완료한 진압군이 소개된 중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총살하는 등 강경진압 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뤄졌던 사건이었다(4·3사건위원회, 2003: 286). 4·3으로 인한 희생자 대부분이 이때에 희생되었다고 할 정도로 토벌대의 무제한적인 토벌작전으로 인명피해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¹⁶⁸⁾

4·3의 초토화 시기는 194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전초적

168) 이 기간 동안 희생된 자에 대한 상황은 『진상조사보고서』를 참조할 것.

학살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당시 남원면 수망, 한남, 의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집단학살이었다. 이들은 산의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학살당하는데, 본격적인 초토화과정에서는 ‘내통’죄가 더욱 강화되어 극심한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초토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경비대는 해안을 봉쇄한 후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중산간 지대를 ‘적성지대’로 간주한다는 포고령을 내리고 주민소개령과 동시에 마을 방화,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특히 12월 연대 교체를 앞둔 9연대의 횡포로 해안 마을로 소개당한 주민들이 대거 학살당하는가 하면 해안마을에 대한 보복기습전을 종종 시도하기도 했다(제민일보, 1997). 이후 9연대와 2연대가 교체되고, 육해공 3군의 합동작전으로 토벌이 강화되면서 해안마을마다 성을 쌓게 해 무장대의 근거지를 차단하고 주민과 고립시키는 작전을 전개했는데, 이 무렵 자행되는 사건이 ‘북촌 주민 학살 사건(일명 북촌 사건)’이었다.

두 번째 예비검속의 집단학살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국의 보도연맹원과 반정부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예비검속에 의해 이들은 7월 말부터 8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계엄군 당국에 의해 총살되었는데, 예비검속자 사살은 비밀리에 수행되었다.¹⁶⁹⁾ 모슬포 경찰서 관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송악산 ‘첫알오름’에서 총살된 현장은 우연히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었지만, 나머지 제주·서귀포경찰서에 검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희생 일시 및 장소 등 당시 상황은 철저히 기밀로 처리되었다.¹⁷⁰⁾

당시 제주지역의 예비검속은 제주, 서귀, 모슬포, 성산포 경찰서 중심으로 전도적으로 이뤄졌는데, 제주경찰서 관내 제주읍, 애월읍 예비검속자의 전체 숫자 및

169) 6월 25일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이 하달되었는데, 이 지시문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할 것’과 ‘전국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7월 8일에는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조직 등은 모두 군의 관할로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예비검속을 주관하게 되었다(43사건위원회, 2003: 340).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예비검속 인원은 경찰공문서에는 820명이라고 적혀 있고, 미국대사관 직원의 보고서에는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임원 700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70)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유시사항으로 ‘예비검속은 공표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정부는 보안 유지에 철저했다(43사건위원회, 2003: 430).

총살희생자 수를 비롯해 서귀포 경찰서 관내 서귀면, 중문면, 남원면의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까지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예비검속자의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희생당일에 총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4·3사건위원회, 2004: 430-431).

모슬포 경찰서 관내 대정면, 한림면, 안덕면 예비검속자 및 성산포 경찰서 관내 성산면, 구좌면, 표선면 예비검속의 경우 전체 숫자 및 총살 희생자수나 명단이 현존 경찰 자료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다소나마 그 실상 파악이 가능하다(4·3사건위원회, 2003: 430-434). 또한 예비검속자 희생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그 희생 실태가 우선 알려지면서 시신을 수습하고, 묘지를 조성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마을이 대정면, 한림면의 경우였다. 이것은 차후 유족단위 위령제가 가장 먼저 생겨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세 번째 행방불명 희생자들은 4·3사건의 기점이 되었던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을 거쳐 1954년까지 4·3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4·3사건 관련 재판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의 형이 집행되었는데, 제주지역에는 당시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¹⁷¹⁾ 이들 형무소 재소자들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도 했지만, 열악한 형무소 수감 환경 때문에 옥사하기도 하고,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상부 명령에 의해 총살당하기도 하였다. 이들 형무소 재소자 중에 희생 일자, 장소, 경위 등을 알길 없어 유가족들이 그들을 4·3사건위원회에 행방불명 희생자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들은 모두 보복학살로 벌어진 공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소 차이는 있다. 4·3초토화 시기의 집단학살은 ‘무장대와의 내통’이라는 이유로 특정 마을을 지목하여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면, 예비검속시기의 집단학살과 행방불명인 학살은 한국전쟁발발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뤄진 보복학살의 형태를 띠고 있다.

171) 이때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등 일반재판과 미군정 당시 행해진 군정재판, 군인 및 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 등이 있었다. 또한 1948년 12월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회의와 1949년 7월 예외적으로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가 있었다(4·3사건위원회, 2003: 442).

이 사건들을 기념의례의 형성시기와 관련지어 본다면 다른 사건들이 원초적 사건 발발 직후부터 집단적인 기념의례에 대한 열망이 나타났다면, 행방불명인 희생의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집단적인 기념의례로 나타날 수 없었다. 그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희생의 경로와 유산을 파악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수형인 희생자라는 꼬리표는 반공주의 국가체제가 작동하는 시기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수형인 학살터에 대한 조사와 그것의 4·3사건 관계성을 파악하고 기념사업을 전개하기까지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족단위 위령제는 집단매장지나 묘지의 존재가 유족단위 위령제를 형성 시기의 차이를 가져온 중요한 요소였다.

<표 4-7>과 같이 현재 4·3초토화 시기의 희생자를 기념하는 대표적인 기념의례에는 ‘북촌리 4·3희생자 합동위령제’와 ‘현의합장묘 영령위령제’ 등이 있고, 예비검속 시기의 희생자를 기념하는 의례에는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와 ‘만병디 영령위령제’ 등이 있다. 또한 행방불명인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는 제주4·3유족회 등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 중 행방불명인 진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의례들은 모두 기념공간으로써 집단매장지나 묘역이 존재하고 있다.

<표 4-7> 유족단위 위령제의 원초적 사건과 희생자

시기		원초적 사건	의례명칭	기념 대상	위령제의 시작
4·3 초토화 시기	1948.12.19 ~ 1949.1.17	북촌마을 및 합덕 등지에서 학살	북촌리희생자합동위령제 (이하 북촌위령제)	443명	o 2000년부터 매년 음력 12월 19일
	1949.1.10 ~ 1. 12	의귀초등학교인근에서 학살	현의합장묘영령위령제 (이하 현의합장묘위령제)	80여명	o 1950년 봄부터 제사 o 2003년부터 신묘역 합동 위령제
예비 검속시기	1950.8.20	예비검속시기 첫알오름 지역에서 학살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 (이하 백조일손위령제)	132명	o 1959년 묘비건립 o 1966년부터 매년 음력 7월 7일 제사 o 1993년부터 매년 음력 7월 7일 합동위령제
	1950.8.20	예비검속시기 첫알오름 지역에서 학살	만병디 영령합동위령제 (이하 만병디 위령제)	63명	o 1956년 제사 o 2001년부터 매년 음력 7월 7일 합동위령제
한국 전쟁시	한국전쟁시	예비검속시기 행방불명됨	행방불명인 진혼제	3740여위	o 2000년부터 시작

집단매장지와 묘역의 존재는 기념의례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데, 초토화시기의 경우 집단 학살터나 집단 매장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예비검속의 경우 학살터나 집단 매장지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문으로만 남겨진 경우가 많았다. 백조일손묘역이나 만벵디 묘역은 유족들에 의해 빨리 그 학살터가 발견되면서 시신수습이 가능했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희생되었다더라’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실제 2007년 제주국제공항 내 유해발굴사업에서 소문들이 사실임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제주국제공항과 화북 별도봉 진지 동굴 등에서는 유해들이 발굴되었다.

이것은 기념의례의 형성시기 못지않게 공간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초토화시기의 희생자들은 집단학살터나 매장지를 대상으로 기념의례가 형성되었다면, 예비검속의 경우 증언으로 남겨진 학살터 인근이나 다행히 유해가 수습된 집단묘역 등에서 기념의례가 형성되었다. 반면 행방불명인의 경우 마지막 수용소나 혹은 국내외 관계 지역에서 기념의례를 연행하고 있다. 이중 집단매장지나 집단묘역은 향후 위령공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각기 다른 원초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념의례 형식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원초적 사건 발발 직후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오늘날 기념의례 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각 유족회의 경험과 태도

원초적 사건이 각기 다르다고 모든 기념의례에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았다. 대부분 기념의례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습성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4·3사건의 경우 국가의 억압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이후 유족들의 기념의례 형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

<표 4-8> 국가 탄압에 대한 유족들의 경험과 태도

각 유족회	매장지 및 묘역 존재여부	기념의례에 대한 직접적 국가 탄압	태도
4·3사건희생자복존유족회	매장지	○	침묵
현의합장묘유족회	매장지→묘역	-	소극적 저항
백조일손유족회	묘역	○	적극적 저항
7·7만벵디 유족회	묘역	○	침묵
행방불명인유족회	X, 산재	-	침묵

국가로부터 기념의례에 탄압을 받았던 유족회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표 4-8>과 같이 침묵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였다. 전자가 기념의례를 숨기거나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후자는 기념의례를 저항의 상징적 기호로 활용했다. 전자의 경우 국가 탄압의 경험 때문에 기념의례가 복원되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걸렸다.

국가로부터 기념의례에 대한 탄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념의례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기념의례에 대한 탄압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침묵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례들도 있었다. 국가탄압사례는 이후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형태로 이뤄지는데 대표적으로 백조일손유족회와 복존유족회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원초적 사건이 기념의례의 대상과 시공간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소라면, 국가의 탄압은 기념의례의 형성시기와 형식등을 차이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3초토화 시기 희생에 대한 기념의례로 복존위령제와 예비검속시기 희생에 대한 기념사례로 백조일손위령제, 그리고 행불인 진혼제와 무장대 희생자의 기념의례들을 통해 4·3사건을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규정하고 벌어지는 합동위령제에서의 경험과 담론이 유족들마다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와의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복존위령제

1) 복존위령제의 형성과정

가) 북촌사건과 마을공동체의 붕괴

북촌 마을의 현재 행정명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이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북촌마을은 현기영의 4·3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순이삼촌』은 일명 ‘북촌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은 1949년 1월 17일에 마을 전체가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일어날 즈음 토벌대는 주둔지를 습격당하거나 혹은 이동 시에 기습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복에 나섰는데, 북촌마을의 경우 지역 주민 전체를 보복대상으로 삼았다.¹⁷²⁾ 이 ‘북촌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북촌 마을은 집단 학살의 전초들이 나타났다.

다른 마을처럼 북촌마을도 1947년 3·1절 기념식 사건 이후 경찰들의 횡포 때문에 젊은 남자들이 마을에 살지 못해, 자연스레 입산이 이뤄졌다(제주4·3연구소, 1989: 144). 당시 마을 안에서 ‘산폭도(우익이 무장대를 부르던 칭호)’나 ‘미친 개(좌익이 토벌대 등을 부르던 칭호)’나 칭호를 부치며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던 1948년 6월 우도섬(일명 소섬)에 있던 경찰관들이 우도항구에서 출항해서 제주시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북촌마을에 입항하게 되었는데, 이 마을에서 경찰관 2명이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¹⁷³⁾

군경은 살해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매일같이 주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1948년 ‘동짓달 열엿새 날’에 민보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젊은이 23명이 ‘난시빌레’라는 곳에서 집단 학살당했다(북촌유족회, 2008). 이때부터 군경에 의해 북촌마을은 ‘폭도마을’로 지목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촌사건’이라 불리는 집단 학살이 이듬해 1월 17일(음 12월 19일) 일어났다(제주4·3연구소, 1989; 1990b; 1990c).

1949년 1월 17일 아침 세화¹⁷⁴⁾ 주둔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 마을로¹⁷⁵⁾ 가던 도중에 북촌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172) 토벌대는 무장대 습격 사건이 나면 곧 도피자가족을 대상으로 총살을 감행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북촌의 경우 도피자 가족처럼 특정한 대상에게 보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습받은 지역의 주민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173) 이에 대해서는 제주4·3연구소팀에게 북촌마을 주민 김진국, 이기원 등이 증언하였다.

174) 구 북제주군에 속해있던 마을이며, 현재는 제주시에 속한 마을 중 한 마을이다.

175) 구 북제주군에 속해있던 마을이며, 현재는 제주시에 속한 마을 중 한 마을로 세화 마을 인근에 있다.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제사 말함수다』 증언 자료집에 의하면 산에서 민가로 밥을 얻어 먹으러 내려왔던 무장대 3명이 길가에 숨어서 길을 지나는 주민들을 기다리던 중 군인들의 이동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발포하면서 일어났다. 발포 후 무장대는 도망쳤으나 마을 곳곳에 ‘차룡의 밥(바구니의 밥)’을 발견하고는 마을이 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당황한 마을 원로들은 숙의 끝에 군인 시신을 들것에 담아 대대 본부로 찾아갔다. 군인들은 본부에 찾아간 10명의 연로자들에게 ‘수고했다’며 밥을 먹여 준 뒤, ‘기다리라(제주4·3연구소, 1989)’하고는 그 가운데 경찰 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해 버렸다. 그리고 2개 소대 병력이 북촌마을을 들이닥쳤다(4·3사건위원회, 2003: 413; 북촌유족회, 2008: 30).

군인들은 주민들을 전부 당시 북촌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마을을 불태워 4백여 채의 가옥이 사라졌다.¹⁷⁶⁾ 교단에 오른 현장 지휘자는 먼저 민보단 책임자를 나오도록 해서 ‘마을 보초 잘못 섰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처분했다.¹⁷⁷⁾

군인들은 다시 군경가족을 나오도록 해서 운동장 서쪽 편으로 따로 분리시키고, 어린 학생 등으로 하여금 ‘빨갱이 가족’을 찾아내라고 들볶았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주민 몇 십 명씩 끌고 나가 학교 인근의 ‘당팔’, ‘너븐숭이’ 지역 등에서 총살시켰으며, 이로 인해 4백여명 이상이 희생당했다.¹⁷⁸⁾

176) 이때 늙고 병들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 중에는 더러 타서 죽은 자들도 있었다(제주4·3연구소, 1989: 144).

177) 이 시기 이미 민보단 단장은 함덕에서 죽은 후였다(제주4·3연구소, 1989).

178) 함덕 출신 경찰이었던 김병석은 이때 총살경험이 없는 군인들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몇 명씩 끌고 가서 처리하도록 했던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4·3사건위원회, 2003). 총살은 ‘군인차(대대장)’가 온 뒤 바로 멈췄다(4·3사건위원회, 2003: 413; 제주4·3연구소, 1989: 144). 이때 대대장은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그 위에 서 있는 군인의 뺨을 때리고 주민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나머지(살아남은 자) 사람들은 오늘 모두 함덕으로 오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노라고 하고는 돌아갔다(제주4·3연구소, 1989: 139). 희생자의 수는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1993년 희생자는 479명이었다가 583명, 그리고 2008년에는 443위로 변화하였다. 중복조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4백여 명 이상이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은 주민들 가운데는 산으로 피신한 사람, 인근 마을 함덕으로 소개당한 사람 양쪽으로 갈렸는데, 함덕으로 소개된 주민 100여 명 중 80명은 ‘빨갱이 가족 색출 작전’에 휘말려 다시 희생되었다.¹⁷⁹⁾ 특히 소개된 주민 가운데 무장대 가족은 6촌·9촌까지 희생당했다. 이 사건으로 북촌 마을에는 대가 끊어진 집안이 적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이 마을은 남자가 없는 마을 ‘무남촌’으로 불리었다.¹⁸⁰⁾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폭도마을’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 6·25전쟁이 일어나자 상당수가 학도병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 이재후는 ‘우리가 빨갱이 라면 6·25때 북한과 어떻게 싸웠겠는가?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제주MBC, 2003).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지속적인 국가 탄압은 이러한 적응마저도 냉소적 순응으로 전환시켜버렸는데, ‘아이고 사건’은 그 예를 잘 보여주었다.

나) 마을 집단 제사와 꽃놀림의 연행

마을의 집단 학살은 마을 전체를 우울한 감정으로 몰아넣었다. 음력 12월 19일은 이 마을 전체가 제삿날이다. 300여 가호 중 250여 가호가 ‘제사를 명절같이 지내고¹⁸¹⁾’ 혹은 자손이 멸족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다. 이때를 북촌 사람들은 ‘북촌은 앓아분 거라(북촌마을은 앓어버린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일가친척이 모두 희생당해 6촌·10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혼자 13명의 제사를 지내는 집까지 있었다. ‘산에 붙은 가족¹⁸²⁾’이 있으면 보복학살을 당해 6촌·9촌까지 죽여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철저히 ‘시국에 무관심 했고’, ‘사람 죽에도 못낀 행세’를 해야

179)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함덕으로 간 사람들은 북촌 출신으로 해군정보원으로 있던 김○○라는 사람에 의해 지목되어 학살되었는데, 김○○는 “내가 빨갱이를 안다.”고 해서 “골라내라.”는 대답을 얻자 평소 개인 원한관계, 부모 원한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지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살려고 갔던 사람들이 죽은 거라며” 이때 산으로 갔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제주43연구소, 1989: 140).

180) 김석보의 증언

181) 마을 주민들의 표현이다.

182) 무장대 활동을 한 가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증언했다. 이들은 같은 제삿날에도 이웃집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00년 4·3사건의 진상조사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지역방송이 이 북촌마을 취재를 갔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는 당시 같이 북촌국민학교 학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50여 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¹⁸³⁾ 이들에게 보복학살의 경험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들에게 ‘발설’은 곧 보복학살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발설할 수 없었기에 우울한 감정은 잠재적인 집합 감정이 되었고, 꽃놀림 의례가 재현되었을 때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울한 감정은 공동체의 외연적 집합감정으로 분출하였다.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북촌리 주민들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통곡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경찰에 잡혀가 곤욕을 치렀던 일은 주민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다. 이 일은 마을 주민들은 ‘아이고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아이고 사건’은 1954년 1월 23일(음력 12월 19일)의 일이었다. 한국전쟁 전몰장병 김석태의 고별식이 있던 날이었다. 주민들은 망자를 위한 ‘꽃놀림’을 했다. 꽃놀림은 북촌마을에서 이전부터 객지에서 죽은 망자를 위해 마을 젊은이들이 빈 꽃상여를 매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네가 인생을 다 못 살았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놀다가 가라”는 뜻으로 연행해 왔던 의례였다. 그런데 김석태의 꽃놀림을 하던 날 상여를 맨 마을 사람들이 북촌초등학교 마당에 도착하자, 그 날이 바로 학살이 시작되었던 음력 12월 19일인지라, 옛 생각이(북촌사건) 나서 북촌초등학교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술이나 한 잔 올리자고 한 것이 대성통곡이 벌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참여자 모두에게서 터져나왔다. 이 일은 당시 함덕지서에 보고되어 마을이장 신순번을 비롯해 주동자 및 유지 등 10여 명이 잡혀가 고통을 당했고, 이 일로 65명이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졌다.¹⁸⁴⁾ 이 일로 사람들은 4·3사건과 관련된 언급이나 기념의례를 일체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끌려간 사람 대부분은 현재 사망하고 없다.

북촌마을의 피해와 이러한 국가억압은 4·19 혁명 직후 잠시 알려져 ‘과부마을’,

183) 유족회장 김석보의 증언이다.

184) 이때 더 많은 남자들을 끌고 가려고 해도 남자가 없어서 더 끌고 가지 못했다고 마을 사람들은 증언했다(제주4·3연구소, 1989: 153).

‘해마다 이맘 땀 집단 제사’로 유명했다. 이들의 상황은 소설 『순이삼촌』에 의해서 알려져, 4·3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 되었지만, 오히려 마을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신경적 징후가 남아있어서 후에 유족회를 구성하거나 유족회 차원의 위령제를 구성하는 일이 늦게 나타났던 근원적 배경이 되었다.

다) 북촌유족회의 결성

1993년 박칠성 북촌 이장은 원로회에 ‘북촌사건’ 희생자들을 조사하자고 제안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한몫했다. 마을 원로회는 이때부터 ‘북촌사건’ 희생자들을 조사하여 479명의 희생자들을 확인하였다.¹⁸⁵⁾

희생자 신원만 확인했을 뿐 이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만, 4·3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공유족회 진영과 민주화 진영이 나뉘어 4·3사건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기념의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기에 유족들은 조심스레 정치지형을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유족들은 2000년 5월에야 위령제를 지낼 것을 협의하면서 그전에 유족회를 창립하고자 했다. 그해 5월 16일에 유족 김석보를 회장으로 ‘4·3희생자 북촌유족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이들은 다른 유족회와 더불어 ‘『제주경찰사』 왜곡 사건 규탄대회’에 나서서 증언을 하기도 하고, 다른 유족회와 유기적으로 연대하면서 4·3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전의 태도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위령제 개최는 쉽지 않았다.

2003년 2월 제주민예총 주관으로 ‘찾아가는 위령제(해원상생굿)’이 거행되면서 유족들은 상당히 고무되었다. <그림 4-7>처럼 50년 만에 북촌마을 안에서 ‘놀이패 한라산’에 의해 ‘꽃놀림’이 공연으로 재현되었다. 이때 유족들은 이것이 연극이 아닌 진짜 꽃놀림인줄 알고 공연장 한복판으로 나와 통곡을 하며 꽃놀림을 같이 연행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모습은 이들의 심리적 상황이 50여 년 동안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⁸⁶⁾

185) 후에 이 수는 583명으로 늘었다가 443명으로 감소한다. 증감의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중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86) 본 연구자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이 마을 유족들을 만났는데, 그 중 한 유족은 ‘말문은 텃지만, 이것도

<그림 4-7> ‘꽃놀림의 재현’과 북촌위령제



2003년 놀이패 한라산의 꽃놀림 재현극을 실제처럼 여기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오는 유족들의 모습이다.



2006년 북촌위령제 때의 모습이다. 2008년 이전까지 주로 북촌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런 일련의 일들에 고무되어 유족회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4백여 신위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위령제의 명칭은 ‘4·3사건 북촌주민 희생자 합동위령제’였다. 그리고 이후 줄곧 행정기관의 후원을 얻었는데, 이는 초반 민주화세력 등을 대신해 제주도 및 제주시청 등 관공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2) 북촌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2003년 제주민예총의 ‘찾아가는 위령제’와 46년 전 ‘꽃놀림’ 재현은 북촌마을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때 ‘찾아가는 위령제’는 ‘해원상생굿’으로 이뤄졌는데, 굿의 사설 내용은 이제껏 가슴 속에 담아왔던 유족들의 ‘한’을 풀어내고,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것으로 북촌 유족들은 4·3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 북촌유족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북촌리 4·3희생자 합동위령제’라 명명하고 매년 443위에 대하여 음력 12월 19일에 위령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무섭다’는 증언을 했다. 여기서 이것이란 ‘꽃놀림의 재현’으로 이런 공연으로 다시 경찰에 불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다. 이군죽 유족은 ‘해원상생굿을 보고 나니,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학살터 중의 하나였던 북촌초등학교에서 위령제를 지내오다, 2007년부터는 ‘너븐숭이’이라 불리는 학살터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이 너븐숭이에는 ‘북촌사건’으로 죽은 어린 아이들이 집단으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애기무덤’¹⁸⁷⁾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이곳을 중심으로 ‘순이삼촌 문학비 및 기념관’ 등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유족들은 정부에 ‘위령제단 건립과 유적지 정비사업’ 명목으로 16억원을 지원받아 2006년부터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단일 유족회로서는 큰 규모의 예산이었다.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갖는 상징성이 컸거니와 다른 편 각 유족회들이 경쟁적으로 기념사업에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이 공원의 명칭은 <그림4-9>와 같이 ‘너븐숭이 43위령성지(현 제주도 조천읍 북촌리 1179-2번지 일대, 9471947㎡(2780평))’로 명명되는데, ‘성지’란 명칭의 부여에서 알 수 있듯이 43학살터를 마을 내 신성 공간으로 구획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마을 공동체 내 공간 질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지는 두고 봐야 할 점이다.

<그림 4-8>북촌마을과 너븐숭이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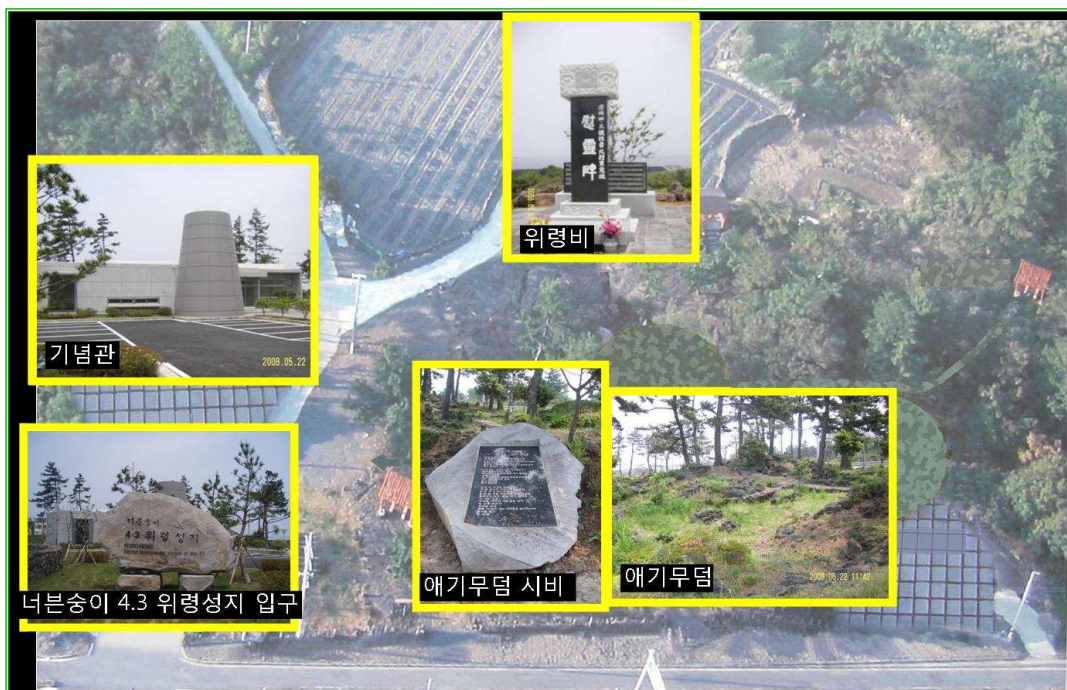
187)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학살당한 어린 아이들의 시신들을 옮겨다 놓고 돌로 만들어놓은 돌무덤이다.

군경의 눈을 피해 시신을 옮겨놓은 것은 북촌 주민 ○○○으로, 북촌유족회 회장 김석보의 어린 세 동생도 애기무덤에 묻혀 있다.



북촌마을의 학살은 주로 마을 안에서 이뤄졌다. 북촌 초등학교는 ‘북촌사건’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장소이며, 너븐숭이에는 이때 죽은 아이들의 ‘애기무덤(아기무덤)’이 있다.

<그림 4-9>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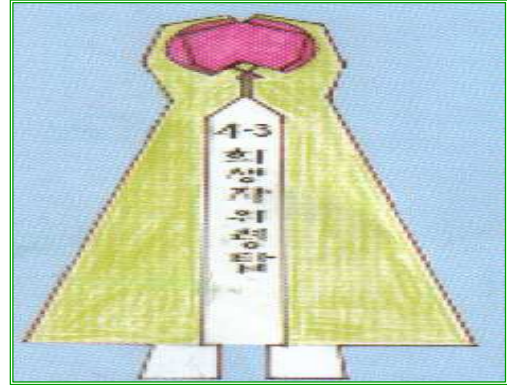


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에는 현기영 문학기념관을 비롯해 기념공간으로 현재 조성 중이다.

<그림 4-10> 북촌위령비



현재의 북촌위령비 상단에는 태극기와 무궁화가 새겨져 있다.



2004년 기획되었던 위령비였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다른 형태의 비가 들어서 있다.

공원 안의 위령탑에는 <그림 4-10>의 왼쪽 그림처럼 ‘제주43희생자 북촌리 원혼 위령비’라고 쓰여 있으며, 후면에는 현기영의 시가 쓰여 있다. 위령비 건수기에는 공권력(군경)에 의한 집단 학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위령비 상단 전면에는 태극기가, 후면에는 무궁화가 새겨져 있다. 원래 2005년 위령제의 자료집에 제시되었던 위령비는 달랐다. 이때 계획된 위령비는 <그림 4-10>의 오른쪽 그림처럼 ‘대립과 갈등의 치욕적인 역사를 청산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며 관민화합을 이루어 해원상생의 역사를 열어가는 의미로 형상화’하기 위해 ‘43사건으로 희생된 북촌주민수 479명을 나타내는’ 높이 479cm, ‘마을 청년 23명이 희생된 1948년 동짓달 열엿새날인 16일을 의미하기 위해’ 윗부분의 폭은 160cm, ‘1948년 설달 열아흐렛날의 19일을 뜻하는’ 아랫폭 190cm의 비를 세우겠다고 했다.¹⁸⁸⁾ 그러나 유족회의 기념공간에 대한 인식부족과 백조일손 등 다른 유족회의 기념공간의 영향, 국가의 지원 등으로 기념공원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다.

188) 비의 모양도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녹색비로 두 손을 모으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 ‘세모는 제주도의 자연(하늘, 땅, 바다)과 삼다도를 뜻하는 것으로 녹색은 하늘, 바다, 산이 푸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좌측 기둥의 손은 관을, 우측 기둥의 손은 민간을 의미하여 윗부분의 합쳐진 빨간색의 원 모습은 해원상생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위령비명도 ‘43희생자위령탑’이었는데, 현재 나타난 비의 형태나 비명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런 공원의 조성은 위령제의 형식에도 영향을 미쳐 유족들의 제사와 위령제를 이원화시켰다. <표 4-9>에서 보이듯 권위적 공원의 존재는 권위적 절차를 요구받는데, 위령제의 절차가 대체로 ‘국민의례-경과보고-고유문-주제사-추도사-헌화분향-폐제 및 음복의 형태’ 등 4·3평화공원의 합동위령제를 닮아가는 한편 유족고사는 그들의 진짜 경험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유족고사의 초혼은 ‘4·3희생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도 위무의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국가의 ‘희생자’와는 다른 희생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9> 북촌위령제의 순서¹⁸⁹⁾

시기	순서
2004년	입제선언-국민의례-초혼-헌화 및 분향-북촌 주민 희생동기 및 사건 진상 보고-주제사-추도사-참회록 낭독-분향-꽃놀이(민요패 소리꾼)-위령곡(놀이패 한라산)-폐제-음복
2005년	<제1부> 유족봉제(09:00-10:00): 초혼-고축 <제2부> 합동위령제: 입제선언-국민의례-목념-헌화분향-북촌리 희생 동기 및 진상보고-주제사-추도사-폐제 및 음복
2006년	<제1부> 유족고사: 분향강신-고축 및 헌작-봉제-유족 헌화 분향 <제2부> 합동위령제: 입제선언-국민의례-초혼-헌화 및 분향-고유문-경과보고-주제사-추도사-폐제 및 음복
2007년	<제1부> 제례행사: 분향강신-초혼-고축 및 헌작-봉제-유족 헌화 분향 <제2부> 합동위령제: 개제선언-국민의례-고유문 봉독-경과보고-주제사-추도사-헌화 및 분향-폐제 <제3부> 유적지 정비 기공식: 개식-유적지 정비사업 설명-기공시삽-폐식 및 음복
2008년	<제1부> 유족조사: 길트기(탐라예술단)-분향강신-초혼-고축 및 헌작-봉제-위안무(탐라예술단) <제2부> 합동위령제 및 위령비 제막식: 개제선언-국민의례-제막-경과보고-고유문-주제사-추도사-헌화 및 분향-폐제 및 음복

유족고사에서 초혼은 망자를 부르는 과정이다. 이때 부르는 망자는 의례의 대상임을 밝히는 것이다. 매년 유족고사에서 불리는 초혼의 대상들 중에는 2007년 이전 국가의 ‘희생자’로 규정되지 못한 사람들도 드러났다. ‘북촌사건’이 군경토벌대에 의한 보복학살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지적되었지만, 행방불명인 혹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라진 희생자들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이 유족고사에서는 드러나고 있었다.

“1948년 동짓달 열셋새 북촌 낸시빌레에서 돌아가신 23위 영혼님, 동짓달 스무 여드렛날 북서모 벼랑 끝에서 돌아가신 영혼님, 12월 19일 이 학교 마당에서부터 동쪽의 당판, 이곳 너븐숭이에

189) 북촌위령제 자료집을 수집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용어들은 자료집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서 돌아가신 영혼님, 12월 20일 함덕으로 소개되어 희생당한 영혼님, 주정공장을 거쳐 육지부 형무소로 가서 행방불명된 영혼님, 경찰서 유치장에서 감금생활 하다가 끌려가서 시도 때도 없이 사라진 영혼님, 이외도 밝혀지지 않은 제주 섬 도처에 잠들고 계신 영혼님, 443위 영혼님이시어, 정성으로 마련한 이 제단에 강림하시어 흠향하옵소서(초혼 중에서).”

형식과 달리 위령제도 줄곧 북촌사건에 대해 ‘위정자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 ‘보복살인’, ‘양민학살’, ‘검은 개 노랑 개니,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 ‘나라가 해방되었으나 나라의 질서가 정리되지 못한 시국’, ‘군인을 보면 몸서리치던 시절’, ‘재판도 절차도 없이 때와 장소도 모르게’ 죽어, ‘살려준다기에 귀순했다가 학살당했던’, 그래서 ‘무남촌(無男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을 쏟아냈다.¹⁹⁰⁾

이런 경험은 국가의 ‘어쩔 수 없었던 주민 희생’과는 다른 맥락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위령제의 연행과정은 겉으로는 국가 의례의 형식에 동의하면서 안으로는 명령들의 ‘노여움’을 상징하고, 이를 푸는 것은 국가의 일정한 보상이라는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위령제는 국가주도의 담론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을 보여주면서 다른 차원에서는 유족들만의 제사를 유지시키면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 백조일손위령제

1) 백조일손위령제의 형성과정

가) 첫알오름 학살과 백조일손묘역의 형성

모슬포경찰서의 예비검속자 총 수는 344명이었고,¹⁹¹⁾ 이들 가운데 252명이 군에 송치되어 희생되었다(4.3사건위원회, 2003: 433). 이들 희생자는 모슬포 경찰서 관할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과 한림지서 관할 한림항 어업

190) 2007년까지 북촌위령제에서 언급된 내용들이다.

191) 검속자 수가 344명인데, 송치, 보석되고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의 합계는 347명으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었다.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1950년 8월 20일 새벽 5시에 총살되었는데, 총살장소는 구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리 ‘첫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이던 굴이었다.

총살 당일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 의해 알려져서 유족 3백여 명이 현장에 집결하여 현장을 목격했던 이경익의 주도 하에 27구의 시신 운구를 시도했는데,¹⁹²⁾ 공포를 쏘면서 출동한 군인들에 의해 시신 인양 작업이 중지되고, 이미 인양된 시신들조차 다시 학살터 구덩이에 넣도록 한 뒤, 6년 동안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으로 출입을 통제해왔다. 계엄당국은 이 총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1956년 3월 군부대의 확장공사로 학살터였던 탄약고가 붕괴되고, 유해가 표출되면서 유족 이성철 중심으로 다시 유해 발굴을 시도했으나 당국에 의해 무산되어 다시 갈등을 빚다가, 1956년 5월 결국 유가족들은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 132구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시신이 있었던 구덩이는 6년 동안 돌덩이로 갇눌러 암매장되어 있었는데, 몇 년동안 흙탕물 속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 유가족들은 양수기로 물을 뽑아내고 하나의 유골이라도 안간힘을 다해 발굴하고자 했지만, 그 사이 시신의 손상은 심해 온전한 유해를 발굴하기가 어려웠다. 이때 한림지역 유족들과 시신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들의 시신이라고 싸웠던 유족들도 있었다.

시신은 자타의 구분은커녕 작은 뼈조차 거의 흔적이 없어서 132개의 칠성판 위에 머리 하나에 등뼈, 발, 다리 뼈들을 적당히 맞추어 132구로 구성하고 대정면 상모리 586-1번지 묘지(483평)를 매입하여 안장하고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지지라 명명했다.

백조일손은 ‘조상이 다른 일백 서른 둘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서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가 되었으니 한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치훈과 이성철이 제안하였다. 이후 매년 학살을 당했던 음력 7월 7일을 제일로 삼아 132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192) 마을 사람들은 1950년 8월 20일 아침 7시경 상모리에 거주하는 이경익과 정공삼 두 청년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던 도중 인근에서 소를 먹이는 유계돌 노인의 귀뜸으로 학살 현장을 목격하고, 이중 정공삼이 유족들에게 비보를 전했다고 이야기 했다.

나) 국가의 탄압과 묘역 해체 명령

백조일손묘역은 1956년 5월 18일(음력 4월 1일)에 유족들의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백조일손묘역에 대한 국가탄압의 상징이 된 백조일손지지 묘비가 1959년 5월에 세워졌다. 잠깐 동안의 4·19혁명은 이들에게 진상조사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지만,¹⁹³⁾ 5·16쿠데타로 진상조사는 중단되었고, 유족들은 묘역의 조성으로 오히려 지나간 세월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제주4·3연구소 1990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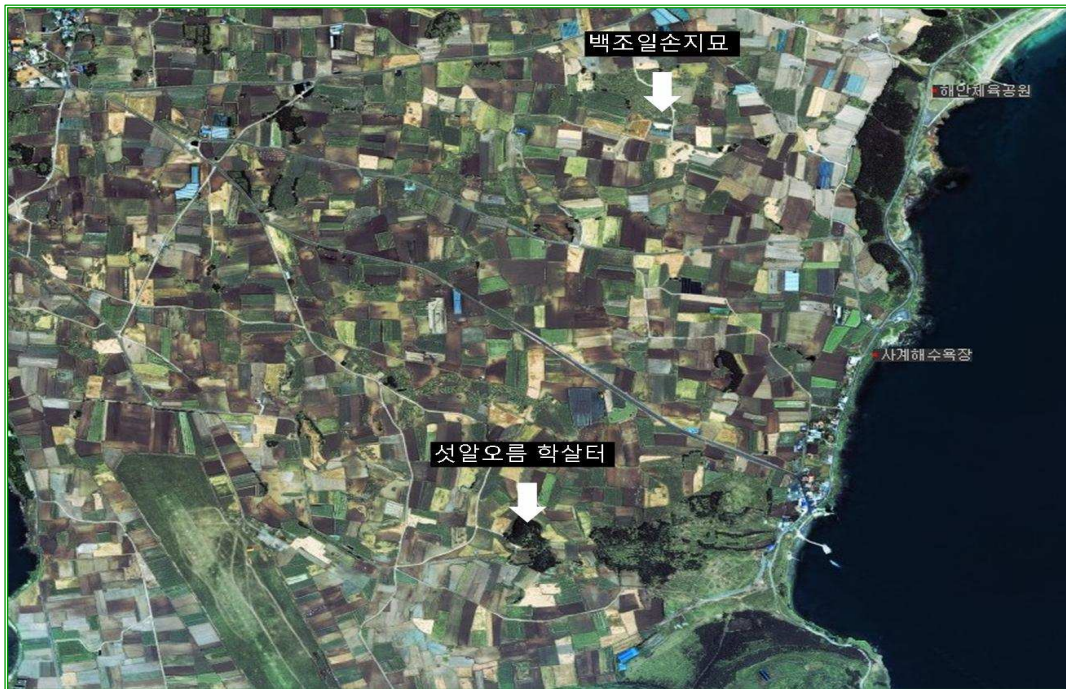
5·16군사정권은 정부가 자행한 학살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경찰에 지시를 내려, 1961년 6월 15일 서귀포 경찰서장의 지휘로 묘비를 파괴하는 한편 집단 조성된 백조일손묘역을 해체하도록 유족들을 강압하였다. 정부의 ‘공동묘역 해체 명령’을 들은 유족들은 반발했지만 일부 유족들은 제2의 학살이 진행될까 23위는 야밤을 이용해서 타지로 이장하였다. 이후 7위는 2002년 4월 5일 41년 만에 다시 원래의 묘역으로 재 이장하였다. 그리고 <그림 4-12>와 같이 현재의 묘역을 조성하게 되었다.

1965년 8월 3일 하모리 이성철을 비롯해 사계리 이영옥, 용수리 고정하 등 21명은 이 묘역에서 제사를 지낸 후 회의를 갖고 회원당 당시 200원씩 거출해서 그해 연말까지 철거된 백조일손지지 비를 재건하기로 결의하였지만 이루지 못했고, 이듬해 제주출신 국회의원 현오봉에게 유족대표 이성철 등은 철거된 비석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거절,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후 매년 음력 ‘칠월칠석’이면 소수의 유족들이 모여 참배를 지냈는데, 1969년 5월에는 백조일손유족회의 서류 일체를 모슬포 주재 육군보안대에 압수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백조일손 유족들은 연좌제의 피해와 군사 정부의 탄압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했다.

백조일손에 대한 사건의 조명은 1989년 4월 소설가 오성찬에 의해 「샘이 깊은 물」 3월호에 ‘백조일손’ 진상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박서동은 그해 6월에 「월간 관광제주」에 백조일손의 희생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193) 허 정 과도 정부의 제35회 임시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자, 민·참의원 의 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장면 민주정부 하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가 진행되던 중 5·16군사쿠데타로 진상조사는 중단되었다.

<그림 4-11> 첫알오름 학살터와 백조일손지묘 일대



첫알오름 학살터는 모슬포, 한림지역 사람들이 예비검속으로 학살당한 장소이다.

<그림 4-12> 백조일손지 묘역 조감도



백조일손지묘역으로 위령비 앞에는 5·16쿠데타로 부서진 비가 전시되어 있다.

다) 백조일손유족회의 결성

처음 백조일손유족회는 4·3사건의 여타 유족들과 자신들을 구분 짓고자 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전쟁의 피해자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성격논쟁은 국가정책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한국전쟁 관련 양민학살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면서 백조일손 유족들도 한국전쟁의 피해자로 자신들을 규정해 나가고자 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백조일손묘역의 희생자와 4·3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려고 하였으며, 이런 논쟁은 1993년 4·3유족회가 백조일손묘역에 대한 위령제를 봉행하는 등 백조일손유족들이 4·3유족들로 편승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백조일손위령제는 다른 유족단위 위령제와 달리 1993년 제1회 위령제부터 1995년 제3회 위령제까지 4·3유족회 주체로 봉행되었다. 이것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첫째, 백조일손묘역과 유족에 대한 국가 탄압 속에서 유족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일찍부터 제주의 대표적인 국가 학살사건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둘째, 백조일손위령제 이전에 유족단위 위령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유족단위로 집단 제사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위령제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백조일손의 경우 묘역에 대한 공적 탄압은 오히려 저항 세력을 키웠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백조일손위령제는 가장 상징적인 저항 기념의례로 성장하였다.

세 번째 전체 4·3유족회가 구성되고, 4·3유족회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요구되어졌으며, 당시 제주도는 각종 기념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던 때였다. 따라서 4·3유족회는 제주도 지원금 900만원 등을 받아 백조일손 제1회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는데, 이후 <표4-10>에서 보이는 것처럼 백조일손은 지속적인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이후 다른 유족회에도 영향을 주어 행정기관의 경제적 지원은 위령제의 중요한 물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표 4-10> 백조일손위령제 정부 지원 현황¹⁹⁴⁾

194) 위의 내용은 백조일손 유족회가 위령제 자료집에 제시한 내용이다.

일자	지원내역과 지원금
1993년 8월	제주도 지원금 900만원→백조일손영령비 건립 및 제1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1994년 8월	제주도 지원금 200만원→제2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1995년 8월	제주도 지원금 400만원→제3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1996년 8월	제주도 지원금 400만원→제4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1997년 8월	제주도 지원금 300만원→제5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1998년 8월	제주도 지원금 400만원→제6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1999년 8월	제주도 지원금 400만원→제7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1999년 9월	제주도 지원금 8,000만원→묘역확장용 부지 매입 998평
2000년 8월	제주도 지원금 400만원→제8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2001년 2월	제주도 지원금 2,000만원→5개월간 1차 유해 추가 발굴
2001년 6월	제주도 지원금 4,000만원→묘역 축성작업 착수 8월10일 1차
2001년 8월	제주도 지원금 400만원→제9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2002년 8월	제주도 지원금 400만원→제10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2003년 8월	제주도 지원금 90만원→제11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2004년 6월	제주도 지원금 1,500만원→안내판 설치
2004년 8월	제주도 지원금 200만원/남제주군 100만원→제12회 위령제 봉행에 쓰임
2004년11월	→백조일손 묘역 진입로 토지매입에 쓰임
2005년 8월	제주도, 남제주군, 북제주군 지원금→제13회 위령제 쓰임
2005년 9월	정부 지원금 1,510백만원 →백조일손, 만백디 첫알오름 학살터 복원정비사업
2006년 7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원→제14회 위령제 봉행

물적 기반은 전체적으로 유족 및 지역유력가 집단들의 성금과 정부의 자금 출연으로 이뤄졌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유족회가 구성되고, 유족단위 위령제가 성립된 시점들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백조일손위령제의 경우 4·3유족회가 초반에 관여했기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위령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백조일손유족회가 처음이었다.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요구도 다른 유족회에 비해 이른 편으로 2000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유해발굴(2001년 2월 20일)과 묘역축성작업에 제주도 지원금을 요청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정부로부터 첫알오름 학살터 복원정비사업(2005년)에 필요한 15여억 원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런 백조일손유족회의 적응방식은 다른 유족회의 기념사업이나 유족회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 형성되는 기념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체로 기념사업은 기념공원부지의 확보, 기념공원 조성, 위령비 및 제단 건립, 진입로 정비, 기념관의 설치 등으로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해발굴과 관련된 사업들도 포함되고 있다.

백조일손유족회가 기념사업 전반에서 지방이나 국가에 대해 선구적인 대응방식을 보이는 이면에는 이들의 담론투쟁과 의례투쟁이 한 몫을 했다. 백조일손유족회는 이미 군사정권시절부터 국가와 갈등을 일으키며, 유족차원에서는 오랫동안 적극적인 담론투쟁을 벌여온 집단 중의 하나였다. 그러한 결과는 오늘날 국가로부터의 가장 앞선 수혜를 받는 결과를 불러왔다.

2) 백조일손위령제의 형식과 구조

민주화 운동은 이들 유족들에게 영향을 주어 1991년 4월 4·3유족회에 의해 5·16 군사정권에 의해 부서진 비(碑)의 복원 문제가 거론되었다. 유족들은 묘비 재건을 결의하고 기금을 모으는 한편 1993년에는 백조일손유족회를 창립하였다. 1993년 8월 24일 ‘백조일손영령위령비’가 군사 정부에 의해 부서진 지 32년 만에 재건되면서 ‘제1회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음력으로 칠월칠석으로 학살된 날이었지만, 이들 유족들에게는 ‘만남’을 의미하는 칠월칠석의 상징적 의미가 중첩되어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날, 즉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로 상징화 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북촌위령제에서도 학살일을 기준으로 기념의례를 지내고 있는데, 유족들에게는 무장봉기가 시작된 4월 3일이 아니라, 학살일에 기준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양민학살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런 점은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적 구성에도 나타난다.

이들의 공간적 변화는 1999년 8월을 기점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파괴 철거되었던 묘비 잔해를 39년 만에 발견 수집하여 파괴현장에 전시하면서 부터였다. 이것은 국가탄압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폭력’과 ‘양민학살’의 담론을 상징적으로 기호화한다.¹⁹⁵⁾ 그러나 기념의례에서는 이런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백조일손의 위령제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와서이지만, 이들 유족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묘역에서 제사형태로 추모 제의를 가져왔다. 이런 점은 백조일손

195) 백조일손 위령제는 199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자료접근의 한계로 2001년 이전의 자료는 구술에 의거하였다.

위령제가 성립되고 난 뒤에도 그 영향이 남아 전통의례와 근대적인 의례가 혼용된 상태에서 위령제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표4-11>에서 보이듯 2004년부터 백조일손 위령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앞선 북촌사례에서도 보이듯 1부 유족제사와 2부 위령제 행사로 이원화되었다.

달리 차이가 있다면 백조일손위령제의 경우 유족제사는 학살터였던 첫알오름을 비롯해 묘역에서의 연행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의례에는 유족들만 참여했다. 위령제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것은 백조일손유족들의 비공식적 기념의례인 것이다. <그림 4-13>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표 4-11> 백조일손위령제의 순서¹⁹⁶⁾

시기	절차
2001-2003년	입제선언-국민의례-초혼-헌화 및 분향-백조일손영령 회생동기 및 경과보고-종교의식(발원문, 추도문, 기도문)-주제사-추도사-추도시 낭송-분향-파제
2004-2007년	<제1부> 유족 봉제사(07:30-09:20) 순지고사(殉地告祀(학살터))-묘역제순(봉사 초혼-고축(헌작)-헌화분향) <제2부> 합동위령제(10:00-11:00) 입제선언-국민의례-헌화, 분향 및 추도시 낭송-경과보고-주제사-추도사-파제선언 <제3부> 음복

<그림 4-13> 백조일손위령제의 광경



백조일손위령제의 모습이다. 분향은 주로 지방정부 인사들이 먼저 한다.



유족들이 백조일손묘역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다.

196) 위의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백조일손의 경우 2004년 이후 줄곧 같은 형식의 위령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위령제의 절차를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례(순국선열 및 4·3영령에 대한 묵념-애국가제창)-헌화분향-추도시-경과보고-주제사-추도사-파제-음복’의 절차는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공간적 순서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념의례의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증언자들에 따르면 유족들은 애초에 어떻게 위령제 절차를 마련해 나가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비슷한 위령제의 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존재하던 국가 기념의례였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기념의례의 형태는 충혼위령제 등 여타 국가 기념의례를 쉽게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고 그 절차마다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가 같지는 않다. 각 절차마다 유족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 나타난다. 어떤 절차는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후에 탈각될 수도 있다. 이것은 기념의례의 모든 형식이 하나의 담론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기 어렵도록 한다. 다만 어느 특정 형식이 주도적으로 담론을 견인하는 측면들이 있음을 추측해 한다. 특히 백조일손위령제에서 4·3영령은 국민의례를 통해 한국의 근대국가형성 시기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희생으로 4·3의 죽음을 승격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난다.¹⁹⁷⁾ 때문에 기념 공간 및 기념의례는 다소 모순되어 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을 기억하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국가적 격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백조일손묘역의 위령비를 통해서 외연적으로 드러난다.

라. 행방불명인 진혼제

1) 행방불명진혼제의 형성과정

2000년 행방불명인 진혼제가 처음으로 제주사회에 나왔을 때 주체는 제주4·3

197) 초창기 반공적 성격의 4·3유족회도 이와 비슷한 욕구를 표출한 바가 있다.

행방불명인유족회(이하 행불인 유족회)였다. 행불인 유족회는 2000년에 구성되었는데, 이듬해 2001년 3월 3일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가 제주도4·3사건희생자로 통합을 이루면서 전체 유족회로 흡수되었다. 제주도4·3사건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명칭에서 ‘민간인’이란 말이 소멸된 것은 이들 행불인 유족들을 흡수하면서 일어났는데, 이로써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일명 4·3유족회)는 4·3희생자에 대한 확대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

새롭게 탄생된 4·3유족회는 행불인 희생자 유족들의 참여로 인적 자원에서 큰 동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로써 4·3위령전야제례를 비롯해 행방불명인진혼제, 대전골령골 위령제, 육지형무소 옛터 순례, 대마도 4·3수장희생자 위령제 및 조사 등 미완의 4·3해결문제에 큰 역할을 했다.¹⁹⁸⁾

행불인 유족회의 4·3유족회로의 흡수는 행방불명인 희생자의 신원회복과 그 유산을 찾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행방불명인 수형인에 대한 4·3희생자 선정은 2007년 대부분의 수형인 희생자들이 4·3사건희생자로 선정되면서 4·3희생자의 확대된 개념을 쟁취할 수 있었다.¹⁹⁹⁾

또한 유해발굴사업 등을 통해 이제껏 확보하고 있지 못했던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유해들을 어느 정도 확보함으로써 ‘희생’의 부당성을 실제 증명할 수 있게 되어 4·3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결과들은 전체 합동위령제를 포함해 4·3유족회가 치르고 있는 양대 기념의례 중의 하나인 행방불명인 진혼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⁰⁰⁾ 특히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2007년 말에 4·3희생자로 규정되면서 4·3유족회 주체로 ‘전국 형무소의 흔백모셔오기 행사’를 통해 진혼굿을 하고 흔백을 4·3평화공원에 안치시킨 문제는 향후 4·3평화공원 내의 개인표석 문제와 더불어 향후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전체 4·3기념의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8) 전국 형무소와 학살터 순례는 이들에게 행방불명인의 유산을 찾는 중요한 일이었다.

199) 성우회 안보평론위원이며 예비역 육군소장 한광덕은 조선일보 2002년 12월 7일자 기고에 “남로당의 핵심간부와 무장대의 두목만 빼고는 심지어 당시의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수형자들까지 모두 희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 다른 하나의 기념의례는 앞서 보았던 4·3위령전야제례이다.

2) 행방불명인 진혼제의 형식과 구조

그동안 이 행방불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등의 자료로 인해 수형인 행방불명의 실상이 밝혀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²⁰¹⁾ 그러나 수형인 명단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없다.

행방불명자 진혼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념대상은 형무소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마포형무소 425신위, 인천형무소 286신위, 서대문형무소 61신위, 대전형무소 300신위, 대구형무소 499신위, 목포형무소 466신위, 광주, 부산, 김천, 마산, 부천형무소 533신위, 제주지역 1,159신위 등이다.

이들에 대한 기념의례는 매년 4월 1일에 제주시 주정공장 옛 터에서 이뤄지는데, 사실 4월 1일이란 시간적 위치는 다른 행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었다. 4월 3일에 행해지는 합동위령제를 염두에 두고 4월 2일에는 유족위령전야제례가, 그리고 4월 1일에는 이 행불인 진혼제가 배치되었다. 실제 유족들이 4월 1일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유족들에게 행방불명인 희생자에 대한 기념일의 위치는 사망일을 대신하는 ‘생일날’이다. 유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망날짜와 유해를 확보하는 것이다. 유해가 없어 묘를 만들지 못하고 성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망날짜와 유해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주정공장은 그 출발점이 되었다. 주정공장은 행방불명인 수형자들이 전국의 형무소로 분산 배치되기 전까지 머물던 상징적 수용소였다. 다른 기념의례들이 학살터나 매장지, 묘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데 비해 행방불명인 진혼제가 주정공장 옛 터에서 연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망이 시작되는 시공간적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물은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데, 유족들은 이 공간을 원초적 희생이 시작되었던 곳이자, 또한 국가의 불법 재판이 자행되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행방불명인 진혼제의 형식적 절차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용적 구성에는 잘 드러나 있다. 행방불명인 진혼제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201) 이에 대해서는 박찬식(2008)의 글을 참조할 것.

나뉘어져 있다. 1부는 유족들의 유교식 제사의례로, 2부는 식전행사를 포함하여 진혼제로 행해지고 있다. 1부는 유족들만의 의식이라면 2부 진혼제는 합동위령제의 형식을 모델로 하여 사회적으로 치러지는 기념의례다. 진혼제는 ‘개제-헌화 및 분향-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및 4·3영령에 대한 묵념)-고유문-진혼사-추도사-추모시-헌화 및 분향-폐제’의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는 행방불명인 주체인 4·3유족회가 합동위령제에 오랫동안 관여해오면서 기념의례에 대한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상 행방불명인 진혼제는 위령제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곳이나 추모제 등의 서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행방불명인 진혼제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의례사를 통해 분석해보면 합동위령제나 다른 유족단위 위령제와는 다소 다른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념의례에서 나타나는 유족들의 경험은 시간적 구성을 보이는데, 첫 번째 시기는 희생자가 주정공장 수용소에 이유 없이 끌려갔어야 했던 시기, 두 번째 시기는 주정공장 수용소에 불법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 취조, 굶주림 등의 비인간적 대우와 불법 재판을 받아야 했던 시기, 세 번째는 제주 섬을 떠날 때, 가족에게 한 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가야 했던 시기, 네 번째는 형무소에서 보내온 편지나 엽서 한 장이 마지막으로 되었던, 그리고 다섯 번째 시기는 죽은 날짜, 장소, 학살명령자, 실행자도 모르는 미문의 상태, 여섯 번째 시기는 유족들이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살아오며 떠돌고 있는 구천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한 채 60세 촌로로 늙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까지 긴 서사적 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기념의례들이 언어적으로 구성될 때 상징적 구성에 치중하는 반면, 이 행방불명인 진혼제는 적절한 상징적 구성 속에서 하나의 시간적 줄거리를 언어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흡사 제주의 전통굿에서 드러나는 사설의 내용을 닮은 것으로 실제 행방불명인 진혼굿이 펼쳐질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연유담음을 통해 전개되었다.

3) 행방불명자 진혼굿의 형식과 구조

4·3유족회는 매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형무소 옛터 및

학살터 현장을 찾아 위령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유족회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사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4·3유족회는 ‘전국 형무소 옛터 및 학살터의 흙 한줌 혼백 모시기’ 행사를 통해 4·3평화공원 내에 안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말 행방불명인 수형인들이 4·3사건 희생자로 선정되면서 4·3평화공원내의 개인표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의 유해 및 혼백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였다.

혼백모셔오기 행사는 2008년 3월 30일에 ‘전국 형무소 및 학살터 혼백 행사 출정식’을 시작으로 4·3유족회 전국 및 도내 각 지역 유족회가 혼백을 모셔서 31일에 제주에 도착하는 것으로, 31일 저녁에는 <그림 4-14>와 같이 관덕정 광장에서 주정공장 옛터까지 관을 들고 노제를 치른 뒤 뒷날 4월 1일에는 조문객을 맞고 행방불명인 진혼굿을 펼친 뒤 4·3평화공원 내 수장고에 혼백을 안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행사였다.

<그림 4-14> 행불인 수형인 희생자 선정 문제



2002년 수형인 포함 유족궐기대회의 모습이다.



2008년 3월 31일 전국 형무소 및 학살터 등에서 모셔온 혼백에 대한 노제가 관덕정 등에서 열렸다.

행방불명인 진혼굿은 주정공장 옛터에서 열렸는데, 제주 칠머리 당굿 소속 이 용옥 심방이 맡아서 집전했다. 이용옥 심방은 이전부터 4·3관련 굿을 진행해오던 세습무였는데, 진혼굿은 전통굿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굿의 텍스트이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4·3관련 굿은 원초적 사건발발 이후부터 줄곧 행해졌지만, 그 텍스트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거나

채록되어 있지 못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진영에서 4·3관련 곳 시연을 했지만, 그것은 유족들이 본주가 되어서 했던 곳은 아니었다. 그것은 곳 형식의 하나인 사설의 구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족들이 본주일 경우 그 구체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가급적이면 사가의 곳을 현장 관찰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만, 곳이 정기적으로 연행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치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공개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행방불명인 진혼곳은 행방불명의 원초적 사건 발발 이후 처음으로 유족들이 본주가 되어 열리는 곳판으로 4·3사건의 민중적 경험의 어떻게 전통의례에 기대어 전승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 행방불명인 진혼곳은 초감제 중 ‘차사영맞이’만을 연행한 것인데, 전체 절차는 앞서 3장에서 보았던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 형식에 대한 설명은 이 장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심방의 사설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이 전승되는지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방불명인 진혼곳에 나타난 ‘연유담’과 ‘영게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주의 전통곳이 그러하듯 이 행방불명인 진혼곳도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줄거리의 시작은 곳을 하게 된 연유를 유족들의 입장에서 (신과 원혼들에게) 구송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연유담에서는 유족들의 마음 속에 담아 있던 ‘한’을 토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는데, 다음은 행방불명인 진혼곳에서 나타난 내용들이었다.

<그림 4-15> 행방불명인 진혼곳의 연유담 장면



심방이 연유를 닦으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4-16> 행불인 진혼굿의 유족들



심방의 연유닦음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유족들의 모습이다.

<연유담음>²⁰²⁾

(중략)

어느 개인 집안에서 개인 개인 헨 이 공서 올리~ 아닙니다.

(어떤 개인 집에서도 이 의례를 올리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정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 있다는 맥락

무자 기축년 육십년 전 그 당시 아버지우땡 얼굴 모르고 어머님 배소곶에 잇당

(무자 기축년 60년 전 그 당시 아버지라고 해도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 배 속에 있다가)

유복자로 솟아난 즈손이 육십이 넘고 환갑이 돼엿수다.

(유복자로 태어난 자식이 60세가 넘고 환갑이 되었습니다.)

무자 기축년 43사건 때에 아무 췌 잇이~ 다 살저허연 영 허당

(무자 기축년 43사건 때 아무 죄 없이~ 다 살려고 하다가~)

이 주정공장 잇이난 일로 문밖 돌아당 이디서 다 끌어내영 배에 태완 나간 영가님네.

(이곳에 주정공장이 있었는데 여기로 모두 데려와 여기서 끌어내어 배에 태워서 나간 영혼님네)

배에 태와 나가고 죽여부는~ 영혼님네 총살시켜 죽여불고(심방의 울음)

(배에 태워서 나가 죽여버린~ 영혼님네 총살시켜 죽여버리고)

(중략)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되고 영허난 앞장선 43유족회 마련하고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되는 43유족회가 앞장서서 마련하고)

모든 차례 다 뵙안 오늘날까지라도 저 평화공원 마련하곡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오늘 저 평화공원에 (자리) 마련하고)

육지방면 형무소마당 문밖 찾앙 강

(육지방면 형무소 모두 찾아가서)

아이고~ 형무소랑이라도 가면 하당 못해영 그자 유물이라도 잇영

(아이고~ 형무소라도 가면 하다못해 유물이라도 있을까)

어느 팔흐나나 하다 못행 아이고 다리가 나와서 손가락이 하나라도 나와서(심방의 울음)

(어느 팔 하나, 하다 못해 아이고~ 다리가 나오지도, 손가락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조상님네영 허영 골아지카부덴 허영

(조상님네 하면서 불러볼까 했는데)

(중략)

고생고생 견더수다. (심방이 수건으로 울음을 닦음)

(고생고생 견뎌습니다.)

(중략)

어젯 날부터 삼십일 날 비행기 탕 저 육지방면 허다못해영 그 자리 형무소 잇어난 자리

(어제 30일 날 비행기를 타서 저 육지 방면 하다못해 그 자리 형무소가 있었던 자리)

202) 제주어법에 맞춰 작성하였다.

학살터 있던 자리에 흙이라도 한 줍씩 무스거에 담젠허난
(학살터 있었던 자리 흙이라도 한 줍씩 어디에 담으려고 하니)

아이고~ 유족들은 어느 집이 농곡 아들이영 며느리영 딸이 기영
(아이고~ 유족들은 어느 집은 하고, 아들과 며느리, 딸이 열심히 해서)

그 당시 간간무중되어 일생 막고난
(그 당시 감감무중되어 일생을 마치니)

가숙들이영 문딱 모다들영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어)

어젯날 저 공항으로 해영 간 모션오람젠 허난
(어제 저 공항으로 출발해서 갔다 모셔온다고 하니)

그 당시 삼천사백구십사명명 행방불명된 가족들
(그 당시 3493명 행방불명된 가족들)

기다리고 기다려 관덕정으로 문딱 옛날 꺼 상여 허단
(기다리고 기다려서 관덕정으로 모두 옛날 상여 해다놓고)

영가 연복 넘어가 추도기들 들르고 두건들 쓰고 허연 곁아가난
(영가 연복 넘어가 추도기를 들르고 두건을 쓰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라가난 죽어분 부모가 살아 돌아 오람신가
(((유해)가 오니 죽어버린 부모가 살아오는가?)

이거 육십년 동안 간간무중되어, 건 중삼 모건
(이거 60년 동안 감감무중되어, 건에 중삼에, 모건에)

우리 부모 조상님네 오늘부터가
(우리 부모 조상님네 오늘부터)

이제 이 고향 산천오랴구나 허영 앓암수다.
(이제 이 고향 산천오랴구나 하면서 앓습니다.)

사건 난 무자기축 60년전 불쌍한 영가님네,
(((4.3)사건 난 무자기축 60년 전 불쌍한 영가님네)

*이때 유족들이 나서서 좌정한 조상신에게 절을 한다

연유담음의 내용은 이렇다. 무자 기축년 60년 전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유복자가 60세가 넘는 환갑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희생 원인이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죄스러움을 가지고 정성을 모아 곁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4.3사건 때 아무 죄 없이 주정공장에 갇혔다 제주 섬을 떠날 때 수장되거나 총살되고, 감감무중 되었다가 일생을 마친 혼백들을 4.3유족회가 앞장서서 전국형무소를 돌며 흙 한 줍에 혼백을 모셔오는데, 그때 유족들의 심정은 죽

어버린 부모가 살아오는 것인가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유족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기념의례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유족들의 현재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전 곳에서는 ‘치병’과 관련하여 이 대목을 구성했다면, 현재의 4.3관련 곳은 살아남은 자의 ‘한’에 토대를 두고 있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유족들의 삶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상의 혼을 해원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러한 과제가 잘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대답은 영계올림의 절차에서 나타나는데, 영계올림은 좌정한 원혼들이 심방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궁금해 하는 사망경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영계올림>

한창 나비 놀듯 새 놀듯 땡기던 독한 시국 일어나난
(한창 나비 놀듯 새 놀듯 다니다 독한 시국이 일어나니)

제주 향교 인근 학교에, 옛날 상고자리산디 잠시 수용되었다가
(제주향교 인근 학교에, 옛날 상고자리였던 곳에 잠시 수용되었다가)

주저를 받은 후에 이 주정공장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가 여기서 한 시간도 못 견디언
(취조를 받은 후에 이 주정공장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가 여기서 1시간도 못 견디어)

하도 힘드난, 남자들은 둘러매영 옷을 문밖 벗겨 걸어가게 하곡,
(매우 힘이 드니, 남자들은 둘러매서 옷을 모두 벗겨 걸어가게 하고)

몽둥이 들렁 마구 후리치며 다울리우고
(몽둥이 들어 마구 후리치며 쫓고)

매맞아도 고통 받는 소리가 나민,
(매를 맞아도 고통스런 소리를 내면)

여자들한테 저렇게 너네들도 고통주켄 허영 겁주고 영허는디
(여자들한테 저렇게 너희들도 고통을 주겠다면 겁을 주고 이러는데)

아이덜토 아기덜토 죽이고 남편은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허영 암매장 당하곡,
(아이들도 아기들도 죽이고 남편은 정뜨르(현 제주국제공항)비행장에서 총살하여 암매장 당하고)

여자는 주정공장에서 허당 못해영 도태되어 이 자리서 나는 여자도 잇어지곡
(여자는 주정공장에서 하다 못해 도태되어 이 자리서 죽는 여자도 있고)

특히나 옛날 농업고등학교 학창시절 심어오곡
(특히 옛날 농업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잡아오고)

칠팔년 칠팔석 한창 나이에 나비 놀듯 새 놀듯 땡겨시문
(17-18세 한창 나이에 나비 날 듯, 새 날 듯 돌아다니고 있으면)

심어당 간혀놓고, 켜라도 썩원~햄시만은
(잡아다 가뒤편고, 켜라도 쓰워서)

아무 켜 엇이 간혀난 아이고~ 이 엇날 주정공장 잇인 때 심어당 문딱 간혀 놓앙
(아무 죄 없이 간혀니 아이고~ 이 엇날 주정공장 잇을 때 잡아다 모두 가뒤편고)

배고프고, 어느 가족 면회라도 오랑
(배고프고, 가족 중 누가 면회라도 오면)

밥이라도 영 오라지른 먹고
(밥이라도 가지고 오면 먹고)

안 경허면 배가 편편 물론 듯
(안 그러면, 배가 고파서 말라)

아이고~ 물도 못 먹게 허영
(아이고~ 물도 못 먹게 하고)

옷 베끼명 답뚜리 하곡
(옷을 벗기며 취조를 가하고)

(중략)

산지 축항더러 문딱 질러 나가곡
(((제주시)산지축항(주정공장 옆)에 모두 달려 나가고)

어떤 영혼들은 낮이 나강 신라정더러 싯건 배 떠날 때에 주정공장아- 산지축항아-
(어떤 영혼들은 낮에 나가서 □□□에 싯려 배 떠날 때에 주정공장아~ 산지축항아~)
*□□□ 배이름으로 추정됨

아이고~ 우리도 오늘 나가면 다시 살앙 이 산지축항 다시 한 번 걸어나지카 오라나질건가
(아이고~ 우리도 오늘 나가면 다시 살아서 이 산지축항 다시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 올 수나 있을까?)

배 탕 나가명 정든 한라산아 잘 잇이라
(배 타고 나가면서 정든 한라산아 잘 있어라)

한라산 천지연 나강 살아그난 돌아오라
(한라산, 천지연, 나가서 살아서 돌아와라)

죽영이나 오라지카
(죽어서나 올까)

가숙 농아동 가는 불쌍한 영혼님네도 있고
(가족 두고 가는 불쌍한 영혼님들도 있고)

입장할 여영 늑신네 부모들 놓앙
(혼인한 마누라, 늑은 부모 놔두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님아 난 오늘은 떠남수다 떠남수다.(심방의 울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 오늘 떠납니다, 떠납니다)

아이고~ 잘 살암십서 말 한마디 못하곡 가명
(아이고~ '잘 살고 계십시오' 말 한디디 못하고 가면서)

눈물은 내리면 한강수가 되고, 바당 가운데 행 가난
(눈물이 내리니 한강수가 되고,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니)

바다를 흐쓸이라도 반을 나뉘
(바다에서 (사람을)조금이라도 반으로 나뉘서)

배에서 밀려 바당더래도 대껴붙고
(배에서 떠밀려서 바당에 던져버리고)

배에서 총살시경 너네들도 왕 보랜 영허엄찌
(배에서 총살시키고는 너희들도 와서 보라고 하는데)

저 한강 바다 시퍼렁바당들에 앓아 데겨붙면
(저 한강 바다 시퍼런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이고~ 이추록 죽지 말앙 말이라도 들엄시문 살려주카
(아이고~ 이렇게 죽지말자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살려줄까)

가는 게 육지방면, 나가난 흐밧디 간 문딱 놓은 게 아니랑
(가는 곳이 육지 방면, 나가보니 한 곳에 모두 두는 게 아니라)

(중략)

열대여섯날 념영 일곱여덟 살 난 일곱 살 영가님네
(16세 넘어 17세-18세 난 영혼님들)

허던 공부 놔두고 그 당시엔 학교감수덴 집에서 나강
(하던 공부 놔두고 그 당시에 학교간다면 집에서 나갔던)

모음 잇어나볼면
(마음이 있다면)

이 날이나 오카 저 날이나 오카
(이 날이나 올까? 저 날이나 올까?)

이 시간이나 일로 연락이나 올 건가
(이 시간이나 여기로 연락이 올 것인가?)

아이고~ 저 시간이나 연락이 올 건가
(아이고~ 저 시간이나 연락이 올 것인가?)

(중략)

어느 주변 산에서 난 간 판 산골짜기 간 데켜 부난
(어느 주변 산에서, 깊은 산골짜기에 던져 버리니)

아이고~ 가마귀 배에나 가시명 짐승 입에나 가시명
(아이고~까마귀 배에나 갔나?, 짐승 입에나 갔나?)

(중략)

신체 일부 훼손시경 못 찾고
(신체 일부 훼손시켜 못 찾고)

(중략)

이 고향에서는 경허도 돌아가신 신체라도 찾은 가족들은 산에 강 군벌이라도 하곡
(이 고향에서는 그래도 돌아가신 신체라도 찾은 가족들은 묘지에 가서 성묘라도 하고)

조손들신디 니 할아버님이영 영허주마는
(자손들에게 '너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도 해주지마는)

(중략)

이 사월달만 돌아와가도 아이고~ 추웁 바싹 언디
(이 4월만 돌아와도 아이고~ 추워서 몸씨 뽕뽕얼었는데)

주정공장 이 자리로 오랑 꺾어왔언 나가곡
(주정공장 여기로 와서 끝나가고)

사월만 돌아오라가도 생각이 나고 죽기 생전인덜
(4월만 돌아오면 생각이 나고 죽기 생전인들)

4.3사건을 잊어불멍
(4.3을 잊어버릴까)
*절대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돌아왕 아이고 요런 시상이 돌아오면 어떤 ㄱ랑 살멍
(다시 돌아와 아이고 이런 세상이 돌아오면 어떻게 말하면서 살고)

이래강 곱앙 저래강 곱안
(여기로 가서 숨고, 저기로 가서 숨고)

아맹이나 살아나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닌 헛던 일도 허애수댄 거짓말 하곡
(하지 않은 일도 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산에 강 곱고 땅 소곱에 곱고
(산에 가서 숨고, 땅 속에 숨고)

영허당도 걸리면 다 이 자리로 꺾어당 육지방면으로 강
(그렇게 하다 걸리면 다 이 곳으로 끝어다 육지방면으로 보넌)

각 형무소마다 인간 떠난 영가님네
(각 형무소마다 인간 떠난 영가님네-죽은 영가님네)

아이고 조손들 잘 되난 우리 조상님 우리 부모님네
(아디고 자손들이 잘되니 우리 조상님 우리 부모님)

그대로 내불면 어떻 ㄱ랑 살랜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라고)

허다못해영 시체를 못 찾아도 돌아가셔난 학살터에라도 간
(허다못해 시체를 못 찾아도 돌아섰던 학살터에라도 가서)

(중략)

차사영맞이들에 다 내립써

(생략)

<그림 4-17> 조상신에게 절을 올리는 유족들



영혼들이 좌정했다고 심방이 알리자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유족들의 모습이다.

영계울림의 내용은 주정공장 수용소 등으로 끌려간 이야기,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 이후 전국형무소로 끌려가는 과정과 이후 학살당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한창 나이에 아무 죄 없이 독한 시국을 만나 주정공장 수용소로 끌려와 비인간적인 고문과 배고픔 등으로 고생하다 정뜨르(현 제주국제공항) 비행장에서 총살당해 암매장 당하거나 전국의 형무소로 배치되어 학살된 과정을 담고 있다. 이때 희생자들이 제주를 떠날 때의 심정이 극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산천을 두고 떠나는 심정, 가족을 두고 떠나는 심정,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심정 등이 심방의 울음과 더불어 굿 전개상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영계울림의 과정을 통해 희생자의 이야기를 통해 유족들은 사망의 경

로와 단절되었던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복원한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구성작업이자 복원장치로 볼 수 있다. 이 영계올림의 과정 이후 희생자들의 원혼을 해원하는 질치기가 이뤄졌는데, 이 질치기의 과정은 바로 망자와 산자의 해원과 더불어 상생하는 구조를 완결 짓는 과정이자, 단절된 경험을 완성짓는 절차이다. 이것은 사회의 극적인 사건들에서 의미가 발생하게 하는 과정이자 과거경험의 복원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불법성을 폭로하는 실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림 4-18>은 질치기의 한 장면이다.

<그림 4-18> 행불인 진혼굿의 질치기 광경



질치기를 하고 있는 심방의 모습이다.

마. 무장대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의례

1) 이덕구에 대한 기념의례의 등장

이덕구는 김달삼에 이어 무장대를 이끌던 상징적 존재였다. 김달삼이 해주대회 참가로 이덕구가 무장대의 책임자가 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8

년 11월 중순 경부터 벌어진 9연대와 2연대의 강경진압작전에 이어 1949년 3월 설치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의 ‘산악소탕전’과 ‘귀순공작’의 결과 무장대 세력은 거의 궤멸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덕구는 1949년 6월 7일 제주경찰서 화북지서 김영주 경사가 지휘하는 경찰부대와 교전 중에 사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⁰³⁾ 사살 후 이덕구 사체는 제주경찰서에 보관되었는데, 경찰은 이덕구의 사체를 나무 십자가에 묶어 하루 동안 제주경찰서 정문 앞에 전시했다가 화장 처리했다.²⁰⁴⁾ 경찰은 남수각이라는 지역에서 화장한 후 강 실의 부친에게 ‘빠라도 수습하라’고 했지만, 이튿날 비가 많이 와서 다 쓸어버렸다는 것이다.²⁰⁵⁾

이덕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사항이었으며, 무장대를 기념하는 의례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되었다. 이들의 문제는 언제나 4.3문제에 있어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으며, 4.3기념의례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기념의례와 기념공간들이 <그림 4-19>처럼 그들 유족들에 의해 제주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2007년 12월 30일에 이덕구 및 이덕구 가족 등 29명의 귀양풀이를 하는 곳이 벌어졌다. 이 곳의 본주는 일본에 살고 있는 이덕구의 조카 이복숙이었다. 이덕구 가족의 귀양풀이는 이덕구를 중심으로 이덕구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식 등 4대에 걸친 가족들을 귀양풀이를 하는 곳이었다. 곳은 양창보 심방과 정공철 심방이 딸아서 했는데, 양창보 심방은 본주 이복숙과 단골 관계로 양창보 심방이 20여년 동안 일본에 살 때 이웃이었다.

이날 귀양풀이 곳은 제주시 봉개동 회천마을 673번지에 조성된 이덕구 가족 묘지에 묘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로 이뤄졌으며, 곳은 제주시 대홀에 있는 곳당에서 일본에서 온 친지들과 제주에 남아 있는 친지들이 함께 모여 참여했다. 이 귀양풀이의 등장은 상징적이나, 이덕구 가족 및 친지들의 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덕구의 묘지와 묘역이 제주에 안착함을 의미하는 것

203) 이덕구 사살에 고무된 국방부는 제2연대의 활약으로 이덕구를 사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동아일보, 1949년 6월 10일자), 이덕구는 경찰의 작전에 의해 사살된 것이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2003: 333).

204) 외삼촌의 주검을 확인한 외조카 강실은 ‘장마철에 아침부터 매달아 놓으니 저녁때쯤 되자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이었다’고 기억했다(4.3사건위원회, 2003: 334).

205) 강실은 현재 제일본 유족회장으로 이덕구의 외조카이다.

이었다.

2) 이덕구에 대한 기념의례의 의미

이덕구 가족 묘지의 정식 명칭은 ‘전주이씨 계성군파 입도 7대 처사□□□가족 묘지’로 되어 있다. 묘비를 살펴보면 이덕구만이 아닌 그의 형제들 이호구, 이좌구, 이덕구와 그의 조카 이순우 등의 무장활동 등의 비문에 드러난다.

이 묘지는 이덕구의 조카뻘이 되는 이복숙과 손녀뻘 되는 이명자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다. 묘지 입구에는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덕구를 포함하여 이덕구의 형제인 이호구, 이좌구 및 조카 이순우 등을 ‘불쌍한 백성과 함께’하고자 했던 ‘신촌 마을의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다.

각각의 비문에는 4·3사건과 관련하여 무장봉기, 민중항쟁 등의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이덕구의 묘비에는 4·3사건이 민중봉기였으며 이덕구는 ‘민중봉기’의 선두에 섰던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덕구의 아들과 부인은 1948년 12월 26일에 보복 학살되었는데, 당시 이덕구 아들의 나이는 7세의 어린 나이였다. 그의 비문에는 ‘4·3광풍에 희생되었다’고만 적혀있다. 이덕구로 인한 보복학살은 부인과 아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묘비의 기록을 보면 1948년 12월 26일에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몰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덕구 묘비>

공은 일본 오사카 일신상업학교 립명관대학을 졸업 군임관 대위 제대 후 해방 전 귀향하여 청소년 및 민중지도에 힘쓰셨다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체육 교편 생활 중 4·3민중항쟁이 발발하자 31지대 지휘관으로 **민중봉기의** 선두에 서셨으며 이후 총지휘관으로 추대되었고 1949년 양6월 9일 16시 623고지에서 서거하셨다. 配 제주양씨 厚湘은 父 基和 母 金彭淑공 자녀시니 1923년 12월 27일 출생하시고 1948년 12월 26일 4·3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이덕구의 아들>

공은 전주 후인으로 考 휘 덕구요 妣는 양후상이니 서기 1942년 3월27일에 출생하였다. 제주에 불어닥친 4·3의 광풍에 희생되었으니 애석하도다 서기 1948년 12월26일 운명하셨다. 고인의 넋을

위로하며 명복을 비읍니다.

비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유족들은 ‘4·3사건이 민중항쟁이자 무장봉기’로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무장대 후손들의 등장과 기념의례의 전개는 주목해 볼만 한다. 이들은 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들로 한국의 정치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전통의례를 빌려 무장대 희생자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형의 변화에 기대어 최근 무장대 후손들이 합동위령제에 참여하고 지방정부 혹은 국가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 국가 기념의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무장대 희생자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 4-19> 이덕구 가족 묘지와 이덕구 비



2007년 재일교포 이복숙에 의해 제주시 봉개동 회천마을에 이덕구의 가족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2007년 12월 말에 세워진 이덕구 비석이다.

3. 해원상생곳의 연행과 의미

유족단위 위령제가 확산되는 한편으로 제주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뚜렷한 두 개의 기념의례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선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거리극으로 만들어진 거리굿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학살터 현장을 찾아가 지내는 해원상생굿이었다.

해원상생굿의 기원은 2002년 다랑쉬굴 위령굿에서 착안되었다. 제주민예총은 다랑쉬굴 발굴 10주년을 맞아 다랑쉬굴에서 위령굿을 시행했다. 다랑쉬굴은 발견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4·3의 실체를 알리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후 정부가 굴을 봉쇄하면서 또 다른 탄압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이런 현장에서 굿을 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제주사회의 큰 이슈였다. 학살터나 은신처 등 4·3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공개적인 추모 제의를 벌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기획이었다.

이러한 기획은 당시 합동위령제의 진부함을 느끼고 있던 많은 제주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제주민예총을 비롯해 민주화 진영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적잖은 해결책을 시사해 주었다. 민주화 집단들은 정권교체와 그로인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의 문제가 점점 제도화 될수록 그들이 주장하던 ‘민중항쟁’담론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때 해원상생굿은 항쟁적 담론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좋은 장치로 부상하였다. 특히 희생자 유족들이 큰 인적자원을 이뤘다.

다랑쉬굴 해원상생굿이 계기가 되어 매년 4월에는 학살 현장이나 집단 매장지 등 4·3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해원상생굿을 연행하게 되었다. <표 4-12>와 같이 2008년까지 총 6차례나 시행해 왔다. 그리고 이 해원상생굿은 제주민예총의 새로운 정체성을 틀 잡아주고, 전문적 소양을 통해 주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해원상생굿은 보통 위령굿으로 불렸지만 대개 그 형식면에서는 ‘시왕맞이’를 따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차사영맞이’만을 주로 연행해는데, 희생자의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이 주체로 참여할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굿의 장치 중 열명을 통해 나타났는데, 열명은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것으로 열명된 자만이 해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장치였다. 강소전(2004)은 합동위령제에서 조상들의 위패를 찾고자 하는 유족들의 열망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매본짱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²⁰⁶⁾

<표 4-12> 제주민예총의 해원상생굿 현황²⁰⁷⁾

명칭	일자	장소	내용
54주년 제9회 예술제	다랑쉬굴 위령굿	2002.4.5	다랑쉬굴 현장 위령굿 -춤보시-시보시-소리보시-참배 분향 또는 소지사름-다랑쉬표석 건립-고사/설치미술전
55주년 제10회 예술제	찾아가는 위령제 -43해원상생굿	2003.4.5	북촌리 마을 안 당앗학살터 빈상여놀이(결궁)-놀이패 한라산 마당극<꽃놀림>공연-나눔국수-혼 불러오기-시낭송-소리굿-몸굿- 위령굿 -분향배례 및 소지사름-뒷풀이
56주년 제11회 예술제	찾아가는 위령제 -43해원상생굿	2004.4.5	화북 곤을동43초화마을터 설치미술전/증언- 위령굿 -소지사름-거옥대(방사탑) 쌓기
57주년 제12회 예술제	찾아가는 위령제 -43해원상생굿	2005.4.5	표선백사장 추모시(강덕환)-오영숙 춤- 위령굿 -소지사름
58주년 제13회 예술제	찾아가는 위령제 -43해원상생굿	2006.4.8	목시물굴 조형물 설치(열두문, 만장, 배향신위, 열두 돌까마귀 솟대, 설치미술)/추모시(김경훈)- 위령굿 -소리굿-몸굿-참배분향 또는 소지사름
59주년 제14회 예술제	찾아가는 위령제 -43해원상생굿	2007.4.7	빌레못동굴 시굿-몸굿- 위령굿 -참배분향 또는 소지사름/설치미술(열두문, 흑백만장, 배향신위, 까마귀 솟대, 액막이 방사탑, 제웅, 희생자 위패)

유족들을 주체로 내세울 수 있는 의례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기획이었지만, 달리 보면 이 해원상생굿의 기획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주민예총의 4·3문화운동에 대한 전략 변화였다. 우선 전략 변화의 하나는 국가에 의한 진상규명의 분위기와 제도화되기 시작한 기념사업 등으로 망각이 가동되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탈출구를 찾기 위한 자구책으로 4·3사건의 비극적 현장을 찾아가 추모제의를 지냄으로써 국가의 망각화 전략을 방어하는 측면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제도화 과정에서 합동위령제는 점점 유족들을 구경꾼으로, 외부 환경으로 전락시켰는데, 이 시점에서 부상했던 문제는 ‘누가 4·3을 말하는가’였다. 이 문제는 피해자였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여전히 힘의 논리로 배제된 채, 국가만이 혹은 지방정부나 유력가만이 4·3사건의 담론을 말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피해자인 유족들의 입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판에서는 유족들이 통곡하고 한스런 언어를 내뱉는다고 그들을 막지는 않는다.²⁰⁸⁾

206) ‘본래본정’이란 제주도 곳에 나오는 말이다.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나중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으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사물을 뜻한다(강소전, 2004: 14).

207) 위의 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208)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앞서 보았던 합동위령제에서도 ‘누가 먼저 추모해야하는가’를 놓고 유족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원성이 있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제 기념의례의 문제가 기념의 대상에서 기념주체의 문

그러나 이러한 전략도 김성례가 홉스봄(E. Hobsbawm)의 이론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무속의 전통이 실은 과거의 것이라기보다는 최근의 것이며 창안된 것으로 이것을 불변의 것으로 재현하는 역사적 진실성을 부여하는 시도들은 무속전통을 역사적 담론으로 재창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김성례, 1990).

이런 증거들은 해원상생굿에서 보이는 여러 연극적 요소들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4-20>처럼 제장은 솟대와 까마귀, 108개의 만장, 열두 저승문 등의 무대 장치가 마련되고, 그 제장을 중심으로 심방, 유족, 참여자들이 소통한다. 참여자들에게는 하나의 퍼포먼스의 장으로, 유족들에게는 신성성의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은 전통굿과 예술의 만남이자, 굿이 전체 공연의 틀 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것은 굿이 현재의 담론에 기대어 재현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굿이 끝난 다음에 세워지는 방사탑 건립은 더 그러하다. 굿의 마무리는 방사탑을 쌓는 것으로 끝이 난다. 방사탑은 전통굿 과정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굿을 예술적 측면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이다. 방사탑의 설치에 해원상생굿을 치른 장소란 표식이지만, 한편으로 학살터의 원혼이 완전한 원혼으로 해원되었음을 공간적 매개체에 이미지화 하는 작업이다.²⁰⁹⁾ 이런 일련의 굿과 예술의 만남은 다시 새로운 역사 담론을 생성할 수도 있다.

해원상생굿은 이전 문화운동에서 보였던 축제성이나 운동의 동력은 거의 약화되어 있다. 초기 민주화집단에 의해 사월제가 개최되었을 때 추모제의 핵심은 굿이었다. 굿은 민중적 예술로 인식되어 민주화집단에 의해 민주화운동과 문화운동의 동력으로써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합동위령제가 형성되고 사월제가 사라진 뒤, 굿은 전야제를 거쳐 현재 해원상생굿 속에 자리하게 되면서 운동의 동력보다는 예술적 장르의 성격을 더 많이 갖는 쪽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사실 진상규명의 분위기 이후 합동위령제의 위상이 상승하면서 합동위령제를 성사시켰던 한 주축인 민주화집단에게 이 일은 일정 정도의 승리로 의미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위령’이란 단어를 추모, 굿과 함께 혼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앞서 보았던 두 가

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09) 방사탑은 제주에서 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사악한 액을 막기 위해 세워졌던 돌탑이었다.

지 전략이 실제로는 국가의 망각화 못지않게 제주민예총의 정체성 고민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해원상생굿은 민주화 집단 담론 일부를 보존하고 정체성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20> 해원상생굿의 공연들



화북곤흙동에 방사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다.



빌레못굴 해원상생굿 제장 입구에서 주취측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4. 소결

3단계 시기에 와서 4·3사건과 관련된 국가의 기념의례는 충훈위령제와 합동위령제 두 개의 의례가 생성되게 된다. 하나는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반면 다른 하나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구받고 있다. 반공국가 시기 국가 기념의례는 충훈위령제였지만 새로운 정권의 등장은 저항세력들로부터 새로운 국가기념의례를 요구받게 되었고, 이것은 체제 안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충훈위령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국가기구가 직접 관리를 한 반면, 합동위령제의 경우는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자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간접 관여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기념의례에 다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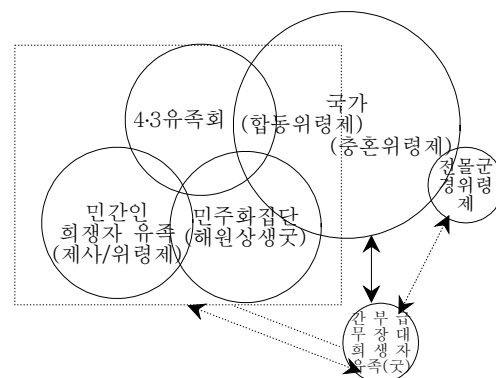
이런 국가의 전략은 4·3기념의례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전 단계에 비해 점점 국가를 중심으로 타협해가는 양상을 드러내며, 이 타협의

지점에 ‘평화’와 같은 추상적 담론이 공유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기념의례 방식이 제시되며 타협한 집단들은 일정부분의 역할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공산폭동론’이니 ‘양민학살론’이니 하는 담론 일부를 탈각시켰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전체 43기념의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와 떨어져 있는 주체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념의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간부급 무장대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이다. 이들에 대한 기념의례는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로 여겨졌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들 간부급 무장대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들이 유족 차원의 곳과 제사의례이지만, 제주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기념의례를 통해 새로운 담론과 질서가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4-21>과 같이 43기념의례의 역학관계는 국가를 중심으로 타협해가는 양상과 다른 한편으로 ‘민중항쟁론’을 주장하는 새로운 유족들의 기념의례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현재 ‘양민학살’과 ‘평화’담론으로 전일화되어가는 국가 주도의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차후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43유족회나 민주화집단이 이들 새로운 주체들에 대해 잠재적 호응을 갖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담론의 역학관계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1> 국가의 합동위령제 수용과 43기념의례의 역학관계



점선 화살표: 잠재적 상황
 실선 화살표: 드러난 상황

제6장 결론

4·3기념의례들이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동안 4·3기념의례들은 담론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보여 주었다. 첫째는 4·3기념의례들에서 기념대상자들은 희생자들의 성격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희생자들의 성격들의 구분은 원초적 사건 발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분화되어가고 있었다. 둘째 4·3기념의례들은 크게 네 가지 추모제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굿, 제사, 추모제, 위령제 등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형태들 중에 어떤 형식이 선택되는가는 기념대상인 희생자들의 성격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국가와 희생자 유족들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기념의례들의 형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가 용인하지 않는 희생자들의 경우 굿이나 제사 의례를 통해 기념하는 반면, 국가가 용인한 희생자들의 경우 일찍부터 위령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자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자 할 때 추모제 등의 형식을 빌려 나타났는데, 이 경우 유족들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고, 민주화집단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념의례의 주체에 따라 기념의례의 형식이 달라졌다.

4·3기념의례들의 주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국가(지방정부포함), 민주화집단, 유족들이었다. 주체들에 따라 기념의례의 형식은 다소 고정되어 있었지만, 기념대상자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국가의 경우 대체로 위령제의 형식을 띠었다면, 민주화집단의 경우 추모제와 굿의 형태를 띠었다. 유족들의 경우는 좀 더 포괄적이었는데, 굿과 기제사를 중심으로 지내다 최근에는 추모제, 위령제의 세 형태를 모두 보이고 있다. 물론 같은 굿이라도 유족들의 굿과 민주화집단의 굿의 형식과 내용은 차이를 보였고 국가와 유족들의 위령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유족들의 굿의 경우 서사적 구성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면 민주화집단의 굿은 서사적 구성과 함께 축제적 성격과 공연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추모제의 경우도 민주화 집단과 유족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는데, 민주화집단의 추모제는 거리정치와, 순례 등이 함께 가동되었다면, 유족들의 추모제도 거리정치와, 순례

가 함께 가동되었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전혀 달랐다. 전자는 추모제의로서 곳을 선택했지만, 후자는 위령제의 형식을 빌려 추모제의를 거행했다.

위령제의 경우도 국가와 유족들의 경우가 달리 나타났는데, 국가의 위령제는 근대 국가가 제도화시킨 형식에 치중했다면 유족의 위령제는 제사의례와 근대적인 국가의례를 동시에 차용하여 두 가지 형태로 실행되었다. 두 위령제 모두 상징적 구성과 명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언어적으로 구성되었지만, 국가의 위령제는 4·3사건을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평가 및 담론으로 축약시켜 버린 반면 유족들의 위령제는 다양한 사건과 줄거리가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평가와 담론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념의례들도 시간의 변모에 따라 그 형식과 담론을 달리했는데, 국가 기념의례인 위령제는 최근 국가의 기념대상자를 확대하여 애초의 4·3사건 관련 군경 및 우익유공자 외에도 이들에게 희생당했거나 무장대 등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국가의 기념의례 대상으로 확대 수용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행방불명인 수형인까지 수용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을 수형인으로 만든 4·3사건 시기의 군법재판의 불법성을 국가가 인정하면서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전환한 결과였다. 이때부터 국가담론은 ‘국가 폭력’, ‘양민 희생’담론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유족들의 기념의례에서도 추모제 및 위령제의 형식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매우 복잡한데, 다른 주체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기념대상의 성격에 따라 굿 혹은 제사, 추모제, 위령제의 형식과 담론을 선택했다. 이들의 담론은 때에 따라서 ‘민중항쟁’, ‘양민학살’, ‘공산폭동’을 넘나들었다. 이들의 태도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달라졌지만 때때로 이중의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기념의례들의 형성과 형식에는 여러 사회학적 변수들이 개입해왔다. 원초적 사건의 유산과 평가를 비롯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변수들이 시기마다 개입해 왔다. 이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정치와 사회, 문화적 변수들이었다.

우선 원초적 사건은 많은 의례 형성의 유산을 남겼는데, 대규모의 희생자들을 비롯해 사건의 흔적과 현장들, 또한 그것을 목도한 직간접 경험자들의 존재는 4·3기념의례 구성의 기본자원이 되었다. 특히 원초적 사건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

어지면서 사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던 시기에 대한 유산은 기념의례 형성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²¹⁰⁾

원초적 사건이 남긴 유산이 4·3기념의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차원과 연결되었다. 첫째는 의례형성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희생’과 ‘희생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희생에 대한 경험에 따라 시국, 사태, 사건, 폭동, 항쟁, 학살 등의 다층적인 평가를 사회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4·3사건의 평가는 크게 폭동론(공산폭동, 폭도)과 항쟁론(무장봉기, 주민항쟁, 민중항쟁), 학살론(양민학살, 국가폭력) 등의 3가지 평가와 담론에 의해 기념의례의 형성과정과 형식을 달리해왔다.

둘째는 ‘희생’이 일어났던 흔적 및 현장들로, 학살터, 피신처, 격전지, 묘지 등의 존재는 ‘희생’의 실체적 증거가 되었으며, 또한 중요한 기념의례의 시공간적 위치를 형성하였다. 이 흔적과 현장들은 4·3사건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기념의례 공간으로 선택되거나 배제되었는데, 선택된 경우 경제적 요인에 따라 새로운 기념의례 공간으로 창조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념공원’의 형태였다.

셋째, ‘희생’을 목도했거나 전수받은 유족 경험자들은 상당수 의례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었는데, 이들은 ‘희생’의 경험을 직접 목도했거나 전수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평가와는 다른 경험과 평가를 가질 수 있었으며, 국가와는 다른 기념의례를 구성하고, 잠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자원을 품고 있었다. 이들 유족 경험자들의 경험에 따라 유족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성격의 유족회를 구성하였는데, 크게 토벌대 희생자 유족, 무장대 희생자 유족,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으로 구분되어졌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다양한 유족들의 범위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의례주체의 지향점에 따라 기념의례의 형식은 같은 유형의 기념의례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형식으로 구성됨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정치적 요인은 크게 정치체제의 변화, 한국사회의 민주화, 지방자치제도 등이 개입하고 있었다. 4·3기념의례들의 형성과정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첨

210) 정호기(2004)는 원초적 사건의 시간적 집중성에 따라 재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단기간의 사건이었다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장기간에 걸쳐 원초적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사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시기 등이 특별히 강조되고, 기념사업은 이때 기억을 중심으로 재현된다고 하였다.

예하게 이뤄져 왔는데, 정치권력의 교체 시기마다 4·3기념의례들은 생성, 소멸, 변화를 맞이하였다. 국가에 의한 기념의례 형성과 평가는 정치체제의 변동이 임박한 시기마다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크게는 1960년 4·19직후, 1987년 6.10항쟁 직후, 1994년 문민정부 시기, 1998년 국민의 정부 시기, 2002년 참여정부 시기마다 중요한 변화 과정을 맞이했다. 특히 권위적 정권의 시기인가 혹은 민주적 정권의 시기인가에 따라 기념의례들의 생성, 소멸,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4·3기념의례들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민주화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운동은 문화운동의 차원과 결부되어 폭발적 힘을 가졌는데, 이는 제주사회에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이 나타났다. 특히 역사 바로 세우기 및 과거사 청산분위기는 기존 4·3기념의례들이 확산되거나 새로운 기념의례들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경우 기념의례들의 생성과 소멸, 변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 급속히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기념의례들 간의 경쟁, 부상, 약화, 타협, 소멸 등의 과정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의회의 개입은 4·3문제를 지역사회에서 공론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국가차원의 문제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방의회의 참여로 4·3에 대한 공식화 문제가 논의되면서 공식적인 4·3기념의례의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한 사회적 요인들이었는데, 사회적 요인들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그것에 영향을 받은 4·3진상규명운동 등 일련의 사회운동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4·3사건의 역사적 경험이 공공적 또는 대중적 차원에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은폐되어 온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온전한 회복 또는 재구성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 진실규명은 운동이 필요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제주주민 상당수가 4·3사건 희생자 유족이라는 특수성은 4·3진상규명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진상규명운동은 학술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거리의 정치를 통해서도 이

워졌는데, 이 거리의 정치는 국가나 유족들과는 다른 4·3기념의례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때 4·3기념의례의 주체는 4·3의 직접적 경험자들이 아닌, 후체험세대이자 제주지역 민주화집단이었다. 이들은 기존 기념의례들과는 다른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기념의례들 간의 경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기념의례들 중에는 법적·제도적 영향권 내에 있는 기념의례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의 존재는 4·3기념의례의 공식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것의 존재는 다른 기념의례들에도 영향을 주어, 모방, 경쟁, 갈등하는 양상을 불러왔다.

경제적 요인은 기념의례 형성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기념의례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 차원이었다. 하나는 국가전담방식으로 이 경우 대체로 국비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였다. 세 번째는 민간부분에서 예산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민간부분의 조달방식은 모금이라는 방법이었다. 네 번째는 국가 및 지방정부와 민간부분이 일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분담하여 조달하는 경우였다. 국가전담방식이라면 상당수의 예산은 기념 공간 조성에 투입되었는데, 기념 공간은 크게 공원형 혹은 학살터형 등으로 양분되었으며, 다시 기념 공간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시켜 볼 수도 있었다.

우선 공원형의 경우, ‘희생자’들의 묘역이 존재하는 경우와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해 기념공원을 따로 구성하는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학살터형은 ‘희생’이 발발했던 학살터나 학살매장지 혹은 최종적으로 생사 여부를 확인했던 수용소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이중 공원형은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의례의 공간을 관리하는데, 여기서도 민간기금만으로 이뤄지느냐, 정부지원금이 개입하느냐, 관민합동기금으로 조성되느냐에 따라 권위적 공간이 되느냐, 비권위적 공간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학살터형은 의례 공간에 투입되는 예산이 공원형에 비해 상당수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향후 공원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²¹¹⁾

211) 정호기(2004)는 공간의 재현에 있어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하나는 원초적 사건의 배경이

기념의례 연행에 드는 비용 또한 국가전담, 지방정부전담, 민간전담 혹은 관민분담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에 따라 위령제, 추모제, 굿 등의 형식과 절차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예산의 확보와 달리 의례에 동원되는 인적 자원의 확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동원형과 자발적 참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동원형은 기념의례 전개과정을 위하여 일정 정도의 인원을 동원하는 형태로 그 주도는 국가나, 유족, 시민단체 등이 되었다. 주로 국가는 관변조직을 동원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면 유족들은 유족회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동원했다.

문화적 요인들에서 4·3기념의례들은 이전 ‘희생’의례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들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의례구성은 완전히 창조적일 수 없었다. 때문에 이전 구성되어 있던 의례에 영향을 받는 방식은 그 과정을 보면 완전히 모방하거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것과 경쟁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희생’을 매개로 형성되었던 이전 의례들은 전통적 의례와 근대적 의례로 나뉘볼 수 있었다. 먼저 전통적 의례들은 다시 형태에 따라서는 무속의례와 유교의례로 나뉘볼 수 있었는데, 이중 불완전한 죽음을 상징한다면 무속의례로, 완전한 죽음을 상징한다면 유교의례로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서 무속의례는 재난의례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근대적 의례는 대부분 건국과정에서 국가주도로 성립된 면이 있었는데, 건국과정에서 일어났던 ‘희생’유공자에 대한 국가 기념일에 착안하여 나타나는 기념의례 형태로, 국민의례에 그 기준점이 있다.

대체로 4·3사건과 관련된 의례들은 이 두 가지 의례 차원에서 영향을 받아 모방하거나 경쟁했는데, 때에 따라 이 양자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때 모방, 경쟁, 혼합 등의 기념의례 형성은 기념의례 형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와 결부되었다.

되었던 장소 및 역사물들을 그대로 유지하여 재현공간을 조성하는 보존형과 원초적 사건의 현장과 흔적을 유지하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모습이 점차 바뀌는 개조형, 원초적 사건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역사적 현장에 새로운 재현공간을 조성하는 창조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때 개조형과 창조형에서 활발한 기억투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기념의례 형식에 대한 인식은 기념의례를 구성하는 하나의 핵심적 요소이다.²¹²⁾ 기념의례 형식은 ‘희생’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했으며, ‘희생’에 대하여 불완전한 죽음을 상징할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통적 의례를 통한 맥락을 보여주었다면, 완전한 죽음의 맥락을 넘어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려는 인식 위에 근대적 기념의례의 형태를 띠었다.

때문에 4·3사건이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독특한 적응전략을 통해 자신들만의 전통적 의례를 변형해서 근대의례로 창조해가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체계는 끊임없이 변형과 재해석이 가해지며, 세대와 세대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이런 사회구조적인 변수 외에도 기념의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의례주체들의 지향점이나 각 주체들의 대응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개입하였다.

4·3기념의례의 주체들은 4·3사건의 직간접적 경험자들이었다. 현재 4·3기념의례의 주체들은 크게 국가(지방정부), 유족(회), 민주화집단 등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 주체들의 지향점은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각 주체의 지향점에 따라 기념의례의 형식과 구조는 달리 형성되며, 그 성격도 달리 나타났다. 또한 주체의 성격변화는 지향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향점의 변화는 다시 기념의례의 생성과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국가의 경우 권위적인 국가인가 민주적인 국가인가에 따라 4·3사건의 평가와 의례에 대한 지향점이 달라졌으며, 이 경우 전자가 ‘공산폭동론’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양민학살론’을 강조하였다. 민주화세력이나 유족들의 경우도 이 국가의 성격변화에 따라 그들이 지녔던 지향점이 달라졌는데, 애초부터 민주화세력은 ‘민중항쟁론’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유족의 경우 그들의 4·3사건에 대한 경험에 따라 애초부터 지향점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유족들은 토벌대에 의한 희생, 무장대에 의한 희생 등에 따라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의 4·3사건에

212) 한편 공간방식에 대한 인식은 권주의형과 비권위주의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벤야민은 전체주의 권력의 기념비적 구성물이 획일성, 규격화, 거대화, 엄격성, 대칭성, 수직성, 남성중심적, 권위, 위계, 위엄 표출, 비권위주의형은 비규격성, 비획일성, 비대칭성, 평등성, 수평성 등을 강조함을 지적했다(Benjamin, 1997: 81).

대한 평가와 기념의례의 지향점은 달리 나타났다. 또한 토벌대나 무장대에 의한 희생일지라도 어떤 이유로 일어난 희생이냐에 따라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유족이나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유족들 내부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범주화되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4.3기념의례 주체들의 유형은 관 주도, 관민합동, 민간 주도 등의 형식으로 나뉘었다. 관 주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원초적 사건 발발 직후부터 국가가 지속적으로 기념의례를 주도한 반면 다른 하나는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저항성을 탈각시키고 제도권 내로 그들의 기념의례를 포획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는 4.3사건 희생자 유족, 시민단체, 명망가 집단, 정치인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도권 내 진입 때까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나 제도권 내 진입 후 이들의 역할은 미미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가 주도의 경우 충혼위령제와 합동위령제가 포함되었다.

관민합동의 경우는 국가 혹은 지방정부, 유족, 시민단체, 명망가 집단, 정치인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의례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규 혹은 비정규의 의례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의례 집단의 경우 집단 내에서 어떤 주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체의 구성 비율이나 기념의례 형식, 물적 토대가 달라졌다. 국가로 수합되기 전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족회 차원의 위령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민간 주도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유족 주도의 독자적인 의례와 시민단체에 의한 저항적 기념의례 형태였다. 유족 주도의 경우 이들은 유족회라는 상시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혹은 시민단체와는 다른 독립된 의례를 구성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에서 시민단체와 유족이 결합하여 의례 연행에 따른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한 각 주체들의 4.3사건의 평가만큼이나 서로에 대한 대응도 4.3기념의례 형성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 이미 4.3사건의 원초적 사건에 대한 다른 평가는 상대 주체들의 대응을 유발했는데, 국가를 기준으로 대응양상은 크게 적응, 타협, 갈등 등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 양상에는 각 주체들의 정치인식의 태도나 기념의례 형성에 대한 인식 등이 작용했다.

적응의 태도는 대체로 국가권력의 4.3사건에 대한 평가와 기념의례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주체들에 따라서는 국가의 기념의례를 전적으로 모방하는 형태의 기념의례를 생성하기도 했다. 타협은 4·3사건의 대립적 평가를 유연화시키고, 상호 동의하에 합동적인 기념의례를 구성하였다. 이때 기념의례의 주체는 양자, 삼자, 혹은 다자간이 되었다. 때에 따라서 갈등의 외면적 봉합 등 표면적 타협이나 일부 갈등을 봉합한 일부 타협의 경우 공통의 기념의례와 별도로 각 주체들이 새로운 기념의례를 구성하였다. 반면 갈등은 국가, 민주화세력, 유족 등이 서로의 평가에 대해 갈등하는 경우로 국가권력의 평가에 대해 민주화세력과 유족 등이 그 평가를 부정하고 원초적 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기념의례를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4·3기념의례의 형성과 형식은 두 가지 전략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섬이라는 고립성이 갖는 문화적 양식과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다른 지역의 문화운동이나 과거사 청산 모델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념사업으로서 4·3기념의례와 담론을 형성해 가는 한편 4·3사건의 모델이 다른 지역이나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외국문헌

- Alexander, J. C. & Seidman, S., 1990, *Culture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smann, A., 1999, *Erinnerungsäume*, Verlag C.H.Beck oHG.(변학수 외 역,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 Bell, C., 1997,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NewYork. (류성민 역, 2007,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출판부.)
- Benjamin, A., *Philosophy and Architecture*.(한영기 역, 1997, 『철학과 건축』, 청람).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ser, L. A., 1992. "Introduction: Maurice Halbwachs, 1877-1945", in Halbwachs(1992).
- Durkheim, E., 1916, *Les formes ele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Le Systeme Totemique en Australie*. (노치준·민혜숙 역,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 Edward, T. L., 1995, "Struggling with History and Memo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3.
- Gamson, W., 1995, "Hiroshima, The Holocaust,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 Geertz, C., 1983,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terpretive Anthropology*, Basic Books.
- Giddens, A., 1985, *Nation-State and violence*.(진덕규 역,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 Girard, R., 1977, *Violence and the Sacred*, trans. by Patrick Gregory,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 by Lewis A. Cos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rsch, H., 1995,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obsbawn, E., & Ranger, T.,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박지향·장문석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Nora, P., 1989, "Betw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emoire*." *Representations*. NO.26.
- , 2001, *Rethinking France*, Vol 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 2006, *Rethinking France*, Vol 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zouf, M., 1988, *Festivals and the French Revolution*, Harvard Universitz Press.
- Piehler, G. K., 1994, The War Dead and the Gold Star: Amerian Commemoration of First World War, *Commemorations-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ford, Victoria, 2008, ‘제노사이드에서 페미니사이드까지-21세기 과테말라의 불처벌과 인권’, 제주43연구소, 「4·3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Schwartz, B., 1996a, "Rereading the Gettysburg Adress: Social Change and Collective Memory", *Qualitative Sociology*. Vol. 19. no. 3.
- , 1996b.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braham Lincoln in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5.
- , 1997. "Collective Memory and History: How Abraham Lincoln Bacame a Symbol of Racial Equality",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 No.3.
- Scott, J. C., 1985, *Weapons of the Weak*, Yale University.

- ,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script*, Yale University Press.
- Selby, H. A., 2001(2003) 「아르헨티나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in Argentina)」,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2호.
- Takashi Fujitani, 1996,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한석정 역, 2003, 『화려한 군주』, 이산.)
- Turkle, S., 1997, *Life on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a
- Turner, V., 1982,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이기우 외(역), 1996,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 文京洙, 2008, ‘濟州四·三事件60に向けて’, 「濟州島四·三事件60周年事業通信」 NO.1.

단행본·논문

- 강 혁, 1999, 「프랑스 혁명과 모더니티: 르두, 르페, 그리고 사드」, 『혁명의 문화』, 이후.
- 강소전, 2004, 『제주4·3해원상생곳의 재조명』,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25호.
- 고광민, 강정식, 『제주도 추는 곳』,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피아, 2006.
- 고성만, 2005,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 고창훈, 1990, 『현장발굴, 다랑쉬굴 발굴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제주4·3연구소 『4·3장정』 통권 8호.
- 국가보훈처, 1992, 『보훈 30년사』.
- 국방부, 1967, 『한국전쟁사』.
- 국방부 국립묘지관리소, 1994, 『민족의 얼』 3집.
- 권귀숙, 2006a,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 , 2006b, 『대량학살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 문화적 재현』, 선인.
- 김동춘, 2005, 「한국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 , 2006, 『전쟁과 사회』. 돌베개.
- , 2007, 「과거청산 작업과 한국 민주주의」, 5·18 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5·18과 민주화 5·18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 김미정, 2002, 「1950~1960년대 한국전쟁 기념물」, 『한국근대미술사학』 10.
- 김민환, 2002,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논문.
- , 2003,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학과학사.
- 김석범, 1988, 「왜 4·3사건에 구애 받는가」, 『제주도 4·3사건 40주년 추도기념 강연회 자료집』.
- 김석준, 1998, 「4·3이 제주도 정치문화에 미친 영향: 제주도민의 투표행위(1948~1997)를 중심으로」, 제주학회 창립 20주년 제14차 전국 학술대회, 『제주학, 세계와 미래로』.
- 김성길, 2005, 「과거사법 제정과정과 현황, 이후 방향에 대하여-통과된 과거사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성례, 1989, 「원혼의 통곡: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무속」, 『제주도연구』 6집.
- 김성례, 1990, 「무속전통의 담론분석: 해체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22집.
- , 1999,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 김영범, 1991, 「망털리테사: 심층사의 한 지평」,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1, 문학과

지성사.

- ,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지승중 외,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 , 2004, 「4·3문화운동」,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김종민, 1999, 「4·3이후 50년」, 1999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 김종엽, 2004, 동작동 국립묘지의 형성과 그 문화·정치적 의미,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제86집.
- 김진균 편, 2003,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2 문화과학사.
- 김창민, 1995, 「문화의 지배와 문화화: 한라문화제의 사례」, 『문화과학』 7호, 문화과학사.
- 김현섭, 2002, 우리나라 국립묘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문성윤, 2005, 「4·3특별법의 한계 및 바람직한 개정 방향(토론문)」,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
- 문성윤, 2006, 「4·3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성격」, 제주4·3연구소, 『한국의 과거청산법과 과거청산운동』.
- 문옥표, 1989, 「원혼의 통곡: 논평」,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6집.
- 미래리서치, 2005,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관련 설문조사」,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박경훈, 2004, 「제주4·3기념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제주4·3연구소 『(제56주기 국제심포지움) 제주4·3과 동아시아 평화운동: 평화, 인권 그리고 국제연대』.
- 박명규, 19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사회와 역사』 51, 문학과 지성사.
- , 2001, 「역사적 사건의 상징화와 집합적 정체성: 기념비, 조형물의 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23-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박서동, 1989, 「4·3당시 현장을 보는듯한 희생자 명단」, 월간관광제주사, [월간관광제주], 통권 55호.
- 박선웅, 1998, 「문화, 의례와 정치변동: 한국의 민주적 전환」,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2집.
- 박찬식, 2001,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창간호, 각.
- , 2003, 「4·3진실 찾기 운동의 발자취」,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통권 제3호.
- , 2008, 『4·3과 제주역사』, 각.
- 부만근, 1998, 「제주지역 주민운동의 분석」, 제주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6집.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 , 2002, 「진상조사보고서의 현대사적 의의」,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2호, 각.
- 안정애, 2002, 「4·3과 한국 정부의 역할: 군부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 『다랑쉬굴 유해 발굴 제 10주년 및 제주4·3 제54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안종철, 2002, 「광주 5·18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2호, 각.
- 양정심, 2002, 「제주4·3특별법과 양민학살 담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연구』 7호.
- 양조훈, 2004,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사과 의의」, 제주도의회, 『의회보』 19호.
- 윤선자, 1994, 「프랑스 혁명기의 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윤택림, 1994, 「기억에서 역사로」, 『한국문화인류학』 25집, 일신사.
- 이영권, 2000, 「제주도 유력자 집단의 정치사회적 성격: 1945~1960」, 제주대 석사논문.
- 이재승, 2002, 「소위 제주4·3관련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인가」,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2호, 각.
- 이재승, 2003, 「인권과 과거 청산의 측면에서 본 『4·3보고서』의 성과와 한

- 계』」, 『제주4·3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과제: 토론 자료집』.
- 이창기, 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 도전, 적응, 초월의 메카니즘」, 『제주도 연구』 9집.
- 정근식, 1995, 「집단적 역사경험과 그 재생의 지평-소안도 항일 기념탑의 사회사」,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 문학과 지성사.
- , 1999, 「사회운동과 5월 의례, 그리고 5월 축제」,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새길.
- , 2003a, 「5월운동과 혁명적 축제」,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학과학사.
- , 2003b,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 97집
- , 2006, 「항쟁기억의 의례적 재현: 5월 행사와 전야제를 중심으로」,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 정호기, 2002,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전남대학교 사회학 박사논문.
- , 200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자원 동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 , 2005a, 「국민국가의 신성성과 죽은 자 모시기-국립묘지의 조성과 유지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소, 『호남문화연구』 제36집.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6, 『4·3은 말한다』 2, 전예원.
- , 1997, 『4·3은 말한다』 4, 전예원.
- , 1998, 『4·3은 말한다』 5, 전예원.
- 제성호, 2005, 「국가보훈기본법 문제 있다」 한국보훈학회, 『전쟁과 보훈보상문제: 토론자료집(<http://cafe.daum.net/defoliant>)』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제주4·3연구소, 1989, 『4·3증언자료집 I-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 , 1990a, 「4·3항쟁 희생자 추모를 위한 원동마을 곳 열려」, 『4·3장정』 통권 5호.
- , 1990b, 「마을역사 시리즈-북촌리 역사(1)」, 『4·3장정』 통권 5호.

- , 1990c, 「마을역사 시리즈-북촌리 역사(2)」, 『4·3장정』 8월호.
- , 1990d, 「현장기획, 백조일손지의 한을 넘어서」, 『제주4·3연구』.
-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07, 『제주4·3특별법 제정 8주년 제주4·3』 통권 제7호.
- 제주도 경찰청, 1990, 『제주경찰사』.
- 제주도, 1993, 『제주의 민속』.
-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2006, 『제주도4·3사건희생자 행방불명인 개인표서관련 도민토론회』.
-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제주4·3연구소, 2002, 『제주4·3희생자 선정 기준 논란에 따른 긴급토론회』
- 조성운, 1992,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시 탑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현상과 인식』, 제16권 3호.
- 조현범, 2000, 「현대 한국의 국가의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종교연구회, 『종교연구』 19집
- 최영태, 2005, 「5·18항쟁과 평화인권운동」,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통권 제5호,
- 최호근, 2005, 『제노사이드』 책세상.
- 표인주, 2004,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죽음 처리방식과 의미화 과정에 관한 고찰」, 『민속학 연구』 제15호.
- 한석정, 2006, 「4·3, 국가, 그리고 공식의례」, 제주민예총, 『4·3문화예술운동의 과제와 60주년 토론집』.
- 허상수 2003, 「정부보고서를 통해서 본 제주4·3사건의 진상」, 『제주4·3진상규명의 현단계와 과제: 토론자료집』.
- 허화영, 1991, 「원동,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서」, 제주4·3연구소, 『4·3장정』 4 통권 6호.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 , 1986,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의례자료

만병디유족회

2007, 「만병디 영령 합동위령제 자료집」.

백조일손유족회

2001, 「제51주기 제9회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 자료집」.

2003, 「제53주기 제11회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 자료집」.

2004, 「제54주기 제12회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 자료집」.

2006, 「제56주기 제14회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 자료집」.

2007, 「북촌리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유적지 기공식 자료집」.

북촌유족회

2004, 「4·3사건 북촌주민 희생자 위령제자료집」.

2005, 「57주년 4·3사건 북촌주민희생자 위령제 자료집」

2006, 「4·3사건 북촌주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자료집」.

2008, 「북촌리 4·3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제막식 자료집」.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1989, 「41주기 4·3추모제 자료집」.

1990, 「4·3 42주기 4월제 자료집」.

1992, 「4·3 제주민중항쟁 44주기 사월제 자료집」.

1993, 「제주4·3항쟁 45주기 사월제 자료집」.

사월제 공준위·4·3민간인희생자 유족회

1994, 『타협합의사항』.

1995, 『타협합의사항』.

1996, 『타협합의사항』.

1997, 『타협합의사항』.

삼면유족회

2005, 「삼면원혼합동위령제 자료집」.

제주민예총

1994, 「제주민예총 창립선언문」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

1994, 「제46주기 제주4·3희생자 위령제 자료집」.

- 1995, 「제주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위령제 자료집」.
- 1996, 「제주4·3희생자 제48주년 합동위령제 자료집」.
- 1997, 「제주4·3희생자 제49주년 합동위령제 자료집」.
- 1998, 「제주4·3사건희생자 50주년 범도민위령제 자료집」.
- 1999, 「제주4·3사건희생자 51주년 범도민위령제 자료집」.
- 2000,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 2001,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자료집」.
- 2002,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자료집」.
- 2003,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및 평화공원 기공식」.
- 2004,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자료집」.
- 2005, 「제57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자료집」.
- 2006, 「제58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자료집」.
- 2007, 「제59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자료집」.
- 2008, 「제60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자료집」.

제주도민연대

- 2006, 「2006 전국 4·3 유적지 순례 자료집」.

제주4·3유족회

- 1991, 「제1회 4·3희생자합동위령제」.
- 2002, 「4·3희생자 선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4·3유족 총궐기 대회」.
- 2007, 「4·3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자료집」.
- 2008, 「제9회 제주4·3행방불명인진혼제 및 제60주년 4·3위령전야제례」.

제주민예총

- 1994, 「제1회 제주4·3예술제 자료집」.
- 1995, 「47주기 제2회 4·3예술제 자료집」.
- 1996, 「제3회 제주4·3예술제 자료집」.
- 1997, 「제4회 제주4·3예술제 자료집」.
- 1998, 「50 무자기축년 역사맞이 해원상생의 큰 곶판 자료집」.
- 1999, 「제6회 4·3예술제 자료집」.
- 2001, 「제8회 제53주기 4·3문화예술제 자료집」.

- 2002, 「4·3 54주년 기념 4·3문화예술제 자료집」.
- 2003, 「제주4·3 제55주년 기념 제10회 4·3문화예술제 자료집」.
- 2004, 「4·3항쟁 56주년 제11회 4·3문화예술제 자료집」.
- 2005, 「4·3항쟁 제57주년 2005 4·3문화예술제 자료집」.
- 2006, 「4·3항쟁 58주년 제13회 4·3문화예술제 자료집」.
- 2007, 「제주4·3 59주년 제14회 4·3문화예술축전 자료집」.

현의합장묘

- 4·3유족회, 2003, 「4·3현의합장 영가 하관 및 추도식」.
- 2004, 「현의합장묘 영령 위령제 및 묘비 제막식」.

영상자료

강소전·현혜경

- 2006. 4. 8, 「목시물굴 해원상생굿(360분)」.
- 2007. 4. 7, 「빌레못굴 해원상생굿(240분)」.

강정식, 2007, 「동복리 정병춘 시왕맞이」.

김건일, 2003. 4. 13 「MBC-순이삼촌, 그리고 진상보고서(50분)」.

김동만, 1993,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35분)」.

김은희, 2007. 12. 31, 「이덕구 조상귀양풀이(8시간)」.

전통문화연구소, 1990, 「원동마을굿」.

제주4·3연구소

- 2001. 4. 3, 「위령제, 역사순례, 공원공청회」.
- 2001. 8. 25, 「제51주기 제9회 합동위령제(120분)」.
- 2002. 4. 3, 「제54주년 합동위령제(120분)」.
- 2004. 4. 5 「찾아가는 위령제 화북곤을동(180분)」.
- 2004. 8. 22, 「제54주기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120분)」.
- 2006. 1. 23, 「4·3진상규명운동현장에서의 문화예술사(80분)」.
- 2006. 8. 8, 「제56주기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120분)」.
- 2006. 4. 2 「제7회 행방불명인 진혼제(120분)」.

현해경

1998. 4. 2, 「무자, 기축년 역사맞이 해원상생의 큰 곶판(12시간)」.
2003. 4. 2, 「제4회 행방불명인 진혼제(120분)」.
2003. 4. 3, 「제55주년 합동위령제(120분)」.
2003. 4. 5, 「북촌리 대학살 해원상생굿(150분)」.
2004. 1. 10, 「4.3사건 북촌주민희생자 위령제(120분)」.
2004. 4. 3, 「제56주년 합동위령제(120분)」.
2005. 1. 28, 「57주년 4.3북촌주민희생자 위령제(120분)」.
2005. 4. 1, 「제6회 행방불명인 진혼제(120분)」.
2005. 4. 3, 「제57주년 합동위령제(120분)」.
2005. 4. 5, 「한모살 해원상생굿 (260분)」.
2005. 8. 11, 「제55주기 제13회 백조일손영령합동위령제(120분)」.
2006. 1. 18, 「4.3사건 북촌주민희생자 위령제(120분)」.
2006. 4. 3, 「제58주년 합동위령제(120분)」.
2007. 2. 6, 「4.3사건 북촌리 희생자 합동위령제(120분)」.
2007. 4. 1, 「제5회 행방불명인 진혼제(120분)」.
2007. 4. 2, 「제8회 행방불명인 진혼제(60분)」.
2007. 4. 3, 「제59주년 합동위령제(120분)」.
2008. 4. 2, 「행방불명인 진혼굿(180분)」.

신문자료

『경향신문』

1948년 6월 23일자, 1949년 4월 19일자.

『국제신문』

1948년 10월 7일자.

『독립신보』

1948년 4월 6일자.

『동아일보』

1948년 4월 6일자, 1949년 4월 8일자, 1950년 8월 11일자,
 1988년 4월 5일자, 1988년 4월 5일자, 1988년 6월 27일자,
 1992년 4월 2일자, 1993년 4월 3일자.

『마이니치신문』

1988년 4월 7일자.

『서울신문』

1948년 6월 19일자, 1990년 4월 4일자.

『아사히신문』

1988년 4월 4일자.

『자유신문』

1948년 6월 23일자, 1949년 4월 19일자.

『제대신문』

1985년 5월 27일자, 1986년 5월 15일자, 1995년 4월 5일자.

『제민일보』

1991년 4월 1일자, 1991년 4월 3일자, 1991년 4월 4일자,
 1992년 6월 11일, 1993년 10월 25일, 1993년 4월 2일자,
 1993년 9월 27일자, 1994년 4월 2일자, 1994년 4월 4일자.

『제주신문』

1965년 6월 6일자, 1965년 6월 6일자, 1971년 6월 6일자,
 1971년 6월 6일자, 1973년 6월 6일자, 1973년 6월 6일자,
 1980년 6월 6일자, 1982년 6월 6일자, 1983년 6월 6일자,
 1983년 6월 6일자, 1984년 6월 6일자, 1988년 4월 4일자,
 1988년 6월 6일자, 1989년 4월 4일자, 1989년 6월 6일자,
 1990년 4월 3일자, 1991년 4월 4일자, 1993년 4월 3일자,
 1994년 4월 1일자, 1994년 4월 14일, 2005년 6월 6일자,
 2006년 6월 6일자, 2008년 6월 5일자.

『제주신보』

1952년 10월 16일자, 1952년 10월 8일자, 1953년 5월 12일자,
 1953년 5월 3일자, 1953년 6월 30일자, 1960년 6월 3일자,

1960년 9월 1일자, 1960년 5월 31일자, 1960년 6월 22일자,
1960년 6월 4일자, 1960년 6월 22일자.

『제주의 소리』

2003년 10월 31일자.

『조선일보』

1948년 4월 6일자, 1988년 6월 23일자, 1989년 4월 4일자.

『조선중앙신문』

1948년 6월 20일자.

『중앙일보』

1992년 4월 3일자.

『통일신문』

1988년 4월 5일자.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25일자, 1988년 11월 10일자, 1988년 11월 17일자,
1988년 11월 22일자, 1989년 4월 4일자, 1990년 4월 4일자,
1992년 4월 4일자, 1992년 4월 5일자,

『한라일보』

1991년 4월 2일자, 1991년 4월 4일자, 1993년 4월 5일자,
1993년 5월 19일자, 1994년 4월 2일자,

『한성일보』

1948년 4월 6일자.

기타자료

국가보훈처, 2006, 「제51회 현충일 추념식 결과보고」.

2006, 「제51회 현충일 및 2006년도 보훈의 달 행사계획」.

2006, 「제51회 현충일 추념식 세부시행계획」.

2006, 「제51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종합보고」.

「국가보훈기본법」.

2007, 「제52회 현충일 및 2007년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계획」.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4·3연구소·제주대학교, 2008, 『4·3희생자 유해 발굴 유가족 설명회 자료집』.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4, 『제주4·3유적의 실태와 보존방안』.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2004, 『2004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2004, 『2004년도 창립 기념대회 자료집』.
제주도의회, 1999,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Formation and Structure of Memorial Ceremony for Jeju April 3rd Incident

Hye-Kyung Hyu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eun-Sik Jung · Jung-Gie Choi)

(Abstract)

According to turbulent changes of Korean society, appreciations and discourses about Jeju April 3rd Incident have been historically expanded in different ways. Discourses usually have been circulated through memorial ceremonies, the discursal effects of memorial ceremonies of April 3rd have been greatly appeared since the memorial ceremonies put experiences or appreciations of groups in the spatiotemporal images so that the experiences and appreciations remain stable and clear. According to this, various subjects have shown discourses and movements through memorial ceremonies.

However, the truth is that specific ceremony's texts are the ones that raise the incident to the fact but unfortunately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formality or its structure has not been focused yet enough. Thus, this study's interests are three. First, what kinds of memorial ceremonies have the discourses on April 3rd produced according to the time? And what type of topography does each memorial ceremony form? Second, how do the texts, which raise the discourses or incident to the face, form the topography and how is it structured? Third, what are the

sociological variables that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process of memorial ceremonies and in the texts.

The results of those above are shown as followings. Firstly, memorial ceremonies relevant to April 3rd Incident were memorial service, anniversary, exorcism and so on. These ceremonies' formation had clearly preferred ceremonies according to its subject, the government preferred memorial service, democratized groups preferred anniversary and exorcism and surviving family preferred memorial service, anniversary, exorcism and so on. These subjects have chosen one of memorial ceremonies according to Korean society's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to discourse and those circumstances have been circulating memorial ceremonies in the dynamic relations between those subjects.

Secondly, such dynamic relationships have affected forming texts of memorial ceremonies and the targets, space-time and formalities of memorial ceremonies have been differently appeared in dramatic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s. They were shown through three stages, in the first stage was when the memorial services, which are only targeting of the military and the police, and victims' surviving families' exorcisms were having complications between them. The second stage was when the new subject, democracy groups appeared and they held anniversaries of non-government people and victims of the military and of police to the public and the conflicts concerning memorial ceremonies came to be noticed by the public. And then, at the end of conflicts, the subjects looked for a new joint ceremony, which is a joint service for the dead, by mutual agreements. In the third stage, the country held national memorial ceremonies targeting of victims, only except for victims of the military and of the police, this stage showed two strategies of the country by accepting formal memorial service and joint service as well. In this stage, bereaved families and democracy groups started to

commemorate victims through new memorial ceremonies. In these dynamic relationships, properties of memorial ceremonies have been obviously changed and narrativity, mediality, conscious intent and festivity have been formed in different ways.

Thirdly, social structural variables, that have had effects on the process of formation, formation itself and structure, can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First one indicates that external environment has affected subjects and there ar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variables including the initial incident.

If the initial incident was affected by victims, estate such as massacre site or existence of people who experienced it, we can see the political causes such as change of political system, democratized Korean society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have been involved. As social causes, social movement such as a movement examining the actual facts of April 3rd Incident was a prime cause as well as the pro-democracy movement. As economical causes, the memorial ceremonies have been affect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ecuring the budget, which was to provide materials required for memorial ceremonies, and each type was lead by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each type supplied materials and took full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cultural causes, they were considerably affected by cul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Society since it is related to 'victim' ceremonies. Thus, forming memorial ceremonies cannot be totally creative. The type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formal ceremonies has appeared as three types—fully imitated, partially accepted and newly formed competing to former ceremonies. Excluding these social structural variables, there were internal causes such as intention of subjects having ceremonies and confrontation that affects formation of memorial ceremonies.

As we can see above, memorial ceremonies relevant to April 3rd

Incident have been affected by various sociological causes, different memorial ceremonies have been formed in dynamic relationships of each subjects and the memorial ceremonies' texts have been formed to make discourses and appreciations, on which the April 3rd Incident made by each subject, stable. However, as the memorial ceremony has become an institution since it has been led by the country, the substantial problem and meaning of April 3rd Incident has moved back again. This suggests us to seriously examine this matter that how is the substantial meaning in the history can be commemorated.